



수용시설 모니터링 실무 가이드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수용시설 모니터링 실무 가이드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발 간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2년 활동을 개시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만여 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사건이 전체의 8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경찰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사례와, 국가형사정책의 최 일선 기관이랄 수 있는 교정기관 등 구금시설에서의 수용자들의 호소가 1만여 건에 이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집행되어야 하며, 설혹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약해야 할 공공적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타의 국가기관과 국제기구, 나아가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는 진정사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역시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활동보다는,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사나 방문조사 등 위원회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조사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6 수용시설 모니터링 실무 가이드

이 책은 국제 비정부기구인 고문방지협회(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가 지난 2004년 출간한 수용시설모니터링 현장 가이드(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A Practical Guide)를 번역한 것입니다.

구금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시 유념해야 할 대목들을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조사관은 물론 관계 공무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06.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영황

ACKNOWLEDGEMENTS

First of all, the APT would like to thank the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 for agreeing to let us publish this guide as an update of our earlier joint publication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for NGOs” (Geneva, December 2002). We thank Ms Annette Corbaz, who wrote the earlier guide.

The updated draft was discussed during an expert meeting held in Geneva on 20 October 2003 and we would like to thank the following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meeting: Mr Paul English (Penal Reform International), Ms Mary Murphy, member of a UK independent prison monitoring board and former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Mr Andre Picot,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Mr Jean-Pierre Resellini, member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CPT), Ms Magaret Dekaggya, Chair of the 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and Mr Morris Tidball-Binz, Human Rights Defenders Office of the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Their fruitful and relevant comments on the draft were essential contributions for the final version of this guide.

The APT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following persons and institutions: the “Instituto de estudios comparados en ciencias penales y sociales” de Argentina, Ms Maria Noel Rodriguez,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OHCHR) Office of Colombia, and dr Andrew Coyl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for their useful written comments on the draft. Ms

Mary Murphy did a wonderful job in proof reading and correcting the final version.

Our acknowledgements also go to Mr Theo van Boven,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who agreed to write the foreword to this publication.

Finally, this guide could not have been published without the generous financial support of our donors.

감사의 말씀

APT는 무엇보다 민주제도와 인권을 위한 OSCE 사무국과 함께 출판한 바 있었던 “구금시설의 모니터링: NGO를 위한 실무가이드”를(제네바, 2002. 12.) 개정 증보하여 이 지침서를 출판할 수 있도록 OSCE사무국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가이드 초판을 집필한 아넷 코바즈(Annette Corbaz)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증보초안은 2003. 10. 20.에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우리는 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 국제형사개혁위원회 폴 잉글리쉬(Mr Paul English), 영국 독립교도소 감시위원회의 위원이자 전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연구원이던 메리 머피(Ms. Mary Murphy), 국제적십자사(ICRC)의 앙드레 피코(Mr Andre Picot),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 위원 피에르 레스텔리니(Mr Jean-Pierre Restellini), 우간다인권위원회위원장인 마가렛 세카가야(Ms. Margaret Sekaggaya) 그리고 Humanrights Defenders Office Of The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rights(ISHR)의 모리스 티벌 빈츠(Mr. Morris Tiball-Binz) - 께 감사한다. 초안에 대한 이 분들의 풍부하고 적절한 지적은 이 가이드의 최종안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리고 APT는 아르헨티나의 “Instituto De Estudios Comparados En Ciencias Penales Ysociales”,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 콜롬비아사무소의 마리아 노엘 로드리게스(Ms. Maria Noel Rodriguez) 그리고 국제교도소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의 소장 앤드류 코일 박사(Dr. Andrew Coyle)께 감사드린다, 이 분들은 초안에 대해 적절하고 유용한 지적을 해주셨다. 메리머피는 최종판의 교정 작업을 훌륭하게 해주셨다.

또한 책의 서문을 써주신 유엔고문특별보고관 테오 반 보벤(Mr Theo Van Boven)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서는 우리 후원자들의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출판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EDITOR'S NOTE

For over a quarter of a century, the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 has defended the simple but novel idea proposed by its founder Jean-Jacques Gautier, that visits to places where people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torture and ill-treatment. The APT continues to promote this idea both at the international and the national level.

The APT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drafting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based on preventive visits to places of detention. The organization was thus at the origin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1987) as well a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dopted on 18 December 2002 (OPCAT). The OPCAT is particularly innovative as it is based on the complementarity of preventive visits by an international organ and by “one or several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 that State Parties must set up after ratification.

This “twopillar” approach reflects that of APT, which has for several years encouraged monitoring of places of detention at the national level.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APT developed, in 2000, a joint project with ODIHR on “Encouraging national NGOs to monitor places of detention”. This project resulted in a joint publication entitled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for NGOs”, published in December 2002 in English and in September 2003 in Russian. The joint guide was written by Annette Corbaz, a consultant for the APT who has more than ten years’ experience of visiting places of deten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ICRC).

Our new guide is an adaptation of this previous version, in order to include elements of the newly adopted OPCAT and broaden the target audience to any person or body entitled to carry out visits to places of deten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 guide will be published in English, French, Portuguese, Spanish and possibly Russian.

We hope that the guide will be of help to those involved in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in the preparation, conduct or follow-up to visits, and that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ing conditions of detention and preventing torture and ill-treatment in the world.

Geneva, February 2004

Esther Schaufelberger
APT Programme Officer
Visit Programme

Barbara Bernath
APT Programmer Officer
Europe Programme

편집자 주

4반세기동안 고문방지협회(APT)는 설립자인 장자끄 고티에(jean-jacques gautier)에 의해 제시된 간단하지만 새로운 생각, 즉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고문과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지지해왔다. APT는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이 생각을 확산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APT는 구금 장소의 예방적 방문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의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고문방지를 위한 유럽협약(1987), 2002 12.18.에 채택된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특히 OPCAT은 조약 비준 후에 만들어야 하는 “하나 또는 다수의 국내 예방기구”와 국제기구에 의한 상호보완적인 예방적 방문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대단히 혁명적이다.

이 ‘두 개의 기념비’ 적 접근 방식은 수년간 국내적 차원에서 구금장소의 감시를 촉구해왔던 APT의 방법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생각은 2000년 APT가 ODIHR과 함께 개발한 ‘구금장소의 감시를 위한 국내 NGO의 강화’라는 공동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구금장소의 모니터링: NGO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2002. 10.에는 영어로, 2003. 9.에는 러시아어로 공동 출간되었다. 이 공동가이드는 십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제적십자사와 함께 구금장소의 방문한 바 있는 APT의 컨설턴트였던 아넷 코바즈가 쓴 것이다.

이 지침서는 최근 채택된 OPCAT의 요소를 포함하고 국내차원에서 구금장소의 방문을 수행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판을 개정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그리고 가능한 러시아어로도 출판될 것이다.

우리는 이 지침서가 구금장소의 모니터링 즉 준비, 수행 또는 방문 후 사후 조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구

금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 세상에서 고문과 학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4. 2. 제네바.

Esther Schaufelberger
APT Programme Officer
Visit Programme

Barbara Bernath
APT Programme Officer
Europe Programme

FOREWORD

Torture and ill treatment of person deprived of their liberty usually take place in centres of detention that are inaccessible to any form of public scrutiny. This is the ideal context for torturers to operate with complete impunity.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I have advocated, like my two predecessors, that monitoring of places of detention, by suitably qualified independent bodie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combating the practice of torture and ill treatment. However, the monitoring bodies need to be adequately prepared, skilled and equipped to deal with a very difficult task in often tough conditions. Furthermore, they should be in a position to make recommendations that will be taken seriously and lead to positive improvements in the treatment of detained persons.

I welcome this guide of the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s it provides a practical tool for anyone intending to visit a place of detention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torture and ill treatment. The guide provides advice on how to monitor in a manner that enhances effectiveness and gives guidance on issue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such as medical services or protection measures. Moreover, it also explains clearly the different types of monitoring mechanisms and their complementary nature.

The manual is also timely as it appearing just prior to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recently adopted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preventive bodies envisaged in the

Protocol, especially at a national level, will find this guide a very helpful reference book. I therefore sincerely hope that the guide will encourage many States to sign and ratify the Protocol. This important new international initiative promised to have a real impact in saving detained persons from the horrors of torture and ill treatment.

8 March 2004

Professor Theo Van Boven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서 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고문과 학대는 공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금장소에서 발생한다. 이곳은 고문을 행하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도 고문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다.

나는 유엔고문특별보고관으로서 두 명의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자격을 갖춘 독립기구에 의한 구금장소의 모니터링이 고문과 학대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감시기구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매우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 훈련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 기구는 구금된 사람들의 처우에 적극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고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권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나는 고문방지협회의 이 지침서가 고문과 학대를 막기 위해 구금 장소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지침서는 의료서비스 또는 보호조치와 같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안내 그리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감시기구와 그들의 보완적 성격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최근에 채택된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하기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이 책은 의정서에서 고려하고 있는 예방기구 특히 국가적 차원의 기구에 매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이 많은 나라가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을 고무시키도록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 중요하고 새로운 국제적 계기가 구금된 사람들을 고문과 학대의 공포에서 구하는데 실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4.3.8.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

유엔 특별고문보고관

약 어 표

ACHPR	아프리카의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
APT	고문방지협회
BPP	모든 형태의 구금하에서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BPTD	구금처우에 대한 기본원칙
CAT	고문방지위원회
CPT	유럽 고문방지위원회
ECPT	유럽고문방지협약
EPR	유럽감옥규칙
ICCPR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ICPR	고문 예방과 처벌에 대한 미주 협약
ICRC	국제 적십자위원회
NGO	비정부기구
ODHIR	OSCE의 민주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국
OHCH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OPCAT	유엔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OSCE	유럽 안보협력기구
UN	국제연합
UNCAT	유엔고문방지협약

제4장 국제인권기준에서 사용되는 기준의 약어는 4장 앞에 있습니다.

목 차

발간사	5
감사의 말씀	9
편집자 주	12
서문	16
약어표	17
목차	18
서론	23
제 1 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의미	29
1.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보호	31
1.1 자유의 박탈	31
1.2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	32
2. 방문을 통한 구금시설 모니터링	33
2.1 구금시설 모니터링이란?	33
2.2 모니터링의 중요성	34
2.3 구금시설 방문 - 모니터링의 주요수단	35
3.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기본 원칙	36
제 2 장 구금시설 모니터링 기구	41
1. 국내적 차원의 방문	43
1.1 내부 조사	44

1.2 사법적 감찰	44
1.3 독립적인 외부기구의 모니터링	44
2.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방문 기구	45
3.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48
3.1 고문방지협약 소위원회	49
3.2 OPCAT 산하의 국가적 예방기구	50
3.2.1 국가적 예방기구 설립 또는 지정	50
3.2.2 국가적 예방기구의 형태	51
3.2.3 국가적 예방기구의 권한	51
3.2.4 국가적 예방기구에 대한 보장	53
3.2.5 구금시설에 접근할 권리	56
3.3 선택의정서에 따른 후속방문	57
3.3.1 보고와 권고	57
3.3.2 보완적인 예방 활동	57
3.3.3 소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접촉	57
4. 다양한 방문기구와의 협력	58
4.1 국내방문기구 간의 협력	58
4.2 국제기구와 국내기구 간의 협력	59
4.3 국제 방문기구 간의 협력	60
제 3 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방법	65
1. 모니터링의 기본 구조	67
2.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계획	70
2.1 방문프로그램의 계획	70
2.2 구금시설의 선택	70
2.3 방문기간	71

2.4 방문의 빈도	73
2.5 조사단	74
2.5.1 구성	74
2.5.2 규모	74
2.5.3 훈련	75
3. 방문준비	76
3.1 준비작업	76
3.2 방문목적 설정	78
4. 방문	78
4.1 구급시설의 장과의 최초 면담	78
4.2 수용자 기록과 다른 문서 열람	80
4.3 구급시설 방문	81
4.4 수용자 면담	82
4.4.1 일반 사항	82
4.4.2 집단면담	84
4.4.3 개별면담	84
4.4.4 수용자 담당 직원과의 면담	86
4.5 구급시설 장과의 최종 면담	87
5. 방문 후속조치	88
5.1 내부적 후속조치	88
5.2 구급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89
5.2.1 방문보고서 작성	89
5.2.2 전체보고서 작성	91
5.2.3 전체보고서의 배포	92
5.3 권고이행에 관한 후속조치	93
5.4 모니터링 과정 외의 후속조치	93

제 4 장 검토해야 할 구금의 측면들	97
1. 처우	101
1.1 고문과 학대	102
1.2 격리	110
1.3 계구	113
1.4 강제력의 사용	116
2. 보호 수단	121
2.1 구금 기록	122
2.2 수용자에 대한 고지	125
2.3 감찰	127
2.4 징벌절차	129
2.5 진정절차	132
2.6 수용자의 분류	135
3. 물리적 환경	141
3.1 음식	143
3.2 조명과 환기	146
3.3 위생 시설	148
3.4 개인 위생	150
3.5 의류와 침구	153
3.6 과밀수용과 거주시설	155
4. 시설 내 처우와 활동	161
4.1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163
4.2 외부세계와의 교통	168
4.3 교육	172
4.4 실외 운동	176
4.5 여가와 문화활동	179

4.6 종교	182
4.7 작업	184
5. 의료 서비스	189
5.1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190
5.2 의무 직원	194
5.3 여성과 유아를 위한 특별 의료	197
5.4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특수 의료	199
6. 구금시설 직원	203
6.1 일반적인 이슈	205
6.2 직원 교육	209
7. 경찰에 의한 구금	213
7.1 기본적 보호 장치	214
7.2 기록	218
7.3 심문	220
7.4 정보의 고지	223
7.5 물리적 환경	225
부 록	
1. 체크리스트	231
2. 내부 방문보고서의 예	235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238
4. 관련 국제기준 목록	253
5. 더 읽을거리	260
6. 유용한 주소	265

서론

“특별보고관은 자유박탈의 성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적어도 지난 한 세기 동안 당연시되었던 기본 패러다임은 교정시설, 경찰서, 그리고 유사 시설들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시민들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것이었다. (...) 불투명의 패러다임을 투명의 패러다임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나이젤 로들리(Sir Nigel Rodley)

전 유엔고문특별보고관

2001년 7월 3일 A/56/156, §35

왜 구금시설 모니터링 가이드가 필요한가?

행정의 투명성과 이에 대한 독립적 통제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法治)에 기반하고 있는 모든 제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특히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의 힘을 감시하는 경우에 더 그러하다. 예고 없는 방문을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처우와 구금환경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고문과 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구금시설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는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진보해왔다.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경받는 시민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구금시설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고문과 학대에 대한 최선의 보호장치 중 하나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진전은 2002년 12월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 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에 반영되었다. 이 선택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유가 박탈당한 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적 및 국내적 기구들이 정기적인 방문을 실시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국가적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예방 기구를 설립, 지정 또는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는 국내적 차원에 놓이게 되므로 이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기준에 따른 새로운 기구의 마련이나 기존 메커니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이 국내차원의 다른 감시형태를 배제하거나 훼손 시켜서는 안 된다. 이 현장가이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내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모든 감시단체나 기구가 예방적 방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이 가이드는 국내적 차원에서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방문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차적 독자들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될 “국가적 예방 기구”의 구성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이드는 이러한 기구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자국의 구금시설을 감시할 권한이 있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는 자체 권한과 특별한 합의를 통하여 구금시설에 이미 접근하고 있는 기구들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구금시설에 접근하는 문제 자체는 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는다.¹⁾

국내방문기구 이외에도, 이 가이드는 자유의 박탈에 관련된 문제에 일반

1)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for NGOs”, APT/ODIHR, 제네바, 2002.12. Part II에서 다룬 문제, P 36-39.

적으로 관심이 있는 국제 및 국내NGO, 국제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이들의 현지사무소 등의 기구들에게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가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구금시설 당국과 직원들에 의해서도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감시기구와 협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가이드의 목적

이 가이드의 전체적 목적은 새로 설립되거나 이미 현존하는 국내방문기구들의 고문방지과 구금상황개선에 대한 전문성과 영향력을 증대시켜 이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목적은 :

- 각 단계별(방문준비, 방문시행, 후속조치)의 방문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조언과 권고를 제공
- 여러 국내방문기구 간 그리고 국내기구와 국제기구 간 협력 촉진
- 구금장소 감시에 관련된 여러 국제인권기준을 주제별 제시
- 국제인권조약 최초로 “국가적 예방기구”의 독립성과 효과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장을 규정한 OPCAT의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 이를 통해 국내적 예방기구가 OPCAT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설립 방지

이 가이드는 특정 기구, 국가 또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되지는 않았다. 이 가이드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유효한 내용을 담고자 했다.

가이드의 범위

이 가이드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장소를 감시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가이드는 주로 교도소, 그리고 제한

적인 방식으로 경찰서의 구금시설을 다루고 있다. 정신과시설이나 소년교도소, 외국인보호소 등과 같은 구금시설의 감시는, 비록 일반적 개념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보다 더 특수한 접근을 요한다.

여성과 아동, 소수자, 외국인이민자와 같이 취약한 수용자의 구체적 집단은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되도록이면 그 내용을 각 주제별 지침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 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구금장소 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개론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현존하는 국제 및 국가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OPCAT가 규정한 국내예방기구의 특성을 검토한다. 제3장은 보다 실용적인 장으로 준비단계에서 후속조치까지 어떻게 방문을 수행할 것인지를 기술한다. 마지막 장은 방문 중 조사해야 할 구금의 측면들을 주제별로 다루고 국제인권기준의 관련조항들에 대해 논평한다.

용어 정의

[구금시설 모니터링]

구금장소 모니터링은 일정한 기간동안 현장방문을 통해 구금의 모든 측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사는 한 곳 또는 여러 구금장소에 수용된 특정 부류 또는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모니터링은 관련 당국과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수용자를 보호하는 자들에 대한 권고 외에, 조사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모니터링은 당국에 전달된 권고의 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도 포함한다.

[수용자]

“수용자”라는 용어는 여러 국가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제조약들 사이에서도 그 의미가 다르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만을 가리키고, 재판 이전단계 또는 행정적 보호에 처해진 자에게는 쓰이지 않는다. 이 가이드에서는 “수용자”는 체포, 행정적 보호, 미결수

용 또는 형 확정으로 자유가 박탈되어 구금장소에 수용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한다.

[구금시설]

“구금시설”이라는 용어 또한 이 가이드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쓰인다. 이 용어는 교정시설, 경찰서 유치장, 외국인 및 망명신청자 보호소, 소년 교도소, 특정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 정신과시설, 군교소소 및 유치장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수용된 모든 장소들을 포함한다.

[국내방문기구]

이 용어는 국내적 수준(국가, 지역 또는 공동체)에서 구금시설을 감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독립적 기구들(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맨, 특별방문기구, 국내 NGO, 시민위원회 및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을 말한다.

[국가 예방기구]

이 용어는 특히 OPCAT에 의거해 당사국이 “국가예방기구”로 지정한 기구를 가리킨다.

[방문]

“방문”이라는 용어는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 자체뿐 아니라 그 준비와 후속조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이 용어는 방문시설 전체에 대한 방문 및 특정 수용자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방문 또는 특별한 문제나 주제 또는 사건에 관한 방문을 포함한다.

제 1 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의미

1.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보호

1.1 자유의 박탈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국가는 자유박탈의 근거와 그 절차가 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체포나 구금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자유 박탈이란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서 개인 스스로의 의지대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권한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자유박탈의 예 :

- 체포
 - 기소 이전의 구금 (수사단계의 구금)
 - 기소 후 구금과 미결수용 (미결구금)
 - 구금 (기결 구금)
 - 행정적인 구금
 - 청소년 구금
 - 정신질환에 따른 수용
 - 군대에서 징벌로서 이루어지는 구금
-

국제기준은 국가가 자유박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미결수용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범죄혐의조사, 사회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형사절차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²⁾ 국제기준은 비구속형태 또는 지역봉사와 같은 구금에 대한 대안적 조치를 장

2) 제6조. 『비구금조치를 위한 유엔최저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 (도쿄 규칙)1990. 12. 14.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결의안 45/110

려하고 있다.

국제기준은 특히 국가가 미결수용을 포함한 청소년구금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용자는 구금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들의 다른 인권을 계속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방법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

1.2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취약하며 특히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 이들의 안전과 안녕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구금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교정당국의 책임이다. 따라서 구금환경을 감시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는 독립적인 기구들이 구금시설을 예고 없이 정기적으로 방문한 후에 관계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를 하며 권고의 이행에 대하여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구금시설에서 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는 이런 종류의 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만들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국내적 보호제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국제법으로 제정된 보호기준이 포함된 국내법구조 : 즉, 정부 정책과 지침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관련법규의 제정.

2. 효과적인 법 집행 : 법령의 유지, 법적 관행,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조직하고 다루는데 이러한 법적 기본구조의 효과적인 집행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한다.

- 법적 기본 틀을 이행하려는 명확하고 폭넓은 정치적 의지
- 건전한 직업 윤리 규범에 따라 훈련된 인재
- 재정과 물적 자원

3. 모니터링 : 법적구조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내부감찰

판사와 검사에 의한 사법적 통제

변호사와 변호사협회

국가인권기구와 옴부즈맨

독립적인 국내방문기구

비정부기구

국제 기구 (국제적십자사, 고문방지위원회, 향후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유엔 소위원회)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실무적 수준 또는 법적인 수준에서 구체적 방안들을 찾아내고 모범사례들을 발견하여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문을 통한 구금시설 모니터링

2.1 구금시설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이란 일정기간동안 구금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과정을 말한다. 조사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구금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두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구금의 모든 측면들은 상호의존적이므로 서로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사되어야 한다 (제4장 참조) :

- 생명권, 신체 및 정신의 보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용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구금시설 내부에서 제정되거나 적용되는 법적·행정적 조치
- 구금기간 동안의 생활환경

- 구금시설 내 처우 (활동, 외부세계와의 교통)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 수용자와 직원 그리고 수용자와 구금당국 사이의 관계

모니터링은 조사의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계당국, 일부 경우에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들 그리고 언론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당국이 전달된 권고들을 실행하는지에 대한 확인 등의 후속조치도 포함된다.

2.2 모니터링의 중요성

구금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

-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가 행하는 강압적인 행위이다 .
- 자유를 잃음으로써 수용자는 자신의 보호와 권리, 생존수단의 보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계당국과 공무원에게 의존하게 된다.
-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좌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 구금시설은 말 그대로 폐쇄되어있고 수용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곳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취약하며 학대나 심지어는 고문을 당할 위험성이 높다. 구금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통하여, 수용자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 기구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구금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담당직원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금을 하는 자와 구금을 당하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권력의 차이를, 이러한 권력의 남용이 있을 경우 권한 있는 외부기구가 개입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메커니즘은 인권을 증진하고, 학대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들을 다룬다.

또한 통제메커니즘은 구금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재고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구금시설 운영관리의 정당성과 구금시설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2.3 구금시설 방문 – 모니터링의 주요수단

구금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수용자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방문을 필수로 한다.³⁾ 이러한 방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

- **예방기능** : 외부인이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그 자체가 구금된 자들에 대한 보호에 기여한다.
- **직접적인 보호** : 현장방문은 담당직원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문서화** : 방문하는 동안 구금시설의 다양한 측면들이 조사되고, 그 적절성도 평가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제안된 개선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방문은 또한 주제별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구금의 특정한 측면들을 기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구금당국과 대화를 위한 기초** : 방문은 당국 및 구금시설의 책임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양측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두는 한, 이 대화는 담당자들의 직무 환경이나 그들이 파악한 문제들을 공유하는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구금환경에 관심이 있는 외부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일종의 보호와 심리적 지원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3) 반면 외부에서 수집된 구금상태에 대한 정보는 구금 장소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그 개입의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의 유효성과 정당성에 대하여는 현장방문보다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3.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기본 원칙

방문을 통한 구금시설 모니터링은 매우 섬세하고 민감한 업무이다. 윤리적 측면과 효율적 측면에서, 방문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명심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음의 원칙은 주로 유엔 인권감시 훈련편람에서 다루고 있는 18개의 기본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⁴⁾ 필요할 경우 일부 원칙들은 구금시설 감시에 대한 특성을 참작하여 수정되었다.

관련 메커니즘은 이런 핵심적인 속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채용계획, 업무관행,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료평가는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 모니터링을 할 때 내면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증명되었다.

1. 해를 끼치지 마라

수용자는 특별히 취약하므로, 방문자들은 이들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문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고문이나 학대의 주장이 있을 경우 비밀유지, 안전, 민감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불충분하게 계획되거나 불충분하게 준비된 방문, 방법론을 준수하지 않은 방문 또는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은 방문은 도움이 아니라 사실상 해만 줄 수 있다.

2. 좋은 판단력을 기르라

감시자는 감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의 수가 몇 개든, 상관성이나 정확성이 높든지 간에, 규칙이 건전한 개인적 판단과 상식을 대

4)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감시훈련편람 V장, pp. 87-93 뉴욕, 제네바, (2001)

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감시자는 모든 상황에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

3. 관계당국과 담당자를 존중하라

담당자와 조사단 상호간에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구금시설에서의 업무는 위태로워진다. 방문자는 항상 관계당국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문제발생시 문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직의 구성과 그들의 각각의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개별 직원이 있더라도, 많은 문제는 개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조성하는 부적절한 구금제도에서 온다. 또한 방문자는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종종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어려운 일을, 더욱이 많은 나라에서 박봉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4.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존중하라

수용된 이유와 상관없이 존중과 예를 갖춰 수용자를 대해야 한다. 방문자는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

5.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라

방문자는 수용자와 직원에게 모니터링의 목적과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일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문자는 성사시킬 가능성이 낮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 또는 완수하지 못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6. 비밀을 준수하라

비공개 면담에서 얻게 된 정보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방문자는 수용자의 명백한 의사표시에 근거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수용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어떠한 대리 행동도 할 수 없다. 방문자는 수용자가 자신을 대리하여 누군가가 조치를 취했을 때의 이점과 가능한 위험 또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문자, 의사, 통역사 모두 비밀을 지켜야 한다.

7. 안전에 유의하라

안정이란 방문자의 신체적 안전, 방문자와 접촉하는 수용자의 안전과 구금시설의 안전을 의미한다.

방문한 시설의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담당자에게 조인이나 특별허가를 요청하라.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특정 시설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거나 특정한 수용자와의 면담에 조건을 부과하곤 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따를 것인지 또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조사단의 책임이다.

방문자는 관계당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시설에 어떠한 물건도 반입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방문자는 신분증명수단을 패용해야 한다.

방문시 만난 수용자의 안전에 대해서 방문자는 수용자 개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정보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방문자는 이전에 방문했던 수용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 대부분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

8. 일관성, 지속성, 인내심을 유지하라

방문기구의 정당성은 그 업무의 적절성, 지속성, 일관성의 결과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확립된다. 구금시설을 감시하는 것은 효율성, 규칙성, 지속성을 요구한다. 이는 같은 시설을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충분히 근거 있는 결론을 내리고 권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문 후 후속절차에 있어서도 지속성이 중요하다.

9.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라

잘 정리된 보고서와 적절한 권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중에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민감성을 발휘하라

특히 수용자들과 면담할 때 방문자는 상황, 분위기, 개인의 요구와 더불어 수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고문이나 학대의 주장의 경우, 방문자는 정신적인 재충격(retraumatization)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참조. 제4장: 고문과 학대 참고)

11. 객관성을 유지하라

방문자는 실제 사실을 기록해야 하고 감정의 개입이나 선입견 없이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해야 한다.

12. 거짓 없이 행동하라

방문자는 모든 수용자, 관계당국, 직원과 그들의 동료방문자를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방문자는 개인적 이익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되며, 양심적이고 솔직해야 한다.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방문자는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인권기준을 따라야 한다.

13. 존재를 느끼게 하라

구금시설 안에서 방문자는 직원과 수용자들이 조사단의 감시방법과 권한을 알고 그들이 조사단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방문자는 신분증명수단을 보여야 한다. 방문기구의 업무는 구금시설 밖에서 서면보고서나 언론을 통해 신중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참조. 제3장 5절: 방문의 후속조치)

참고 문헌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7, Training Manual on Human Rights Monitoring*, New York, Geneva, 2001.
 -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Monitoring*, Warsaw, 2001.
-

제 2 장

구금시설 모니터링 기구

오랫동안, 국가차원의 구금시설 감시는 내부 행정기관에 의한 감찰에만 기초하였다. 그러나 구금시설에 대한 폭넓은 공적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금당국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다른 형태의 국내적 감시제도가 생겨났다. 동시에, 국제적 통제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국제기구에 의한 구금시설 감시가 서서히 현실화되었다.

국제적 및 국내적 방문기구에 의한 구금시설의 예방적 방문을 근간으로 하는 최근 OPCAT의 채택에 의해, 국제적 및 국내적 기구는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또한 OPCAT의 채택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조약에서 국가적 방문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기준과 보호장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장의 1절과 2절은 국내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모니터링기구의 종류를 개관한다. 3절은 OPCAT이 제안하는 방문기구 특히 국가적 예방기구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절은 국내방문기구들과 국제방문기구 사이에 필요한 조정의 문제들을 다룬다.

1. 국내적 차원의 방문

구금환경을 감시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담당하는 국가당국의 책임이다.

“구금시설에서 관련 법률과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구금 혹은 징역을 위한 시설의 행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유능하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책임을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토록 한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징역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29조, §1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적 통제로 보충되는 내부감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외부감시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은 미비하였다.

1.1 내부 조사

대부분의 국가는 통상적인 행정운영의 일환으로 구금시설방문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에 의해 내부 행정감찰을 하고 있다. 이런 행정기구의 역할은 보통 국가기준, 행정부 지침과 규정들을 구금시설의 규칙과 절차가 준수하는지를 통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수용자의 존엄성과 인권과 관련하여 폭넓은 접근을 하는 예는 드물다. 따라서 내부감찰절차를 통해 그 업무를 충분히 실행한다고 해도 구금환경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기 쉽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부감찰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보충되어야 한다.

1.2 사법적 감찰

판사와 검사는 권한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구금시설을 자주 방문하고, 구금환경을 조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판사”가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구금시설을 방문 하고,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한다. 사법적 감찰은 빈도와 성격에 있어 다양하다. 판사가 구금환경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경우 사법감찰은 효과적일 수 있다.

1.3 독립적인 외부기구의 모니터링

최근 몇 년 동안, 구금장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은 독립적인 국내 모니터링기구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기구는 더욱 전문화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외부기구는 매우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회에 의해 설립된 공식적 기관이나 정부의 부처, 시민사회 또는 이런 두 형태가 복합된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국회에 의해 설립된 외부기구의 예로는 옴부즈맨이나 국가인권기구가 있다. 이 기구들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구금시설 방문감시를 포함하여 개별적 진정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감시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구금시설방문의 깊이와 방문 빈도가 한결같지는 않

다. 더구나 이들의 구금장소 방문은 향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금환경을 예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대부분 구금시설에 대한 특정한 진술이나 주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개별적 진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옴부즈맨과 국가인권기구의 장점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인 만큼 그 권고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는 특정 장관 소속하에 특별감시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이 기구는 부처 산하에 있는 구금시설들의 구금환경을 관리하고 정부에 개선점을 권고하는 이중의 권한을 가진다. 기구는 공무원, 비정부기구 대표자 또는 시민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지거나 이 세 종류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관들은 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제출한다. 이러한 권고는 비정기적인 보고서로 작성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관련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위한 승인과 동의를 받기도 한다. 시민사회에 의한 감시는 당국으로부터 보다 더 큰 독립성을 가지며, 따라서 보다 솔직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 때문에 그 결과와 보고서에 더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부나 심지어는 개별적 장관들과의 서면합의에 있으므로 감시자들은 당국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심지어 여행경비와 같은 자금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기구들이 일관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2.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방문 기구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제적십자사(ICRC)는 무력분쟁의 상황에서 전쟁포로가 수용된 구금시설을 방문할 권한을 부여받은 첫 번째 기구였다. 이후에 이 권한은 ICRC가 발의하고 관계당국의 동의를 얻어 국내적 소요나 긴장상태에서 위원회가 수용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그리고 ICRC의 권고는 분쟁과 관련 없는 일반수용자

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구금시설을 방문할 권한이 있는 기존의 국제기구는 대부분 사후대응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고, 고문이나 학대에 대한 정보를 (예: 유엔특별보고관, CAT를 통해) 입수한 후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다. 방문을 주기적으로 또한 예방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진 기구는 거의 없다. (아프리카의 구금시설과 구금환경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드문 사례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현장방문만을 수행할 수 있다.

두 개의 국제기구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에 근거해 활동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1987년 특별히 구금시설에 대한 예방적 방문의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최초의 기구이다. 협정의 비준으로, 가입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언제든지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방문을 받게 되어 있다. OPCAT에 의해 설립될 고문방지소위원회도 진정의 접수에 상관없이 또 가입국의 사전승인 없이 구금시설의 정기적인 방문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표 1〉 국제적 및 지역적 방문 메커니즘

국제기구		
종류	법적 근거	특징
유엔 주제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초법적, 즉결,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강요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UN인권위원회의 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국가의 사전 동의 자신의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금시설에 대한 비정규적 방문 보고관에게 전달되고 증명된 정보와 해당국가에서 이루어진 방문에 따른 정보에 근거한 권고의 제출 국가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공개 보고서

(계 속)

국제기구		
종류	법적 근거	특징
고문방지위원회	UN협약(1984)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가입국만 방문가능⁵⁾ • “조직적인 고문”의 경우에만 방문가능 • 해당국가의 승인 • 비공개절차
고문방지소위원회 ⁶⁾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OPCAT)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의정서 가입국에 대한 방문 • 예방적 방문의 목적을 위해 설립될 예정 • OPCAT의 비준이나 승인에 의해 사전 동의 없이 행해지는 방문의 수용 • 주기적인 예방적 방문, 한 번의 후속방문 가능 • 구금시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 • 비공개보고서, 국가에 의한 보고서 공개 승인 또는 협력이 실패하는 경우 위원회에 의해 보고서 공개 가능 • CAT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 • 국가적 예방메커니즘과 직접적 접촉
국제적십자사(ICRC)	분쟁상황에 관한 제네바 협정 (1949) 및 기타 상황에 대해 맺어진 해당국가와의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상황이나 내전에 관련되어 체포되고 구금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구금 시설 감시. 일부 경우, 감시는 자유를 박탈당한 다른 범주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 국제적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군 수용자와 분쟁에 연루된 외국 출신 민간인수용자에 대한 방문을 승인해야 함. • 다른 상황의 경우 방문은 관계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분쟁이나 분규,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영구적이고 정규적인 방문, 구호 또는 재활 활동(관계당국의 동의를 얻어 방문) • 가족관계 회복 지원 • 비공개 절차와 보고서

(계 속)

5) 국가가 제20조에 따른 선언을 하지않은 경우

6) 소위원회는 20번째로 비준되는 선택의정서가 발효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설립될 것이다

지역적 메커니즘		
종류	법적 근거	특징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협약 (1978)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1948) 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이나 선언의 회원국에 대한, 구금 시설을 포함하는 국가방문 • 각 방문은 관계국가와 협상필요 • 국가상황에 대한 공개보고서
아프리카의 구금시설과 구금환경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프리카인권 위원회 결의안에 의한 캄팔라 (Kampala)선언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인권헌장의 회원국에 대한 방문 • 해당국가와의 합의 이후에만 방문 • 구금환경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보고서는 해당국 정부의 논평과 소견을 통합한 후에 공개
유럽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에 관한 유럽협약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가입국 방문 • 예방적 접근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 • 무제한 접근: 언제 어느 곳이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시설 • 정기적 또는 특별 방문(“상황이 요청할 경우”) • 이론적으로는 비공개 보고, 그러나 사실상 공개

3.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국제적 국내적 메커니즘에 의한 구금시설 방문을 상호 보완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선택의정서의 목적은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적 및 국내 기구에 의한 정기적인 방문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OPCAT, 제1조)

7) IACHR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들에게 선언을 적용한다.

3.1 고문방지협약 소위원회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의정서 가입국⁸⁾ 추천하고 선출하는,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법제도를 대표하는, 열 명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소위원회의 업무는 “비밀유지, 공정, 비차별, 객관성”의 원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제 2조)

소위원회의 권한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다. 교정시설이나 경찰서뿐만 아니라 망명신청자 보호소, 군대수용소, 청소년보호시설, 정신병원, 국제공항의 환승구역 등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⁹⁾

소위원회는 “정기적인 방문”을 수행할 뿐이고, 프로그램을 설립한 후 당사국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정기 방문에 대한 단기 후속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방문에 관련된 업무와 권한 :

- 수용자의 수, 처우와 구금환경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모든 구금 장소와 시설에 대한 접근. 국가는 국가방위, 공공안전, 국가적 재해, 또는 방문예정시설에서의 심각한 무질서와 같은 위급한 이유로 당사국이 방문을 임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 비공식적으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
 - 방문할 곳과 면담 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 또한, 소위원회나 국가적 예방기구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보복이나 제재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제15조)
-

8) 이 수는 50번째 비준 이후 25로 증가하게 된다.

9) 이러한 구금 장소의 유형은 국가방문기구의 경우와 같다(아래의 내용을 참조하라).

방문 후 소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를 포함한 비공개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이 있다면, 국가적 방지메커니즘에도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비공개지만 당사국은 이의 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국가는 권고를 검토하고 실행을 위한 대화에 응해야 한다. OPCAT는 또한 권고의 이행을 지원하는 특별한 자발적 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당사국이 협력을 거절하면 소위원회는 공식 성명이나 보고서 공개를 채택하도록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3.2 OPCAT 산하의 국가적 예방기구

OPCAT에 규정된 기준과 척도들은 “국가적 예방기구” 라고 명시된 국내 방문기구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 기준과 척도들은 다른 국내방문기구들과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이 기준과 척도들은 국내 방문기구가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보장책에 대한 국제적 고려 중에서 최신의 것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3.2.1 국가적 예방기구 설립 또는 지정

회원국은 “국내수준에서 고문방지를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독립적인 국가적 예방메커니즘을 유지, 지정 또는 설립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17조)¹⁰⁾ 따라서 일부 국가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해야 하고, 이미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 기구들이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의무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회원국이 효과적인 국가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원회는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국내 메커니즘 설립에 대하여 조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위원회는 국가적 예방 기구에 직접적인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10) 당사국은 OPCAT이 발효된 1년 이내 또는 비준 즉시 국가방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현존하는 기구를 OPCAT에 따라 “국가적 예방기구”로 선정하는 경우, 국가는 그 기관이 선택의정서에 정의된 기준, 특히 기능과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또한 국가적 방지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위원회는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역량과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방지기구의 설립이나 지정이 다른 국내방문기구, 특히, 비정부기구들이 수행하는 방문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의한 감시활동은 고문을 방지하는 데 있어 상보적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3.2.2 국가적 예방기구의 형태

OPCAT는 국가적 예방기구가 갖추어야 할 형태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회원국은 각 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기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국가적 예방기구는 국가인권기구일 수도 있고, 옴부즈맨, 의회 위원회, NGO, 일반시민에 의한 방문, 또는 구금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전문적 기구일 수도 있다.

회원국은 국가의 구조(예: 연방주의)에 따라 또는 주제별로 다수의 국가적 예방메커니즘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가 다수의 국가적 예방기구를 갖기로 한다면, 지역에 따른 것이거나 주제에 따른 것이거나 간에, 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국가수준에서 각 방문기구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를 두는 것이다.

3.2.3 국가적 예방기구의 권한

구금시설 방문의 예방적 효과는 방문의 정규성과 방문후의 후속조치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가적 예방기구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을 수행하고 권고를 제출해야 한다.

권한의 범위 (제19조)

국가적 예방메커니즘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 수용자에 대한 구금시설의 처우에 대한 정기 조사
- 관계당국에 개선 권고
- 법률안 제출 또는 의견 제출

구금시설의 정의

OPCAT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곳을 포함한다.

- 경찰서
 - 보안 초소
 - 미결 수용자 구금시설 (pre-trial detention center)
 - 재구류된 미결 수용자 구금시설 (remand prison)
 - 형이 확정된 자들을 위한 교정시설
 - 소년 시설
 - 출입국 관련 시설
 - 국제공항의 환승구역
 - 망명신청자 보호시설
 - 정신병원
 - 행정보호시설
 -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다른 모든 곳
-

3.2.4 국가적 예방기구에 대한 보장

OPCAT는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국가적 예방메커니즘에 대한 보장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상호의존적이며 국가적 예방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침의 하나로서 OPCAT는 회원국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련한 원칙”(파리원칙¹¹⁾)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적 예방기구에 대한 보장과 기준 (제18조)

OPCAT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적 방지메커니즘은 다음을 보장받아야 한다.

- 기능적 독립
 -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적 지식
 - 적절한 자원
-

기능적 독립

국가적 예방기구의 독립성은 고문과 그 밖의 형태의 학대를 방지하는데 있어 이러한 기구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이는 국가적 예방기구는 관계 당국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계 당국은 국가적 예방기구를 국가기구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이 원칙은 1991년 유엔 인권센터에 의하여 파리에서 개최된 워 에서 채택되었
다. 인권위원회는 이 권고를 1992년 4월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국가적 예방기구의 기능적 독립은 다음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

■ 독립적인 설립 근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예방기구는 이상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규칙과 절차를 기안할 수 있는 능력

절차규칙들이 외부 당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어서는 안된다.

■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의 분리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그 독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가적 예방기구는 정부 부처나 사법기구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독립적이고 투명한 임용 절차

임용 절차는 임용 기간, 특권과 면책, 해고 및 불복신청 절차 및 임용 방법과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은 “기구 구성원에 대한 안정된 권한은 실질적인 독립성의 근간이 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임용은 구체적 직무기간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법령에 의해 발효된다.”고 규정한다. (제3원칙)임용 절차는 또한 시민사회와 협의의 거처야 한다.

■ 재정의 독립

재정의 자율성은 기본척도이며, 예산을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제안하는 능력 및 충분한 재정을 의미한다.

■ 투명한 업무관행과 공개보고

업무와 기능에 대한 공개적 보고를 통해 국가예방기구는 자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독립적인 기구로 인식될 것이다.

적절한 전문성과 지식

회원국은 전문가 구성원들이 인권과 자유박탈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필요한 역량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도록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OPCAT는 또한 국가 예방메커니즘의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과 소수집단이 적절히 대표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²⁾

적절한 구성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메커니즘들에 있어 이하를 포함하는 다원적 구성이 가장 적절하다.

- 변호사
- 간호사
- 법의학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
-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 시민사회와 NGO 대표자
- 인권, 인도주의법, 교정시스템 및 경찰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

적절한 자원

재정의 자율성은 기본적 기준이며, 이러한 자율성 없이 국가적 예방기구

12) 이는 파리 원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국가기구로 하여금 다원적인 구성이 보장을 전제로 설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가 의사결정에 독립성을 가질 수 없다. 국가 예방기구는 자신의 기본 업무를 재정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파리원칙은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직원과 공간을 확보하도록”(제2원칙) 지원하는 충분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2.5 구금시설에 접근할 권리

OPCAT에 따르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시설에 대한 예방기구의 접근이 허락되어야 한다. 국가적 예방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몇 가지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적 예방기구는 다음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20조)

- 구금시설과 관련된 설비, 시설, 또한 기구가 선택하는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
-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수 및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와 구금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수용자의 동의 하에 배석자 없이 기구가 선택하는 수용자와의 비공개 면담. 당국은 조사단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보복 압력, 위협,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적 예방기구에 다음의 사항이 허용될 것이 권장된다.

구금당국에 대해 사전통보 없는 불시 방문. 모든 경우 접근은 신속히 허용되어야 한다.

3.3 선택의정서에 따른 후속방문

3.3.1 보고와 권고

국가적 예방기구는 OPCAT 가입국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각 국가적 예방기구가 결정해야 하지만 방문보고서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모든 경우에 연례보고서는 관계 당국에 제출된 권고를 언급해야 한다. 정부는 그렇게 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 예방기구의 모든 방문보고서의 공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국가 예방기구는 보고서를 관련 UN소위원회에 비공개로 송부할 수 있다.

국가 예방기구는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정보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야 하며, 어떠한 개인 정보도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3.3.2 보완적인 예방 활동

국가 예방기구는 그들의 방문과 권고를 학대예방과 구금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활동들로서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수용자를 담당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훈련세미나 조직
- 홍보활동
- 시행 또는 초안단계의 법령에 관한 제안과 의견 제출. (제19조 c항에 따름)

3.3.3 소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접촉

앞서 언급한 대로, OPCAT는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및 국내적 노력의 상보성에 근거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OPCAT는 국가 예방기구가 소위원회와 직접적인 연락을 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회원국은 이러한 연락을 권장하고 촉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적 및 국제적 기구는 고문 방지를 위한 방법과 전략에 대하여 실질적 교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와 국가 예방기구는 만나서,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국가 예방기구는 보고서와 기타 정보를 국제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국가 예방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평가하는데 국가적 예방기구에 조언을 하고 지원할 수 있다.

4. 다양한 방문기구와의 협력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 있어 다양한 방문 메커니즘의 존재는 혼란을 피하고 최적의 영향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기구 사이에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국내방문기구 간의 협력

단일 국가 내에 여러 국내방문기구들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NGO와 옴부즈맨) 이들의 감시활동을 조정하는 방식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협력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다. 감시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보완적 활동, 특정한 문제에 대한 협조 또는 파트너십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하나 또는 다수의 국내방문기구들이 OPCAT에 따른 “국가 예방기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이다. OPCAT의 목적은 감시기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시기구들의 효율성을 강화 시키는 것이다.

조정은 감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관계당국이 보기에 보다 더 효과적이게 한다.

국제기구의 현장 사무소들(유엔인권현장사무소, 유럽보안협력기구)과도

조정은 필요하다. ICRC와의 조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사가 이론적으로는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주재국에서 그 구금분야 업무방법은 국제기구보다는 국내방문기구의 방법과 비슷하다.

4.2 국제기구와 국내기구 간의 협력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OPCAT는 “국가적 예방기구”와 소위원회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한다. 이는 이러한 기구들의 상호보완적 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OPCAT는 지정된 국가적 예방기구와 소위원회의 직접적인 접촉만을 명백히 규정하지만 다른 국내방문기구들이 소위원회에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이들의 활동을 더 효과적이게 할 수 있다.

국내방문기구의 정보와 보고서는 다른 관련 유엔기구 및 지역적 인권메커니즘에 제출될 수 있다.

UN 기구

UN인권위원회에 따른 특별 절차

- 고문 특별보고관
-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특별보고관
- 초법적 사형집행에 대한 특별보고관
- 인권옹호자들에 관한 특별 대표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UN조약기구

- 인권위원회
- 고문방지위원회
- 아동권리위원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다른 주제별 기구들 (예: 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전문기구

- UN난민고등판무관실 (난민과 국내실향민에 대한 보호프로그램)
 - UN개발프로그램 (법률개혁프로그램)
 - 유니세프(UNICEF) (구금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

지역기구

미주 :

- 미주인권위원회

아프리카 :

-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아프리카의 구금시설과 구금환경에 대한 보고관)

유럽 :

- 유럽이사회 (유럽고문방지위원회)
 - 민주제도와 인권에 대한 OSCE사무소 (ODIHR)
-

4.3 국제 방문기구 간의 협력

국제 방문기구들은 조정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비밀유지 규정에 의해 때때로 엄격히 규제된다. 그러나 이들 국제 방문기구는 서로 협의해야 한다.

OPCAT에서는 소위원회와 현존하는 지역적 방문메커니즘 사이의 조정을 제31조에서 같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협의하고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OPCAT와 유럽고문방지협약에 동시에 가입한 국

가들에게 “유럽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국가방문보고서와 이에 대한 정부답변이 비공개로 소위원회에 체계적으로 송부될 것을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관련 사실들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¹³⁾

미주인권위원회와 아프리카의 구금시설과 구금환경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경우와 같이 국가보고서가 공개되는 곳에서는 소위원회와의 협의와 협력은 더 수월할 것이다.

또한 OPCAT는 “선택의정서의 규정들은 회원국이 4개의 제네바 협약에 대해 가지는 의무나 국제인권법이 미치지 않는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ICRC에게 승인하는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향후 설립 될 소위원회와 ICRC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와 ICRC간에 그러했듯이 상설적 연락라인을 설립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Visiting Places of Detention: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by Selected Domestic Institutions, seminar report*, Geneva, 2004.
-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The Impact of External Visiting of Police Stations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Ill-Treatment*, Study Geneva, 1999.
-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of International Mechanism Carrying Out Visits to Places of Detention, seminar report*, Geneva, 1997.

13)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3차 일반활동보고서(활동기간 : 2002.1.1. - 2003.6.31.) CPT/Inf(2003)35, §22

OPCAT에 관한 자료

-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 Manual for Prevention*, Geneva, 2004.
-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Geneva, 2004.

유럽고문방지위원회에 관한 자료

- Malcolm D. Evans, Rod Morgan, *Preventing Torture – A study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larendon Press. Oxford, 1998.
- Malcolm D. Evans, Rod Morgan, *Combating Torture in Europ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1.
- APT Series on Prevention of Torture in Europe (in French and English), in particular.
- Brochure n°3-Barbara Bernath, *CPT History, Mandate, Composition*, Geneva, December 1999.
- Brochure n°4-Urshla Kriebaum, *CPT Modus Operandi*, Geneva, May, 2002.
- APT/Council of Europe, *A visit by the CPT – What's it all about? 15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police*, May 1999.

국제적십자사(ICRC)에 관한 자료

-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Deprived of Freedom*, Geneva, 2002.
-

방문 절차

단계

해야 할 일

방문조사 준비 단계
(2절과 3절)

-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수집
- 방문목적 정의
- 조사단 구성

방문 단계
(4절)

- 구금시설의 장과 면담
- 시설 시찰
- 서류 조사
- 수용자와의 개별 면담
- 다른 구금시설 직원들과 면담
- 구금시설의 장과 최종면담

방문후 조치 단계
(5절)

- 방문에 대한 내부보고
(Internal notes on the visit)
- 방문보고서
- 후속 방문
- 전체 보고서
- 방문 후 후속조치
- 연례 보고서

제 3 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방법

1. 모니터링의 기본 구조

구금환경의 모니터링은 구금환경이 국내적 및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처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의 박탈과 관련이 있는 일반적인 기준들로는 대부분 관련 국제인권조약(제4장 참조)과 국내법이 포함된다.

UN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은 자유박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틀이다. 이 기본원칙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조사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 및 참고자료가 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the UN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90년 12월 14일 UN총회 결의안 45/111로 채택됨.

1. 모든 수용자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처우되어야 한다.
2.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그러나 현지사정이 요구한다면, 수용자가 속한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문화적 계율은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용자를 구금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교정시설의 책임은 국가의 다른 사회적 목적 및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발전을 증진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임에 부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5. 구금에 의해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제한을 제외하고 모든 수용자는 세계인권선언과, 당사국이 가입한 경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다른 UN협약에서 규정한 기

타 권리를 여전히 갖는다.

6. 모든 수용자는 인성의 완전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7. 징벌로 사용되는 금치의 폐지 또는 제한을 위한 노력하고 장려되어야한다.
 8. 수용자가 국가의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본인과 가족의 소득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보수가 지급되는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수용자는 그들이 처한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당사국 내의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0. 지역사회와 사회단체의 참여와 지원, 그리고 피해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출소자가 최선의 여건 하에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1. 위의 모든 원칙들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절차를 기본으로 한다:

- a) 구금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록
 - b) 국내 및 국제기준에 대한 부합 여부 분석
 - c) 권고사항 결정
 - d) 권고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후속조치
-
- a) 구금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록
- 방문기구는 가능한 철저하게 구금상황과 관련한 국가의 현황, 즉, 실무관행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 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관계 당국, 직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
 - 수용자의 생각
 - 다른 이용가능한 정보원의 견해 (변호사, 수용자 가족, 협회 그리고 NGO)

의 견해)

■ 조사단이 구금시설에서 관찰한 내용

조사단은 감독기관에 진정을 이송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위와 같은 모든 정보원들을 필히 참작하여야 한다. 이는 방문기구가 구금상황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의미있는 권고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심각한 학대와 고문이 의심될 경우, 진정에 관련된 자를 위협에 처하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 상부에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고문과 학대 참고)

b) 국내 및 국제기준에 대한 부합 여부 분석

두 번째 단계로써 방문기구는 구금상황이 관련 국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방문기구는 검토한 사항들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예를 들어 기준과 비교하여 현실은 어떠하다)에만 그치지 말고, 적어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일부분이라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

- 국내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기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적용되지 못하거나 오직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 기준이 수용자를 관리하는 구금시설직원의 직무를 위해 실질적인 기본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
 - 직무의 특정 측면에서 직원훈련이 불충분한 결과 직업문화가 기준과 다르게 된다.
 - 현재 가능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으로는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c) 권고사항의 결정

이와 같은 분석은 기준을 단지 반복하기 보다는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권고사항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문제와 문제발생의 이유를 이

해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가능하다.

- 민감한 부분과 주된 문제의 파악
- 권고에 시간요소를 통합 (예: 어떤 것이 장기 중기, 단기에 실행될 수 있는지)
- 특정 문제에 참신한 해결책을 제안
- 기준의 개발과 발전에 공헌

d) 권고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후속조치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국이 수용자 처우 및 구금상황을 개선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구금시설 방문과 보고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감시와 후속조치는 감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는 환영되어야 한다.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문기구는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계획

2.1 방문프로그램의 계획

방문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내방문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의 목록
- 방문의 통보 여부
- 방문할 장소의 순서 및 각 방문에 걸리는 예상소요시간
- 한 시설에 대한 방문의 빈도

2.2 구금시설의 선택

상황에 따라서 방문기구는 모든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인지 아

니면 선택된 구금시설만 방문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할 구금시설을 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수용자가 처한, 잠재적 또는 현실적 위험

- 수용자를 심문할 수 있는 구금시설
- 여성, 청소년, 외국인, 소수자와 같이 매우 취약한 상태의 수용자
- 위험성이 높은 도시, 또는 지방에 있는 시설

이용가능한 정보 : 진정건수(진정이 전혀 없거나 너무 많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수용자의 수, 구금시설의 수용인원 그리고 과밀수용의 정도, 그리고 다른 국내 및 국제방문기구로부터 받은 정보

표본 :

- 국가의 구금시설을 대표한다고 간주되는 구금시설
 - 방문 빈도가 낮은 구금시설 (주로 도시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구금시설이 이에 해당)
 - 여러 부류의 수용자 또는 다양한 구금시설을 포괄하는 교차선택
-

2.3 방문기간

방문시 방문기구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방문은 조사단이 구금시설의 책임자, 그 직원, 수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 등과 면담하고 시설과 생활환경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방문기간은 방문이 수용자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필요성과 구금시설의 기능에 내재된 제한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기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다.

- 조사단의 규모
 - 방문할 구금시설에 대한 사전정보
 - 조사단이 이미 그 시설을 방문했는가?
 - 방문시간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제3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는가?
 - 구금시설의 크기와 수용자의 수
 - 구금시설의 종류
 - 적용되는 보안제도(보안수준이 높을수록 구금시설 내에서 움직이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같은 구금시설에서 다른 구금기준의 적용을 받는 다른 유형의 수용자집단이 있는가? 이 경우에는 다양한 구금환경을 조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시설의 인력 사정 또는 제도적 여건
 - 수용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통역 필요성
 - 자료 수집 : 자료의 수집은 방문 마지막에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 구금시설 간의 이동 시간
-

2.4 방문의 빈도

경험상 방문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질 때 고문 또는 학대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방문의 빈도는 다음 몇 가지 사항들에 의해 결정된다.

방문의 빈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구금시설의 종류
 - 일반적으로 경찰서와 같은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정시설보다 더 자주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심문이 이루어진다.
 - 수용자의 외부세계와의 제한된 교통
 - 수용자의 잦은 변동
 - 이미 알려져 있거나 예견되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
 - 방문기구의 필요와 구금시설직원의 담당 업무 수행사이의 균형. 만약 방문기구가 어떠한 타당한 이유 없이 구금시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반복되는 형식적인 방문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그리고 방문의 빈도는 대개 보호문제의 중요성과 깊이 관련된다. 방문기구가 조사에 협조한 수용자가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다면, 협조한 수용자에 대해 지체 없이 후속방문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5 조사단

2.5.1 구성

구금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공중위생과 같이 특별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조사단에는 적어도 1인의 법학 전문가와 또 다른 1인의 의학전문가(의사 선호)가 있어야 한다. 조사단의 의사 포함 여부는 고문과 학대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조사단에 의사가 있는 경우 환자의 비밀을 지키면서 해당 구금시설의 의무직원과 보다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다.

교육자, 심리학자, 기술자와 같은 전문가도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문적 기술 이외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세심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인 대인관계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조사단에 남성과 여성의 수적 균형은 업무수행시 큰 장점이 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수용자와 구금시설직원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서로 다른 기회를 가지게 된다. 수용자와 구금시설직원은 대화의 주제에 따라 남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여성을 선호하기도 한다. 남성우위사회에서의 수용자는 여성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을 덜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비가 균형적인 조사단은 구금환경에 대해서 더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민족과 지역 출신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구금시설을 방문할 경우 수용자의 민족과 출신지역을 고려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도 조사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한다.

2.5.2 규모

조사단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방문의 목적
- 구금시설과 구금시설의 문제가 알려진 정도
- 구금시설의 크기와 수용 인원

- 구금당국에 의한 제한 조치
조사단의 규모는 2인에서 8인 정도가 적당하다.

2.5.3 훈련

구금시설 감시는 매우 어렵고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방문기구의 구성원은 적절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직무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교육은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감시의 기본원칙, 비밀 유지와 항상 염두해야 할 수용자의 안전
 - 법적 기본 구조, 특히 관련 국제기준, 국내법 규정 등
 - 자유 박탈과 관련한 주요 논점과 문제점
실무교육은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방문의 방법
 - 수용자와의 면담 방법
 - 당국, 구금시설직원, 수용자 각각에 대한 행동
 - 방문 동안 지켜야 할 기본보안규칙
 - 보고서 작성
 - 방문기구 내에서의 협조 및 의사소통 방법
-

3. 방문준비

3.1 준비작업

방문이 최적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방문기구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미리 안배해두어야 한다.

방문할 구금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 이전에 방문했을 때 얻은 정보와 다른 단체(다른 방문기구, NGO, 대중매체, 출소자, 수용자 가족, 변호사, 자선단체, 구금시설자원봉사자 등)에서 얻은 개략적인 정보
- 해당 구금시설의 감독기관과 상급기관
- 구금시설의 수용가능인원, 수용자의 수와 지위
- 이미 알려져 있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제

위와 같은 정보를 기초로 당면문제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문목적의 설정

- 구금상황에 대한 일반적 평가
- 구금의 특정사항, 개별사례, 또는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방문
- 기타

조사단 업무의 조직

- 정보의 표준화된 수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상황에 대한 서식, 질문지, 체크리스트¹⁴⁾ 준비

- 조사단을 대표하고 방문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있는 대표 선정
- 조사단의 모든 구성원은 방문할 구금시설, 방문의 목적, 방문의 형식에 관하여 같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조사단 구성원의 전문지식, 방문할 구금시설의 특징 및 규모, 방문예정기간에 따라 구성원 내 업무 분담.

구금시설과의 사전접촉 계획

- 방문의 통보: 조사단은 사전통보 없이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 거리나 시설의 규모로 인해) 특정한 방문의 경우 사전에 통보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장비(예 : 사진기, 녹음장비)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방문시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구금시설 외부 기관과의 접촉 계획

- 행정당국
- 사법당국
-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구금시설과 연관이 있는 국가기관
- 기타 구금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 기타

3.2 방문목적 설정

한 번의 방문으로 조사단이 구금의 모든 측면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몇 년의 간격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방문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히 정하기 위해, 방문의 준비를 위해 수집된 정보, 특히 수용자, 출소자, 다른 믿을만한 출처가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한 구금시설을 여러 번 방문하기로 한다면 방문프로그램은 각각의 방문에 다른 목적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첫 방문 시에는 건물, 수용거실, 공동시설 과 같은 물질적 기본시설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조사가 행해졌다면 조사단은 다음의 사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 구금시설내의 청원
- 징벌제도
- 외부세계와의 교통
- 의료처우
- 수용자와 구금시설직원/당국과의 관계
- 이 가이드의 제4장은 구금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과 방문동안 조사해야 할 방문 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어 있다. 관련된 논점은 부록1의 체크리스트에 잘 요약되어 있다.

4. 방문

4.1 구금시설의 장과의 최초 면담

구금시설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소장 또는 부소장의 대화를 시작으로 방문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당국과 대화하는 첫 번째 단계인 이 면담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 방문기구와 조사단 구성원을 소개한다.
 - 방문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한다.
 - 조사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수용자 그리고 직원과도 비공개로 면담할 절대적 필요성을 설명한다.
 -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설명한다.
 - 소장에게 조사단이 방문시 규칙과 보안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 방문의 진행방법과 소요시간에 대해 설명한다.
 - 특별한 필요를 가진 수용자 집단(예를 들어 청각장애, 기타 장애를 가진 수용자)이 있는지, 지난 방문 이후 주목할 만한 변동사항 또는 사건이 있었는지 (특히 폭력 사건, 사망 또는 다른 비상사태) 등 구금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장에게 질문한다.
 - 구금환경과 수용자
 - 구금환경에 대한 문제점 및 그 이유
 - 개선방안에 대한 소장의 의견
 - 방문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면담할 시간을 결정한다.
-

방문기구가 같은 구금시설을 심각한 문제없이, 또는 구금상황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여러 번 방문해왔다면, 최초 면담은 의례적이거나 친분적인 측면에 한정되어도 무방하다.

4.2 수용자 기록과 다른 문서 열람

이 절에서 수용자 기록(registers)란 수용자와 이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원으로 본다. 특히 방문이 수 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문시작 단계에서 장부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부에서 얻은 정보는 필요하다면 방문 동안 확인할 수 있다.

구금시설의 유형에 따라 많은 장부가 존재할 수 있다. 장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수용자 신분 기록

- 수용자의 분류
- 입출소부
- 징벌부
- 진료기록부¹⁵⁾
- 기타

급여 관련 기록

- 음식, 위생, 의류, 침구류 등
- 의약품 및 의료도구
- 교육, 운동 그리고 여가용품
- 기타

구금시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

- 강제력 또는 화기의 사용
- 시설내 처우에 대한 장부: 급식, 작업, 운동 그리고 교육

15) 의료비밀 규정에 따라, 개인의 의료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오직 의료인의 자격을 갖춘 조사단원에 한한다.

활동 등

■ 사고발생 보고부

마지막 세 가지 기록은 수용자에 대한 학대가 있었을 경우 상황과 책임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당국은 조사단이 이들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사단은 구금시설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종류의 문서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내부규칙
- 구금시설직원 명단
- 구금시설직원의 근무일지

4.3 구금시설 방문

구금시설의 첫 번째 방문에서는 수용자 또는 수용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시설을 시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모든 조사단원은 구금시설의 장 또는 시설배치와 업무기능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간부와 함께 전체시설을 간단히 둘러보아야 한다. 이런 일반적 시찰 후, 또는 다음 방문시, 조사단은 책임분야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뉘질 수 있다.

구금시설의 시찰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건축물과 그 배치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구금시설의 건축적 특징과 물질적인 보안장치들(담장, 제한벽 등)은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수용거실, 혼거실, 뜰, 식당, 도서실, 휴게실, 운동실, 마당,

작업장, 접견실 등과 같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공간과 부엌, 의무실, 화장실, 세탁실과 같이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설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 구금시설의 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첫인상을 파악할 수 있다.

구금장소의 모든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서 관찰해야 한다.

- 수용자가 도착하여 입소 절차를 밟는 장소
- 격리실 및 징벌방
- 위생시설
- 독거실과 혼거실

조사단은 수용자에게 조사단이 시찰해봐야 할 장소가 있는 지 확인해보고, 그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조사단은 항상 숨겨진 수용거실이나 구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사단의 정보는 개인적 면담을 통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출소자나 구금시설을 전에 조사했던 방문자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직원을 위한 시설도 방문해야 한다.

4.4 수용자 면담

4.4.1 일반 사항

수용자와의 대화는 구금상태를 문서화하는 작업의 기초이다.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힘든 일이다.

여러 사람과 면담하는 경우나 한 사람과 면담하는 경우 모두 조사단은 대

회의 초기에 수용자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사단과 방문기구를 소개해야 한다. 조사단은 방문의 목적,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리고 면담의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집단면담이나 개별면담을 위한 도표나 질문지는 고려해야 할 모든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게 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부록1 체크리스트 참고). 그러나 조사단원은 면담시 수용자가 편안하게 느끼고 즉각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질문지가 너무 형식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면 이는 심문의 패턴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방법은 어떤 경우라도 피해야 한다.

조사단원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용자의 반응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코멘트나 질문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수용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조사단은 통역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다. 조사단원은 통역사가 통역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현지인, 동료수용자 또는 수용자가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역사로 이용하는 것을 피하고 전문통역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통역사에게 비밀보장의 의무를 상기시켜야 한다. 통역사에게 면담시 필요한 전문용어를 미리 알려준다면 통역사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조사단의 성비 구성은 개별 면담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 성적학대, 다른 종류의 폭력의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일 수 있는 피해자는 질문자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랄 지도 모른다. (제4장 고문과 학대 참조)

대부분의 경우에 조사단은 면담을 위해 제한된 수의 수용자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된 수용자는 해당 구금시설의 수용자의 여러 부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단은 이야기를 원하는 수용자나 구금시설 직원이 선택한 수용자만을 상대로 면담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나 구금시설 직원과 사담을 나누는 것도 신뢰를 쌓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4.2 집단면담

다수의 수용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조사단이 보다 많은 수용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가장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된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접하는 것은 수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 수용자들의 비공식적 지도자, 구금시설내의 분위기와 문화 파악 그리고 누구를 개별면담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 유용하다.

집단 면담시간은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면담은 ‘예’ 혹은 ‘아니오’의 답변 방식이 아닌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수용자의 답에서 수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는 그들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후속방문에서는 주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여 좀 더 체계적인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모순적이거나 의문스러운 정보가 수집된 경우 개별면담시에 조사단은 그들의 경험이나 다른 자료를 참조하여 재확인할 수 있다.

4.4.3 개별면담

개별면담이란 무엇보다 자유를 박탈당한 비정상적인 환경(외부사회의 규범 밖)에서 살고 있는 한 인간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수용자는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간과될 수 없는 고유한 삶을 가지고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종종 경시되고 그 결과 구금시설직원들과 때로는 외부인사들도 수용자에 대하여 단순화된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면담장소의 선택은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수용자의 눈에 조사단이 구금시설직원과 동급으로 보이게 되는 장소(예 : 사무실)와 같은 곳은 피해야 한다. 조사단은 구금시설에서 준비해 준 면담장에서 면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거실, 접견실, 뜰, 도서관 등은 모두 면담이 가능한 장소이다. 조사단은 도청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면담할 수용자의 의견

도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서에서는 장소를 선택하는데 더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개별면담은 직원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조사단은 상황을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전문제 : 조사단의 개인적 안전을 이유로 인한 제약사항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를 따를 것인지 아닌지는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방문기구는 사전에 그 조건에 대해 합의해놓아야 한다.

인터뷰 실시 : 1인 또는 2인의 조사자가 면담에 참여할 수 있다. 2인의 조사자가 면담할 경우 한 사람은 면담을 하고 다른 사람은 기록을 할 수 있다. 2인이 면담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면담을 진행하는 조사자가 더 집중하여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수용자로부터의 신뢰는 중요하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조사자는 수용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조사단이 구금시설에 온 이유,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면담한 내용의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조사자는 인내심을 지녀야 한다. 경험상의 이유 또는 감정적 상태, 그리고 장기간의 구금에서 생긴 시간개념의 상실, 기억손실, 강박관념 등으로 인하여 수용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개별면담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용자의 필요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다음의 각 사항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 구금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아야 하는 조사자의 필요성과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수용자의 필요성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심문

과 유사한 면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 면담시 수용자에 대한 공감과 면담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수용자와의 감정적 거리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점은 수용자의 감정적 상태에 달려 있기도 하다
-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수용자의 필요와 사전에 계산된 배정시간 내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조사단원의 필요 사이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 인터뷰는 대단히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전문적인 문헌들이 존재하며, 방문기구는 다음의 참고문헌들을 참고하거나 훈련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Giffard, Camille, *The Torture Reporting Handbook-How to document and respond to allegations of torture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Centre, University of Essex, United Kingdom, 2000, Part II Documenting allegations, pp. 29-51;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8, *The Istanbul Protocol,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w York, Geneva, 2001, chapter IV-General considerations for interviews.

이 출판물의 구입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록5 참조

4.4.4 수용자 담당 직원과의 면담

구금시설직원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그룹은 전적으로 감시만을

담당하고, 두 번째 그룹은 음식, 의료, 사회복지관련, 작업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금시설직원과의 면담은 구금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인다.

감시담당직원은 이들의 조직체계와 직무의 성격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감시담당직원은 수용자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사단이 감시담당직원에게 방문기구의 권한과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의 질문에 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방문기구의 차후업무에 좋은 기초를 제공한다.

구금시설 직원이 원한다면 조사단은 다른 직원이 듣거나 보지 못하게 하고 개별면담을 마련할 수도 있다.

4.5 구금시설 장과의 최종 면담

구금시설의 장과의 최종면담을 통해 방문을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조사단원은 소장과의 정리회담 전에 만나서 그들이 소장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논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조사단은 그들의 방문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방문장소의 장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 최종면담의 목적은 방문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과 문제점을 요약하여 소장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고문 또는 여러 형태의 학대 방지와 같은 긴급한 사건은 즉시 소장에게 전해져야 한다. 심각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자가 보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기구가 구금시설의 상부기관에 직접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소장과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심각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소장과의 최종면담은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대화도 가능하다.

5. 방문 후속조치

방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용자의 구금상황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방문 후에 취하는 조치는 방문만큼이나 중요하다. 방문 후에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가 관계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도 분명하게 감시되어야 한다.

5.1 내부적 후속조치

방문기구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구금시설의 구금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척도를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조사단이 수집한 정보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도록 분석, 조직, 정리되어야만 한다. 논리적으로 분석,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분실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조사단은 방문의 결과에 대하여 표준양식에 따른 내부보고서(internal notes)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록2 참조). 이러한 내부보고서는 방문의 서면증거가 되고 조사단의 공식적인 자료가 된다. 내부보고에서 수집된 정보는 차후방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부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방문한 구금장소와 성격에 대한 일반 정보
- 구금시설에 대한 자료
- 방문조사시 수집한 주요정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차후 방문시 조사되어야 할 사항
방문기구는 아래 기관들의 도움을 얻어 방문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고 완성할 수 있다.
- 구금시설의 상부기관
- 구금시설에 책임을 지는 부처가 아닌 구금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구(예 : 보건복지부)
- 구금시설과 관련된 변호사 및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
- 다른 방문기구의 보고

- 수용자 가족이나 출소자
-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5.2 구금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수용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기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방문기구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률 또는 합의서에는 보고서 제출과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문기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구금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대화에 임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목적과 보고대상에 따라 여러 형태의 보고서가 있을 수 있다. 조사단은 보고와 후속조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방문기구는 매 방문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여러 차례 방문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하나의 포괄적 연례보고서만을 작성하거나 할 수 있다.

5.2.1 방문보고서 작성

방문기구는 구금당국에 방문조사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정보는 서면으로 통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구두에 의한 정보 전달은 방문기구와 관계 기관과의 정기적인 접촉시에만 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한 장소를 한번 방문한 경우 방문보고서는 방문시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과 문제점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장과의 마무리회담에서 다루어진 사항도 다룬다. 방문보고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방문 후 바로 송부되어야 한다. 관계기관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관계기관에게 직접 송부되어야 한다. 이는 관계기관에 공식적인 서면에 의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관계기관과의 대화를 강화시킨다.

방문기구는 모든 개별 방문이 관계기관에 대한 서면보고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때 방문보고서는 발견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단의 평가에 근거해 해당 기관에게 전달될 것이다.

방문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조사단의 구성, 방문일자, 시간
- 방문의 구체적인 목적
- 정보수집방법과 확인방법

구금환경의 설명

보고서는 제4장에서 다룬 다음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주요 관심사항들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 처우
- 보호 수단
- 급여 조건
- 시설내 처우와 활동
- 의료 처우
- 구금시설 직원

구금상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문제의 우선순위 선정시 고려사항

-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강조
-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문제에 대한 강조

조사단원이 목격하지 않은 고문, 학대 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룰 때는 정보를 표현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다’는 ‘주장되었다’ 또는 ‘보고되었다’라는 용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관계기관이 이를 조사하고 대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사단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하에서만 언급될 수 있다는 것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조사단이 접촉한 수용자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해야 한다.

권고

권고가 적절한 권한의 관계기관에 전달되는 것은 중요하다. 방문보고서에서 권고는 개선과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구금시설의 공무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문제의 근본원인이 시설 고위공무원의 권한 밖이라면 이는 다른 당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권고사항 또는 제안된 개선조치는 시간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즉 권고사항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설정해야 한다. 최종기한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5.2.2 전체보고서 작성

방문보고서에 추가하여 또는 그 대신으로 방문기구는 분석보고서나 연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물론 분석보고서와 연간보고서 모두 작성할 수도 있다.

분석보고서(Analytical report)

방문기구는 특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방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방문기구가 방문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주제별 접근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제한된 이슈들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된다.

다수의 구금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분석하는 것은 폭력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분석방법은 구금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원인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권고는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다른 관계인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들은 구금시설이나 입법부, 사법부, 직원교육부서 등 소관부처 이외의 자들일 것이다. 분석보고서는 그 기초가 되는 방문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다.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또한 방문기구는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간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방문기구에 따라 다양하다. 연간보고서는 개별 방문보고서를 취합하여 여러 구금시설에서 밝혀진 사실과 이에 대하여 채택된 권고를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보다 분석적이고 1년에 걸쳐 밝혀진 주요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연간보고서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우선적 주제들에 중점을 두며 적절한 권고를 제안할 수 있다.

OPCAT는 국가예방기구에 명시적으로 연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배포해야 한다. 연간보고서가 감시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방문보고서와 권고사항들도 포함할 것인가는 국가기구가 결정한다.

5.2.3 전체보고서의 배포

전체보고서는 관계기관에만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 연간보고서와 분석보고서는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보고서에 있는 권고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감시기구의 홍보전략에 따라, 보고서 또는 요약된 보고서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차후 OPCAT에 의해 설립될 소원위원회에 어떠한 제약도 없이 비공개로 제출되어야 하며 또한 유럽고문방지위원회, 미주인권위원회, 아프리카의 구금시설과 구금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방지위원회가 국가보고서를 심사할 때, 그리고 고문특별보고관 등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특

히 지역기구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이 될 것이다 (제 2장 4: 조정 참조)

5.3 권고이행에 관한 후속조치

방문보고서 또는 전체보고서를 관계자들에게 제출한 후에는, 이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은 보고서에 대하여 조치할 의무가 있고, 이에는 비판과 제안된 권고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당국은 권고와 권고의 이행 가능한 방법에 대해 방문기구와의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답변과 일반적 반응에 따라 다른 국내방문기구들은 방문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 방문기구는 후속 방문에서 시정을 요청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어떤 방법으로 권고를 이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후 당국이 보고서나 그 권고를 고려하려 하지 않을 경우 조사단은 감시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다른 전략들, 예컨대 의회,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국제기구에 알리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

5.4 모니터링 과정 외의 후속조치

구금시설 방문중 조사단은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관찰하게 된다. 조사단은 법률적·인도적 차원의 원조, 가족과의 연락과 같은 많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방문기구는 이런 경우에 수용자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않도록 표준화된 대응방법을 논의하여 채택해야 한다. 수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수용자를 관리하는 관계당국의 책임이다. 방문기구의 일차적 업무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위해 권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내 방문기구는 국가적으로 특정한 요구와 압박에 부딪혀 감시와 보고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된다. 일부 기구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제공하거나 수용자에게 인도적 지원 그리고 직원과 수용자 사이에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행한다.

일부 국가에서 방문기구의 후속조치는 법률개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OPCAT는 국가적 예방기구는 “현존하는 법률이나 법률 초안에 관한 제안서와 의견을 제출할 (제 19조)”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내 방문기구, 특히 국가인권기구는 “준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진정을 접수할 뿐만 아니라 조사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문기구는 석방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이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7, Training Manual on Human Rights Monitoring*, New York, Geneva, 2001. (Chapter IX: Visits to persons in detention)
 - Giffard, Camile, *The Torture Reporting Handbook - How to document and respond to allegations of torture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Centre, University of Essex, United Kingdom, 2000.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8, Istanbul Protocol,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w York, Geneva, 2001.
 - APT/OSCE-ODIHR, *Monitoring place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for NGOs*, Geneva, 2002
-

점검할 사항

처우

- 고문과 학대
- 격리
- 계구
- 강제력의 사용

보호수단

- 감찰
- 진정절차
- 징벌절차
- 구금기록
- 수용자 분류

급여조건

- 음식
- 조명과 환기
- 개인위생
- 위생시설
- 의류 및 침구
- 과밀수용과 거주시설

시설내 처우와
활동

- 가족과 친구와의 접촉
- 외부세계와의 접촉
- 실외 운동
- 교육
- 여가와 문화활동
- 종교
- 작업

의료처우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 여성과 유아를 위한 특별의료
-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특수의료
- 전염병
- 의료직원

구금시설 직원

- 일반적인 이슈
- 직원교육

제4장

검토해야 할 구금의 측면들

- 1 처우
- 2 보호 수단
- 3 물리적 환경
- 4 시설 내 처우와 활동
- 5 의료 서비스
- 6 구금시설 직원
- 7 경찰에 의한 구금

약어 목록

ACHPR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Adopted by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n 27 June 1981
ACPR	African Charter on Prisoners' Rights - Draft adopted by the Fifth Conference of the Central,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Heads of Correctional Services (CESCA), meeting in Windhoek, Namibia, 4 to 7 September 2001
BPP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3/173 of 9 December 1988
CPT GR2	2nd General Report on the CPT's activities covering the period 1 January to 31 December 1991; CPT/Inf(92)3, 13 April 1992
CPT GR3	3rd General Report on the CPT's activities covering the period 1 January to 31 December 1992; CPT/Inf(93)12, 4 June 1993
CPT GR10	10th General Report on the CPT's activities covering the period 1 January to 31 December 1999; CPT/Inf(2000)13, 18 August 2000
CPT GR11	11th General Report on the CPT's activities covering the period 1 January to 31 December 2000; CPT/Inf(2001)16, 3 September 2001
CPT GR12	12th General Report on the CPT's activities covering the period 1 January to 31 December 2001; CPT/Inf(2002)15, 3 September 2002
EPR	European Prison Rules; Recommendation R(87)3, adopted by the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on 12 February 1987
GC	General Comment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implementation of ICCPR's provisions
ICCP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ICPRT	Inter-American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 - Adopted by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n 28 February 1987
IDRCPDL	Draft Inter-American Declaration Governing the Rights and Care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R(89)12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Education in Prison (adopted by the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on 13 October 1989)
R(98)7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ethic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health care in prison (adopted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8 April 1998)
RIG	Guidelines and Measures for the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Africa (The Robben Island Guidelines), 2002
RPJDL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1990
SMR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pproved by ECOSOC in its resolutions 633C(XXIV) of 31 July 1957 and 2076(LXII) of 13 May 1977

이 장은 방문조사 시 점검해야 할 여러 사항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장의 목표는 구금환경에 대한 국제기준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어떤 점을 조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조사단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영역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과 함께 제시하였다. 매 절 끝부분에 오는 “검토할 사항”은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문기구는 자신이 방문하는 구금시설의 독특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방문기구 고유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 처우

수용자가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구금시설의 책임자들과 직원, 그리고 이들을 감시할 책임을 가진 방문조사단단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이다. 이 기본원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¹⁶⁾

무엇보다도 고문과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처분들은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면 고문이나 학대에 상응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금지, 계구의 사용이나 강제력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들은 반드시 일정한 보장책이 동반되어야 하며, 방문조사단은 이러한 조치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 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처우

- 고문과 학대
- 격리
- 계구
- 강제력의 사용

16) 또한 『구금에 대한 기본원칙』 중 제1원칙과 『Body of Principle』의 제1원칙을 참조하라.

1.1 고문과 학대

국제기준

“구금 혹은 징역상태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BPP)*』 제6원칙

“어느 누구도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7조

“누구든지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벌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미주인권협약*』 제5조, 1978

“어느 누구도 고문 혹은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유럽인권협약*』 제3조, 1950

“모든 개인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받고 법적 지위를 인정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모든 형태의 인간 착취와 굴욕, 특히 노예제도, 노예매매, 고문, 잔혹한,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처벌과 대우는 금지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인권헌장(ACHPR)*』 제5조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

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문방지협약(UNCAT)』 제1조, 1984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란 범죄 수사의 목적을 위해서, 협박의 한 수단으로써, 사사로운 처벌으로써, 예방 조치로써, 형벌로써, 혹은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가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문은 또한 육체적 통증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희생자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용되는 방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문의 이러한 개념은 이 조항에서 언급한 방법들의 사용이나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법적 조치에 고유한, 혹은 오로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문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간 협약(ICPRT)』 제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원수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이들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 『고문방지협약』 제16조

“체벌, 암실 수용 및 잔혹한,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모든 처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로써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MR)』 제31조

청소년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해설

수용자들은 구금 단계의 초기에, 특히 심문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기 쉽다. 방문조사단의 권한이 경찰서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방문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문조사단은 최근에 이러한 시설에서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용자들과 반드시 만나 이전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요구와 신체적 상태가 기록되고 적절한 경우 공식 진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고문은 주의 깊은 절차, 준비와 훈련을 요하므로 방문자들이 다루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의 하나이다. 고문당한 사람들과 면담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일이다.

고문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 더욱 그러하다. 방문자들은 고문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 가장 흔히 쓰이는 고문방법들에 대한 현지 관행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수립된 행정조치들(예 : 일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방문자들은 다음의 사항이 국제기구의 법리상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 구금환경, 그 자체 혹은 다른 요소와 결합된 환경
- 독방수용 (이 장의 “격리” 참고)
- 적절한 의료 조치 거부
- 감각의 박탈

고문의 절대적 금지

고문은 국제법에 의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문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비상사태, 국가안보 그 밖의 어떤 이유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다. 고문과 학대는 국제관습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문과 학대의 형태

고문방지협약의 고문의 정의는 고문을 다음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부과
 - 국가당국에 의해서 혹은 동의나 묵인 하에서
 - 정보의 취득, 처벌 또는 협박 등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

고문은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전기충격, 발바닥 때리기, 고통스런 자세로 매달기, 구타, 강간, 질식, 담뱃불로 지지기, 음식과 수면 및 의사소통의 박탈, 협박, 모의사형 등이다.

성적 학대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력화 시키는 방법이다.

방문조사단은 전통적인 고문의 정의에 맞지 않을 지라도 조사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심리적인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관행의 피해를 입은 수용자는 그러한 처우에 익숙한 나머지 이러한 관행을 분명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고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이 더 큰 해악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진술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행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무시하기
- 수용자들에게 말할 때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 하기
- 결코 수용자들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기

- 수용자들의 방에 갑자기 이유 없이 들어오기
- 수용자들간에 의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 어떤 날은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인하고 다음 날은 그것을 처벌하기 등

수용자 간의 폭력

조사단은 구금시설직원의 보호의무에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료수용자들에게 당한 폭력 행위, 예를 들어, 구타와 부상, 강간, 그 밖의 가학적인 행동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의 폭력은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종종 신고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이것을 “수용자들 자신의 사정”이라고 여기고,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바로 그 수용자들을 적으로 만들기보다 차라리 외면을 하면서 묵인한다.

조사단은 힘없는 수용자들이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조사단은 직원들이 수용자들 사이의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런 방법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 지를 감시해야 한다.

- 수용자들을 분류하여 구분 수용
- 생활구역을 공유하는 수용자들을 신중하게 선택
- 쉽게 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는 청원제도
- 충분한 수의 훈련된 직원
- 수용자들을 훈련요원이나 감독요원으로 이용하는 것 금지
- ‘약자 괴롭힘 금지’ 정책을 명백하고 충분히 설명

고문에 대한 주장 다루기

조사단은 개인면담 도중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접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구금시설에 오기 전에 당한 대우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당연히, 고문이 가해지고 있거나 가해져 온 시설에 있는 수용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교도관에 의한 학대와 같은 개인적인 사건이나 폭동진압이나 징벌과 같은 중요 사건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다. 조사단은 시설의 일반적 환경 또한 고문에 상응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문 또는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 극도로 고통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조사단은 학대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조사단은 고문 주장을 다루는 데에 있어 특별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한 질문으로 어디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지, 혹은 정말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감각을 개발해야 한다. 고문의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상처를 다시 한 번 건드릴 가능성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란 매우 어렵다.

수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게 그 주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방문자가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언급해도 되는지, 또는 그 정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이용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전혀 이용하지 않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이 육체적, 심리적 증거 양 측면에서 접근하는 의학적 조사를 통해 가급적 신속히 주장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학적 증거를 모으는 것과 함께 고문 피해자를 면담하는 법에 관한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라.

- Camille Giffard, *The Torture Reporting Handbook - How to document and respond to allegations of torture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Centre, University of Essex, United Kingdom, 2000, Part II-Documenting allegations, pp. 29-51.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8; *Istanbul Protocol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w York, Geneva, 2001. Chapter IV-General

consideration for interviews.

문제가 된 처우가 고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방문자의 역할이 아니다. 조사단은 진실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리하는 것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그리고 개인을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서 조사할 책임이 있는 당국(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입증의 부담, 즉 적법한 조사를 통해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기관에게 있다.

학대의 주장이 있을 경우 방문자가 수집해야 할 정보

- 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 주장이 접수된 날짜와 장소
- 구금하고 있는 당국
- 학대의 날짜와 장소
- 학대에 대해 책임 있는 당국
- 학대의 상황
- 그 행위의 증인들
- 학대의 상세한 묘사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 동안, 얼마나 자주), 학대가 수용자에게 미친 영향(당시 혹은 이후), 눈에 보이는 자국
- 건강진단서 및 사진과 같은 기타 증거.

조사단에 의료 관계자를 포함할 경우 다음을 문서화 할 수 있다.

- 신체적 증거
- 심리적 증거
- 치료의 필요성

이미 취해졌거나 확인된 후속조치

- 당시 학대사실의 주장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를 원했는가?
 - 그 사건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무응답이나 이에 준하는 답변을 포함)이 있었는가?
 - 진정이 접수된 곳은? 작성자나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 조사단의 개인적 소견
-

1.2 격리

국제기준

“처벌의 수단으로써의 독방수용을 폐지하려는 노력과 그 이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BPTP)』 제7원칙

“수용자를 장기간 독방수용하는 것은 금지행위인 고문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KCCPR)』 제7조 일반논평 n°20/44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징벌 목적이든, 그들의 ‘위험성’이나 ‘문제적 행위’의 결과이든, 형사사건 조사를 위해서건 스스로 원해서건) 독방수용 유사환경에 놓인 수용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개별사건에 필요한 조치와 독방수용형태의 처우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독방수용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독방수용은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독방수용은 가능한 단기여야 한다.

수용자의 요구나 구금시설의 처분에 의해 독방 수용을 하는 경우, 수용자나 교도관이 의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용자의 건강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지체 없이 의사가 호출되는 필수보호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의 결과는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격리가 지속될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하여 관할당국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2차일반보고서』 §56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 선언초안(IDRCPDL)』 제48조를 참조.

해설

조사단은 어떤 이유에서 격리되었든 격리(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차단, 외부세계와의 교통 제한, 또는 차단)처분을 받은 수용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독방수용은 만일 오랫동안 행해지거나 반복된다면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고문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처벌이다. 또한 수용자를 이러한 처우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격리는 예외적이어야 하고 기간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되도록 짧은 기간 동안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금치는 반드시 재심사와 불복신청제도와 같은 일련의 보장 장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조사단은 수용자를 보호할 제도가 충분한 지를 감시해야 한다.

격리는 때로는 보호수단으로써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처우는 수용자가 징벌의 일종으로 격리되는 경우보다는 덜 제한적이어야 한다. 모든 재심사제도는 이러한 수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독방 수용 되어서는 안 된다.

독방수용시 금지사항

- 무기한의 조치
 - 연장 조치
 - 반복적 조치
-

검토할 사항

- 독방 수용이 허용되는 최대기간은 얼마인가?
- 독방 수용된 날짜는?
- 독방 수용을 결정한 자는 누구인가?
- 어떤 이유로 독방수용에 처해지는가?
- 재조사와 불복신청제도가 있는가?

-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전과 마찬가지로 매일 적어도 한 시간씩 실외운동을 하는가?
 -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처우가 적용되는가?
 - 건강검진은 금치 이전에 시행되고, 그 검진은 수용자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금치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그러한 검진을 받는가?
 -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요구하면 의사를 만날 수 있는가?
 - 누가 금치에 처해진 수용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 금치가 소수자집단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증거가 있는가?
-

1.3 계구

국제기준

“수갑, 연쇄,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연쇄나 차꼬는 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계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a)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b) 의료상의 이유로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

(c)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MR)』 제33조

“계구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행정당국이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구는 절대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MR)』 제34조

“전술한 단락에서 승인한 계구 사용의 패턴과 종류는 법과 규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그러한 도구는 절대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40조

“드물지만 신체적 계구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 수용자들은 지속적이고도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계구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제거되어야 하고 계구는 결코 징벌로써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강제력의 사용은 강제력이 적용될 때마다 기록되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2』 §53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5;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

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46조과 『유럽형사시설규칙』 제39 규칙 참조

청소년

“계구와 강제력에 의존하는 것은 이하 제64조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63조

“계구 및 강제력은 기타 모든 통제방법을 다 쓰고도 실패한 예외적인 경우, 법과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들은 모욕감 또는 굴욕감을 야기해서는 안 되며 제한적으로, 가능한 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도구들은 청소년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기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금시설 장의 명령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즉시 의료진 및 그 밖의 관련인사에 자문을 구하고 상급행정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64조

해설

어떤 계구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허용되는 모든 계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결코 징벌로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것들은 반드시 다음의 보호책을 수반해야 한다.

- 수용자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동안 계구를 차고 있어야 한다.
- 계구 또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 이 사실은 구금시설의 장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역약수단의 사용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은 특히 민감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다른 규칙들에 의하면 의사는 의학적 이유에서 특정 조치에 관한 충고를 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논평에 명시되어 있듯이 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용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

리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의사에게 “처벌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된다. (다음 의료처우의 절을 참조)

조사단이 계구를 차고 있는 수용자와 면담을 하는 것은 구금시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조사단의 역할과 통상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검토할 사항

- 어떤 경우에 계구의 사용이 승인되는가?
 -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
 - 장부에 모든 경우가 기록되는가?
 - 이들은 의사와 만난 적이 있었는가?
 -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억제 수단이 부과되었는가?
 - 소수 집단의 경우에 형평에 맞지 않게 계구가 사용되고 있는 증거가 있는가?
-

1.4 강제력의 사용

국제기준

“1. 시설의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또는 수용자의 도주기도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무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이 무력에 의지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정직원은 공격적인 수용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육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3. 직무상 수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4조 (또한 유럽형사시설규칙 제63조를 참조하라)

“법집행 공무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강제력을 써야 한다.” 『법집행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법집행 공무원은 자기 방어, 또는 타인의 사망 내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즉각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의 실행을 막기 위하여, 그러한 위협을 야기하고 법집행공무원의 권한에 저항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도주를 막기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방법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강제력과 화기의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9원칙

“법집행 공무원은 보호나 구금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설내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강제력과 화기의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15원칙

“법집행공무원은 보호나 구금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방어, 또는 타인의 사망 내지 심각한 부상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제9원칙에서 언급한 위험상황을 만든 수용자의 탈주를 막기 위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강제력과 화기의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제16원칙

“교도관은 때에 따라 난폭한 수용자를 통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써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해당 수용자를 학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강제력이 가해진 수용자는 즉시 의사에게 진찰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진찰은 비의무직원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가능하다면 볼 수 없는 곳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수용자의 모든 진술과 의사의 결론을 포함한 진찰결과는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해당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한 모든 경우의 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유렵고문방지위원회, 『제2차 일반 보고서』 §53

청소년

“청소년이 구금되어있는 모든 시설에서 직원은 무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65조

해설

조사단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예외적 대응인지 아니면 일상적 대응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단은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조사단은 강제력의 사용에 대한 지시사항과 제한이 구금시설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수용자들이 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 훈련된 직원이 자신이나 수용자를 해하지 않고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및 억제기술은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일반원칙상 수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만일 직원이 경찰봉과 같은 무기를 소지한다면 이것은 과시적이거나 자극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력과 총기와 관련 된 모든 사건은 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하고 장부에 기록되고 조사받아야 한다.

검토할 사항

- 직원이 무기를 소지하는가?
 - 현지시설 규정에서는 어떤 직원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하는가?
 - 강제력이 사용된 사건의 빈도는? (수용자, 구금시설의 장, 장부, 다른 정보원에 의할 경우)
 - 강제력이 소수 집단에게만 형평에 맞지 않게 사용된 증거가 있는가?
-

참고 문헌

- Amnesty International, *Combating torture : a manual for action*, London, 2003. (Chapter 5.5: Conditions of detention; Discipline and security pp. 127-132.
 - Camille Giffard, *The Torture Reporting handbook, How to document and respond to allegations of torture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Centre, University of Essex, United Kingdom, 2000.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8, Istanbul Protocol,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w York, Geneva, 2001.
 - Penal Reform International, *Making standards work,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good prison practice*. London, 2001, pp.42-51.
 - Andrew Coyle,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ment, Handbook for prison staff*.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2003. 69-81.
 - UN OHCHR, *Human Rights and Prisons -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Prison Officials*, Geneva, 2003. (Section 2: rights to physical and moral integrity, pp.2133)
-

2. 보호 수단

이 절에서는 행형제도가 무난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용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여러 수단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금시설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규율은 규칙과 절차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된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 징벌에는 보호수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용자는 보복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구금시설 내외에 효과적으로 진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독립 감찰기구 역시 수용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금시설이 자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그 운영방식을 감시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수용자들을 범주별로 분류하고, 장부를 기재하고, 구금시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수단

- 장부
- 수용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 감찰
- 징벌절차
- 진정절차
- 수용자의 분류

2.1 구금 기록

국제기준

“1. 다음의 사항은 기록해야 한다.

- (a) 체포사유
- (b) 체포시각, 체포된 자가 구금시설로 옮겨진 시각, 사법기관 혹은 기타 국가기관에 출석한 시각
- (c) 담당 법집행공무원의 신원
- (d) 구금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2. 상기의 기록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나 그의 변호인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징역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12규칙)

“1.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장소에는 항상 페이지 번호를 붙여서 편철한 등록 부를 비치하고 수용되는 각 피구금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a) 피구금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 (b) 수용 이유 및 수용을 결정한 기관
- (c) 수용 및 석방 일시

2. 사전에 등록부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유효한 수용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조)

“1. 모든 사람은 유효한 구금명령 없이는 구금시설에 수용될 수 없다.

2. 구금명령과 입소는 즉시 기록되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7규칙)

“수용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자는 공식적으로 구금시설로 승인된 장소에 수용되어야 하고, 수용자의 이름과 구금시설의 이

름, 이들의 구금에 대한 관할 공무원의 이름이 장부에 기재되어 친척과 친구들을 포함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반논평 20』 para11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서면기록 특히 구금된 날짜와 시각, 구금장소, 구금사유가 포함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기록을 모든 구금시설에 비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벤 아일랜드 가이드라인』 제30조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18조 참조.

해설

공식적인 구금 기록은 보호수단으로서 필수적이다. 또한 당국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수용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구금기록이 방문조사단에게 중요한 이유는 수용자들의 시설 출입소, 강제력의 사용, 징벌처분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수용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 자유박탈의 법적 근거
- 체포시각
- 체포된 자가 구금시설에 도착한 시각
- 조사나 법원 심리를 위해 구금시설을 출입한 시각
- 구금시설을 출입했을 때의 신체적 상태
- 수용자가 판사나 그 밖의 기관에 처음 출석한 시각
- 관련 법률 적용의 책임이 있는 직원의 신원
- 수용자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정확한 설명(모든 수용자의 소재탐색이 신속하게 파악되어야 함)

또한 사고(事故)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수용자가 실종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방문조사의 명시적인 목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후속 탐색이 중요하다. 따라서 후속 탐색에는 다른 구금시설이나 퇴소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할 것이다. 이 입증작업은 이송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된 다른 구금시설에 대한 후속방문이나 수용자의 가족 그리고 출소한 수용자와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검토할 사항

- 출입기록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가?
 -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가?
 - 장부에 기재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 수용자가 법적으로 석방되는 날짜가 기재된 문서가 있는가?
-

2.2 수용자에 대한 고지

국제기준

“모든 사람은 체포될 당시 그리고 구금 혹은 징역이 진행될 당시 혹은 그 이후라도 신속히 그의 체포, 구금 혹은 징역형을 관할하는 기구로부터 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에 대한 정보 및 설명을 각각 전달받아야 한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13규칙)

“1. 모든 수용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주의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칙, 규율을 위한 의무사항, 정보를 구하고 불복을 신청하는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수용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5조 (유사 규정 : 『유럽 형사시설규칙』 제41규칙)]

“당사국은 모든 수용자들이 구금사유를 즉시 통보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벤 아일랜드 가이드라인』, 제25조)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9 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53조 참고.

해설

조사단은 수용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받았는지, 이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는지, 또한 수용자가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수용자들이 처음 구금시설에 도착했을 때는 혼란스럽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다.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조사단은 수용자의 가족이 수용자가 수용된 구금시설에 관한 정보, 특히 방문, 서신교환, 소유물(property)과 전화사용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2

검토할 사항

-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에 수용될 때 어떤 정보를 제공받는가?
 - 어떤 형태로 제공받는가?
 -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가?(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가?) 문맹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 내부규정이 눈에 띄는 곳에 있고 항상 쉽게 참고할 수 있는가?
 - 내부규정의 내용이 수용자 처우 기준에 적합한가?
 - 내부규정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

2.3 감찰

국제기준

“1. 구금시설에서 관련 법률과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구금 혹은 징역을 위한 시설의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국가기구와는 별도의 권한 있는 국가기구에 의해 임명된 자격과 경험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구금장소를 방문하도록 한다.

2.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조건 하에서 동 원칙의 제1항에 따라 구금 혹은 징역의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완전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29규칙

“행형시설과 업무는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조사관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임무는 특히 이러한 시설이 현행 법령에 준거하여 형벌집행 및 행형과 교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5조

“효과적인 진정과 감찰 절차는 구금시설 내의 학대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보호장치이다. 수용자들은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적절한 당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을 포함해서, 구금시설제도의 내부와 외부에서 진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수용자로부터 진정을 들을 권한이 있고(필요하다면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시설을 감찰할 권한이 있는(방문위원회나 감독판사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모든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조사단은 무엇보다도 구금시설당국과 특정수용자 또는 당국과 일반수용자들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2』 §54)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6과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9조와 제10조 제1항 참조.

해설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 외부적으로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감찰제도가 필요하다. 방문기구도 이러한 제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수용자들은 조사단과 자유롭고도 비밀이 보장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기구는 이러한 기구의 소견과 권고에 구금시설의 반응 정도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2

검토할 사항

- 내부 감찰메커니즘이 있는가?
 - 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감찰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가?
 - 수용자들은 조사단과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접촉할 수 있는가?
 - 감찰메커니즘이 진정을 받고 조사할 수 있는가?
 - 누가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는가? 보고서는 공개되는가?
 - 감찰의 결과는 무엇인가?
-

2.4 징벌절차

국제기준

“1. 구금 혹은 징역 기간 중 징벌과 관련하여, 수용자 혹은 수형자에 대한 징벌부과 형태, 집행되는 징벌에 대한 설명 및 기간, 그리고 이러한 징벌을 부과하는 관할기구 등은 법률 혹은 적법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정식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2. 수용자 혹은 수형자는 징벌이 부과되기 이전에 청문권을 가진다. 또한 보다 상급 기구에 재심사를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징역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30 규칙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7조

“다음 각호의 각 항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 (b)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 (c) 징벌부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9조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1조(제 28조, 제30조 참고)

“분명한 징벌 절차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수용자

와 구급시설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 분야에 애매한 부분이 있게 되면 비공식적인 (또한 통제불가한) 제도가 생겨날 위험이 있다. 징벌절차는 수용자에게 규율위반의 의혹에 대한 청문의 권리와 부과된 제재에 대해 상급당국에 불복신청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공식 징벌절차 이외에도, 수용자가 (시설내의 “질서”를 위하는 등의) 규율과 관련된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비자발적으로 격리될 수 있는 다른 절차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효과적인 보호책을 동반해야 한다. 수용자는 보안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처분이 내려지게 된 이유를 통보 받고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적절한 당국 앞에서 그 처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2』 §55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3, A-6, A-12,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47조 para1과 제49조 참조.

해설

방문조사단은 징벌체계가 직원과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명확한 규칙체계로서 공식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의 목록이 공개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방문기구는 무엇이 규율위반을 구성하는지,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 징벌을 부과하는 직급의 수준은 무엇인지, 제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불복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징벌규칙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방문조사단은 규칙이 전달되고 게시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조사단은 징벌규칙의 성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징벌규칙은 조직의 질서와 원활한 운영과 인간의 존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절차의 성격 또한 조사와 관련이 있다. 진정절차는 가능한 한 적법절차의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

조사단은 징벌이 규율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거나, 자의적이거나, 좌절과 고통의 정당화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사단은 혹시 징벌이 수용자들의 비공식적 조직에 맡겨져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금지된다.

검토할 사항

- 어떤 행동과 행위가 징벌을 받는가?
 - 누가 징벌을 결정하며, 무엇(서면보고 또는 구두보고)에 기초하여 결정하는가?
 - 징벌을 받는 수용자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가?
 - 징벌을 받는 수용자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고지받는가?
 - 부과된 징벌의 성격 및 기간은 무엇인가?
 - 불복신청 메커니즘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 불복신청의 결과가 수용자에게 유리하게 나온 적이 있는가?
 - 일정 기간 동안 전체 수용자 중 몇 명이 처벌을 받았는가?
 - 징벌 혹은 특정한 형태의 처벌이 소수 집단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된 증거가 있는가?
 - 수용자들이 징벌집행에 가담했던 증거가 있는가?
-

2.5 진정절차

국제기준

“1. 수용자 혹은 수형자 또는 그의 변호인은 수용자 혹은 수형자에 대한 대우, 특히 고문 혹은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대하여 구금시설의 행정을 관할하는 국가기구나 상급기구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의나 구제권한을 위임 받은 적절한 기구에 청원 혹은 진정할 수 있다.

2. 수용자 혹은 수형자 혹은 그의 변호인이 동 원칙 제1항에 지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수용자 혹은 수형자의 가족 혹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진정인이 요청할 경우 이러한 청원 혹은 진정에 대한 사항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청원 혹은 진정은 신속히 처리되고 지체없이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청원 혹은 진정이 거절 혹은 각하 되었거나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진정인은 사법기구 혹은 기타 국가기구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동 원칙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 또는 다른 진정인은 이러한 청원 혹은 진정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33규칙

“1.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평일에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기타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4.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그것이 명백하게 사소한 것이거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닌 한 즉시 처리되고 지체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6조

또한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7-a), b) 와 c),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50조제1항과 제54조 참조.

해설

조사단은 수용자가 구금생활의 측면에 관해 토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진정절차의 형식과 내용은 진정절차의 부재는 수용자에게 부여된 권리 존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몇 개의 진정단계가 있는가? 첫 번째 단계는 구금시설의 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일 수 있다. 수용자가 상위기관에 검열이 없고 비밀이 보장되는 진정을 할 수 있는가?

조사단은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제도로부터 독립된 외부당국으로의 검열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조사단은 진정제도를 감시해야 한다.

- 절차는 공정성과 정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 수용자의 접근가능성은 어떠한가?
- 비밀이 보장되는가?
- 절차는 투명한가?
- 진정을 담당하는 이들은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행동하는가?
- 제도는 수용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가? (유연성)

조사기구가 진정을 받고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진정메커니즘은 조사제도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감찰 부분 참고)

검토할 사항

- 수용자들은 어떤 경로로 진정을 할 수 있는가?
- 진정절차의 성격은 행정적인가, 사법적인가?
- 진정절차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가?
- 진정절차는 (외국인과 문맹자 혹은 문자해독능력이 제한된 자를 포함하여) 모든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수용자를 대신해서 외부인이 구금시설당국에 진정을 할 수 있는가?
- 수용자를 대신해서 외부인이 감독관청에 진정을 할 수 있는가?
- 진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 지난 6개월 간 몇 건의 진정이 제기되었는가?(시설 전체 수용자의 평균 인원수와 비교)
- 현재 진정패턴의 성격은 어떠한가?
- 진정에 대한 가장 통상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 진정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난 진정은 몇 건인가?
- 진정을 한 것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2.6 수용자의 분류

국제기준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미결수용자로서 그들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처우를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제2항

“제10조, 2(a)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미결수용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제14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듯 무죄로 추정받는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21』 제9항.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할당된 시설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b)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조

“1. 수용자에게 시설이나 처우를 달리하기 위해서(미결수, 기결수, 초범, 상습범, 단기복역, 장기복역과 같은) 수용자의 법적 상황, 처우에 있어서 특별요구사항, 의료진료의 필요성, 성별과 나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

져야 한다.

2. 남자와 여자는 처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직적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하더라도 원칙상 분리 수용되어야 한다.

3. 원칙상 미결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함께 수용되는 것에 동의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 활동에 기결수용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결수용자와 분리되어 수용되어야 한다.

4. 청소년은 가능한 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되고 나이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한 환경하에 구금되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1규칙

“원칙적으로 여성수용자는 같은 시설내에서 수용된 남자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부부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거나 구금시설 내에서 일정 수준에서 남녀의 접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수용자가 참여하기를 동의하고, 이들이 신중하게 선택되고, 적절히 감독받는다면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상기의 진보적인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10』 §2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5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2규칙과 제13규칙,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B-1-b),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16조 참조.

청소년

“제10조 단락3에 따라 청소년 범죄자는 구금환경에 관한 한 성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의 나이와 법적 지위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20』 단락13

“모든 구금시설에서 청소년수용자는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어른과 분리되어야 한다. 통제된 상황 하에서 청소년수용자는 해당 소년수용자에게 유익하다고 보이는 특별프로그램에 신중하게 선택된 어른수용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29규칙

해설

수용자의 분리수용원칙은 다양한 범주에 따르는 특정한 욕구와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수용자는 다음의 원칙에 의해서 분리되어야 한다.

수용자는 통상적으로 다음에 따라 분리된다.

- 성별과 나이: 남자는 여자와, 미성년은 어른들로부터 분리
- 사법적 혹은 법적 상태: 미결수와 기결수

방문기구는 안전과 필요성, 특별한 욕구의 관점에서 구금환경을 검토해야 한다. 분리는 객관적으로 수용자의 위험성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수용자는 실재상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분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수용자는 인종, 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등의 차이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안전상 위협을 받기 때문에 분리될 필요가 있다. 방문기구는 수용자 분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분리가 행해졌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여자와 소년은 구금시설인원의 소수에 불과하므로 그들에게 독립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들은 무죄추정을 받는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기결수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고, 외부세계와의 접촉도 더 부족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수용자가 HIV 양성반응자라는 이유로 격리하는 것은 의학적 정당성이 없다.

방문기구는 장애인과 노인수용자가 수용인구의 대다수인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장소에 수용됨으로써 그들의 특별한 요구가 충족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방문기구는 이송 중 수용자의 보호를 잊어서는 안 된다.

미성년수용자들은 그들의 욕구에 맞춘 구조와 환경에 수용되어야 한다.

검토할 사항

- 청소년들은 하루 내내 성인수용자들과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가?

다양한 분류의 수용자들이 수용되는 구금시설에서는,

- 여성수용자들은 24시간 내내 남성수용자들과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가?
- 여성수용자들은 대부분 여성 직원들의 감독 하에 있는가?
- 취약한 수용자집단에게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리된 거실이 주어지고 있는가?

혼거실이 있는 곳에서는

- 수용거실을 누가 배치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가?
 - 수용자는 거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가?
 - 만일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
 - 시설직원들은 동성수용자로부터 당할지 모르는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의 위험을 어떻게 예방하고 취급하는가?
 - 소수집단이 실제 보안상의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분리되는 증거가 있는가?
-

참고 문헌

- PRI, Making Standards work, London 2001. (Section II Due process and complaints, pp.29-54; Section VIII, Inspections, pp.167-174)
 - UN HCHR, Human Rights and Prisons, Geneva 2003 (Section 5 Making prisons safe places, pp.72-75)
 - Andrew Coyle,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2003. (Chapter 6: Disciplinary procedures and punishments, pp.75-82; Chapter 9 Requests and complaints pp.105-110, Chapter 10: Inspection procedures, pp.111-116)
 - AI, Combating torture, London 2003. (Chapter 5 Conditions of detention, pp.133-143)
-

3. 물리적 환경

방문조사단은 수용자에 대한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

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당국은 그 개인의 필수불가결한 욕구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진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징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는 스스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구금 환경으로 처벌을 가증시킬 권한은 없다.

구금장소의 적절한 생활환경은 수용자의 인간 존엄성 보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공간, 음식 및 위생은 수용자의 존중감과 복리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조사단은 구금시설의 구조적인 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전원공급, 급수시설, 쓰레기처리 및 청소는 모두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다.

조사단은 수용자의 생활환경이 구금시설직원의 작업환경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구금환경에서 과밀수용은 구금의 모든 측면과 시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과밀정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또는 다른 부정적 요소들과 결합하였을 때 과밀수용은 심지어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가 될 수도 있다.

물리적 환경

- 음식
 - 조명과 환기
 - 개인위생
 - 화장실
 - 의류와 침구
 - 과일수용과 거소
-

3.1 음식

국제기준

“1.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2.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0규칙

“1.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a) 식량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6조

“1. 보건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구금시설당국은 수용자에게 알맞게 조리 및 배식되고 양적, 질적인 면에서 영양 기준과 위생 기준에 부합하고, 나이·건강·작업종류를 고려하고 가능한 종교적, 문화적 요구에 맞는 식사를 정상적인 시간에 제공해야 한다.

2. 음료수는 모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5규칙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1,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32조 참조.

청소년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식사감량 및 가족과의 교통에 대한 제한이나 거부는 금지되어야 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67원칙

해설

방문조사단은 수용자의 식사가 건강을 유지하고 불충분한 영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양적, 질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지 정기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은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보충할 수 있고, 가족들이 반드시 보충해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방문기구는 구금시설이 외부의 지원이 없는 수용자들의 상황, 특히 수용자 개인 신상과 이들의 특별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교도소의 노력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조사단은 식사가 제공되는 시간,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 및 급식방법과 같이 수용자의 위생과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검토할 사항

- 식사의 양, 질 및 다양성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식단을 정하는가? 의료진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 매년 급식예산은 어떠한가? (각 수용자에게 하루에 할당된 금액은 얼마인가?)
- 식사시간은 언제인가?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이 적당한가?
- 배식 방법은 적절한가? 급식방식이나 식당 당번의 할당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차별이 있는가?
- 수용자들은 식사시간이 아니어도 음식과 음료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 어떤 종류의 물이 공급되는가? 물이 깨끗하고 일 년 내내 공급되는가?
- 환자, 노인과 모자를 위한 특별식이 있는가?

- 종교적 이유로 인한 식사관습은 존중되는가?
 - 음식은 수용자의 민족적 구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 구금 시설 내에 수용자가 음식을 살 수 있는 매점이 있는가? 또 수용자는 어떤 조건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가? 어떤 물품을 구비해놓을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 가족이 가져온 음식에 대한 규정과 관행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음식이 조리되는 주방의 환경은 어떠한가?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가?
-

3.2 조명과 환기

국제기준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 통풍설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b) 인공 조명은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않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1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6규칙 참조)

“1.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c) 시설의 위생 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6조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금속 덧문, 얇은 널빤지 혹은 금속판 등의 장치가 수용거실창에 고정되어 종종 자연광선과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특히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특정 수용자에 있어서 공모의 위험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당국은 해당수용자에 대해 특정 보안조치가 정말로 정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수용자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용자로부터 자연광선과 신선한 공기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신선한 공기는 모든 수용자가 누려야 하는 생명유지의 기본 요소이다. 더욱이 자연광선과 신선한 공기가 없다면 질병의 전염 특히 결핵을 유발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교정시설내의 품위 있는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며 많은 나라에서 재원의 부족으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수용거실의 창문을 막는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절한 디자인의 보안 장치를 설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관계자 전원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11』, §30*

해설

조사단은 수용자가 자연광선, 신선한 공기 및 적정 온도에서 생활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수용자와 시설직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방문자는 환기시설을 거주 공간의 크기 및 점유율의 견지에서 고려해야 한다. 창문에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통풍구를 열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는 거실 내에서 스스로 조명을 끄고 켤 수 있어야 한다.

구금시설 내 일반수용거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은 징벌실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검토할 사항

- 거실 내 환기는 적당한가?
 - 거실 내 온도는 적당한가?
 - 창문 크기는 어떠한가? 열 수 있는가?
 - 수용자는 스스로 조명, 환기 및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가?
 - 난방은 어떻게 공급되며 난방시스템은 안전한가?
 - 조명은 책을 읽기에 충분히 밝은가?
-

3.3 위생 시설

국제기준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2조 (『유럽 형사시설규칙』 제17규칙 참고)

“적절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적인 환경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일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수용자가 자신의 거실에 놓인 양동이에 배변하는 방법(이것은 그 후에 정해진 시간에 비워진다)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다. 화장실 시설이 거실 내에 있거나 (따로 화장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더 좋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용자가 불필요한 지체 없이 항상 (밤에도) 거실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2』 §49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31조 참고)

해설

조사단은 화장실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사생활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위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들과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합리한 제한은 없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방문자들은 변기가 거실 내에 있을 때, 벽이나 칸막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을 내릴 수 있는 변기가 없는 곳에서는 방문자들은 얼마나 자주 변기통이 비워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화장실이 거주시설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문자는 구금당국이 화장실 시설에 대해 적당한 수준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검토할 사항

- 수용자 수 대비 화장실의 비율은 얼마이며 최소기준에 부합하는가?
 - 모든 수용자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적절한 수준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 구금시설 내부에 화장실이 없을 경우:
 - 사람들은 실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 밖에서 문을 잠그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밤에 생리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교도관에게 요청하는가?
 - 뚜껑이 달린 오물통을 이용하는가?
 - 화장실 설비는 얼마나 청결하고 위생적인가? 설비가 청결하고 잘 작동되기 위한 규정은 무엇인가?
 - 소수집단이 화장실설비를 사용하는 데에 비합리적 차별을 받는 증거가 있는가?
-

3.4 개인 위생

국제기준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3조 (유사 규정 :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8조)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5조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6조

“수용자는 샤워시설이나 목욕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거실 내에 수도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2』 §49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위생적 필요는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위생 및 세면시설, 피가 묻은 용품을 처분할 안전한 설비, 또한 생리대와 탐폰과 같은 위생용품의 제공은 특히 중요하다. 상기의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굴욕적인 대우가 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10』 §31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1과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31조 참고)

해설

신체적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 및 타인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이다. 또 개인위생은 존중되어야 하는 종교적 관습과 관련될 수 있다. 샤워 및 목욕시설 뿐 아니라 적당한 위생설비는 수용자들과 시설직원 사이의 질병전염 가능성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것은 수용자가 과밀수용의 상태에서 장기간 수용되는 경우 특히 더 중요하다.

개인위생 및 구금시설 내의 위생은 또한 수용자에 대한 구금당국의 처우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 강제로 수용되는 것은 모욕적이며 굴욕적이다.

구금당국은 신체적 위생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샤워를 해야 하는 등 설비의 구조가 수용자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수용자에게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생리용품을 그들의 정서를 고려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아를 동반한 여성 수용자에게는 유아에게 적합한 용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샤워 횟수는 기후와 수용자들의 활동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검토할 사항

- 수용자는 항상 씻을 물을 공급받는가?
- 작업을 하는 자 및 작업을 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하는가?
- 목욕 시설은 충분한가?
- 목욕시설의 수리 상태 및 청결 상태는 어떠한가?
- 당국은 어떠한 위생 용품을 지급하고 얼마나 자주 지급하는가?
-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용품이 제공되는가?
- 소수집단이 목욕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비합리적 차별을

받는 증거가 있는가?

- (필수품과 세탁시설의 이용 면에서) 생리중인 여성의 필요가 충족되는가?
-

3.5 의류와 침구

국제기준

“1.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3.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7조 (또한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2조 참고)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8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제공해야 하며, 침구는 청결하고 잘 정돈된 상태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9조

“모든 수용자에게는 개별 침대와 개별적이고 적절한 침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침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 24 원칙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1, B-1-e) 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31조 참고)

해설

방문조사단은 비품을 확인하고 시설직원과 수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용자들이 기후에 맞고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의복을 입는 지 확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징벌체제의 일부로써 모욕감을 주는 의복의 사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수용자에게 개성을 허용하는 자기 의복이나 사복을 입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수용자들은 세탁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피부에 직접 닿는 내의를 포함한 모든 의복을 공동으로 또는 수용자 자신이 정기적으로 세탁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의 개별 침대와 침구를 가져야 한다. 침대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순번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밀수용이 이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면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트는 정기적으로 교환되어야 한다.

3

검토할 사항

- 수용자들은 어떤 종류의 의복을 입는가?
- 신발과 의류가 기후와 계절에 맞는가?
- 작업을 하는 수용자들은 적당한 의복을 입는가?
- 수용자들은 세탁시설 및 건조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 각 수용자는 개별 침대와 침구를 사용하는가?
- 침구는 얼마나 자주 세탁되는가? 의류와 침구의 재고는 충분한가?
- 의류와 침구의 수선상태는 좋은가?
- 수용자는 법원심리에 재판받을 때 자신의 의복을 입는가?
- 의복과 침구는 공평하고 차별 없이 배급되는가?

3.6 과밀수용과 거주시설

국제기준

“1. 개별침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마다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이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조

“과밀수용은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정원 이상의 수용자를 수용하게 된다면 시설 내의 모든 서비스와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설 내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시설이나 특정 공간의 인원과잉의 정도가 심해지면 물리적 견지에서 볼 때 그 자체만으로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2*』 §46

“유럽 전역의 계속된 구금시설의 과밀수용현상은 구금시설제도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구금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과밀수용의 악영향은 이미 이전의 일반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대상이 유럽대륙 전체에 미침에 따라서 위원회는 높은 감금 비율과 그 결과 구금시설의 극심한 과밀수용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가둔다는 사실은 높은 범죄율로써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않는다. 법집행기구와 사법부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시각에 일부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구금시설의 시설확충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이 해결책

이 될 수는 없다. 대신 비구금형과 구속상태에서의 재판에 관한 현행법과 실무관행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럽이사회 각료회의 권고 N°R(99)22에서 지지하고 있는 구금시설 인원과잉과 구금시설 인구팽창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이 중요한 문건에 나타난 원칙들이 회원국에 의해 사실상 적용될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 유럽이사회가 이 권고의 이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11』, §28*

3

“1.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수용거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야간에 독거실에 수용되어야 한다.

2. 수용거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어울리기에 적합한 수용자들이 함께 수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금시설의 성격에 맞는 야간감독이 있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14조*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방문하는 나라 중 상당수가, 특히 중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수용자숙사는 수면과 생활을 위한 시설, 화장실설비와 같이 수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 설치된 대형 공동거실에 수용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폐쇄된 구금시설 내에서의 이와 같은 숙소구조 원칙에 반대하며, 종종 있는 경우이지만 문제된 공동거실이 극도로 과밀하고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더욱 강력한 이의를 표명하고자 한다.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로 인해 특정 국가에서 독거실보다 수용자의 혼거수용을 선호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많은 수용자들이 공동거실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야하는 것의 이점은 거의 없으며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대형 공동거실은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가능함을 암시한다. 더욱이 이 경우 위협과 폭력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수용구조는 범죄자 문화가 발전하는 것을 북돋우는 경향이 있고 범죄단체의 결합을 쉽게 유지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원의 적절한 통제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특히 소요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강제력을 동반한 외부 개입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수용구조에서는 개인의 위험성과 필요에 따라 각 수용자를 적절히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모든 문제들은 수용자의 수가 합리적인 수용 수준을 넘어설 때 악화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세숫대야나 세면대 및 불충분한 환기시설 등 일상시설의 과부족 상태는 수용자들을 비참한 상태로 이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대형 공동거실에서 소규모 거실의 변경은 수용자가 하루 중 충분한 시간을 거실을 벗어나 다양한 성격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11』 §29*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장소는 항상 청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물품을 지급받아야 한다.” *『유럽각료회의 권고 99』*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1과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11조제1항 과제2항 및 제31조 참조.

해설

많은 상황에서 구금시설 내의 과밀수용은 큰 문제이고 처우, 건강, 보안과 갇힌 사람의 측면에서 심각한 이차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은 수용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최소의 바닥공간이나 공간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은 7m² 이상 될 것을 권고한다. 혼거실의 경우 2인실은 10m², 5인실은 21m², 7인실은 35m², 10인실은 60m² 정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단은 구금시설 내부의 다양한 시설의 공식적 최대수용능력과 그것이 산정되는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그 기준은 통상적으로 시설의 평당면적과

그 수용인원수 사이의 관계이다. 그러나 방문메커니즘은 수학적 공식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그 공간에서 24시간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구금시설의 독특한 디자인 등 그 밖에도 참작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개개의 수용자는 적어도 개인침대를 가져야 한다.

조사단은 과잉수용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기관에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달해야 한다. 환경개선을 위한 권고는 상황에 달려있다. 일정 구금시설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공간이 과밀상태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조될 수 있겠지만, 방문기구는 보다 법적 또는 사법제도의 개혁과 구금 대체수단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방문기구는 구금시설을 더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거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적 기준은 공동거실보다 독거실을 권고한다.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는 수용자들은 비율상 적절한 크기의 공동거실에 수용되는 것을 선호한다. 공동거실은 함께 생활하는 이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수에 맞게 제한되어야 하며 수용자들 간의 학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함께 거거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단은 수용거실의 청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검토할 사항

- 숙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당한가?
 - 한 사람당 몇 m^2 가 제공되는가?
 - 수용자들이 자신의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즉, 24시간 동안 몇 시간을 감금되어 있는가?
 - 장소가 폐쇄되었을 때 환기시설과 공기의 유입양은?
 - 계획된 구금의 기간은?
- 모든 수용자가 개별 침대를 갖는가?
- 숙소는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청소도구도 갖추고 있는가?
- 공동거실에 수용되는 수용자들은 어떻게 구성되며 수용자

에게 거실을 할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공동거실의 공간은 수용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며 차별 없이 배정되고 있는가?
 - 과밀수용의 경우, 독거실 또는 공동거실 밖에 사용되지 않은 공간이 있으며 개조될 수 있는가?
-
-

참고 문헌

- PRI, Making standard work, London 2001. (Section III Physical conditions - Basic necessities, pp.55-68.)
 - UN HCHR, Human Rights and Prisons, Geneva 2003. (Section 3: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pp.34-45.)
 - AI, Combating torture, London 2003. (Chapter 5 Conditions of detention, pp. 120-122.)
-

4. 시설 내 처우와 활동

구금당국의 책임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당국은 수용자 개인의 발달을 장려하고 수용자가 퇴소 후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수용자와 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가족방문, 교육, 직업훈련, 작업, 여가활동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선처가 아니라 구금당한 모든 자들의 권리이다.

시민사회와 (보통)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방문조사단의 관찰, 권고, 그리고 관련단체의 실질적인 후원도 구금당국이 이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

심문과정에서의 구금, 미결수용, 그리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 구속을 받는 자들의 육체적·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수용거실 밖에서 다양한 성격의 목적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방문기구는 다양하고 적절한 시설 내 처우를 구금당국의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문자들은 가족방문, 교육에의 접근, 직업훈련, 그리고 작업(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을 위한 적절한 제도가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금시설에서 제공되는 활동이 외부세계와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이나 작업이 외부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인지, 구금시설 안의 교육수준이 담장 밖의 세계와 동등한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설내 처우와 활동

-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 외부세계와의 교통
 - 교육
 - 실외운동
 - 여가활동
 - 종교
 - 작업
-

4.1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국제기준

“제16원칙 제4항, 제18원칙 제3항의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호 혹은 구금된 자와 외부세계, 특히 가족 혹은 변호인과의 연락은 일주일 이상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15규칙

“보호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그의 가족으로부터의 방문 및 서신교환의 권리가 있으며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 및 적법한 규칙으로 규정된 경우 상당한 조건과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19규칙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37조

“미결수용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관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2조

“피구금자에게 외부세계와 상당한 정도로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수용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지도원칙은 외부교통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부교통의 제한은 성질상 명백한 보안상의 이유나 자원상의 문제에 전적으로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구금자의 가족(정기적 방문이 비실현적인 경우)의 방문과 전화통화에 대한 규칙의 적용에는 일정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수용자에게는 방문시간이 누적되도록 하거나, 가족과의 전화통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2」 §51*

“회원국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이 (중략) 가족구성원들을 접견하고 서신을 교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로벤 아일랜드 가이드라인』 제31조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8-b), B-1-f), B-3-b)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36조 1 내지 2 단락 그리고 제38조 참조.

청소년

“청소년은 가족, 친구 그리고 기타 개인 또는 명망이 있는 외부기관의 대표자와 교통하고, 자신의 집이나 가족을 방문하고, 교육 및 직업 또는 기타 다른 중요한 일을 이유로 구금시설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59규칙

“청소년 범죄자들은 교화와 갱생의 목적을 가지고 ... 친척들과의 교통과 같은 구금조건에 관해서 그들의 나이와 법적지위에 적절한 처우를 해야 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일반논평 21』, 13단락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39조 참조.)

해설

방문조사단은 가족접견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언젠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이들이 가족 및 친구와 가능한 많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허용되고 장려된다면, 석방 후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방문자들은 보안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가족 및 친구와의 교통은 일부 수용자들을 위한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수용자들의 권리여야 한다. 방문이나 교통권의 박탈이 정벌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색과 신체수색은 예의를 갖추고 요령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구성원과 친구들의 권리 또한 조사단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접견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조사단은 접견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감시해야 한다. 구금당국이 수용자와 그 가족에게 보여주는 존중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수용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 특별장소에서의 보다 많은 친밀함을 허용하는 사적인 또는 가족 간의 접견은 장려되어야 한다. 이는 배우자와의 친밀한(성적인) 접촉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가족의 정기적인 접견을 위해서 수용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구금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조사단은 전화사용을 위한 규정이 적절한지(특히 외국인수용자에 대해) 그리고 서신이 파손되지 않고 시간에 맞게 전달되는지를 수용자들에게 확인해야 한다. 방문기구는 어떤 형태의 검열과 감시제도가 있으며, 이것이 특정 개인에 의한 잠재적 위협성과 비례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외국인수용자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방문기구는 가족 및 친구와의 교통, 석방 및 본국으로의 귀환을 준비함에 있어 이들이 부딪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방문조사단은 청소년과 여성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의 취약한 지위는 특히 사회복귀를 위해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은 많은 문화권에서 육아에 대한 일차적 책임

을 지며 어머니의 구금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조사단은 청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가족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 가족은 보통 수용자 방문을 위해 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년구금시설과 여성구금시설은 그 수가 적어 수용자가족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조사단은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가족과 연락이 끊긴 수용자들이 다시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금시설은 국내적십자사나 통하거나 직접 국제적십자위원회 중앙추적기구(ICRC Central Tracing Agency)와 직간접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4

검토할 사항

접견

- 얼마나 자주 외부인의 방문이 허용되는가?
- 접견시간은 얼마인가?
- 특정 부류의 수용자에 대한 접견제한이 있는가?
- 있다면, 제한이 허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가족들은 구금시설에 어떠한 방식으로 출입하게 되는가?
- 수용된 가족구성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방문하기 위해 수용자가족에게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 방문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규정이 있는가?
- 구금시설이나 외부기관이 가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건물을 제공하는지?
- 방문의 물질적 조건을 어떠한가?
- 방문시 감독의 수준은 어떠한가?
- 외부방문이 없는 수용자에게 구금시설이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는가?
-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가족과의 교통을 위해 (특히 전화통

화에 관해)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서신교환

- 개인서신이 검열되는가?
- 그렇다면, 검열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 사실이 구금시설직원과 수용자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 소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는가?

전화

- 수용자가 전화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 얼마나 자주인가? 요금체계는 어떤 것인가?
 - 접견, 서신교환, 전화사용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배분되는가?
-

4.2 외부세계와의 교통

국제기준

“1.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는 그의 변호인과 연락하고 조력받을 권리를 갖는다.

2.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는 그의 변호인과 상담을 위한 적절한 시간 및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3.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가 그의 변호인과 신속히 그리고 사전검열 없이 완전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접견, 상담 및 연락을 할 권리는, 법률이나 적법한 규칙에 따른 안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법기관 혹은 기타 국가기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제외하고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4.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와 그의 변호인과의 접견은 법집행 공무원의 감시 하에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들을 수는 없다.”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18규칙 (또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9조 참고)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읽고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9조

청소년

“청소년이 외부세계와 적절히 교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처우의 핵심적 부분이자 청소년의 사회복지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59조

외국인

“1. 외국인 수용자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대표와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해당 국가에 없는 나라의 수용자나 난민, 무국적자는 본인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국가의 외교관이나 국내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8조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b)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은 자국의 영사관할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체포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있는 자가 영사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부조항에 따르는 권리에 대해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c) 영사 직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국 국민을 방문, 면담, 교신하고 그의 법적 대리를 주선할 권리를 가진다. 영사 직원은 판결에 따라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다만,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민을 대신하여 영사 직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당사자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영사직원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야 한다.

동조 1항에 언급된 권리는 해당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동 법령은 본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해설

방문조사단은 수용자들이 허가된 사람과 접촉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수용자와 이야기할 수 있다. 비밀이 보장되고 방해가 없는 변호인접견은 모든 수용자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수용자들은 또한 자신이 선택한 종교의 대표들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 부분 참고)

외국인수용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외교사절과 연락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해당 외교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을 대리하거나 보호하는 국가나 기구와 연락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 만약 외국인이 자국의 외교사절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 난민의 지위를 구하는 자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대표로부터 방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외부세계와의 교통이란 말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문기구들은 수용자들이, 특히 장기간 수용되어있는 자들이 다양한 언론매체, 즉 신문, 잡지, 라디오, TV에 접근가능한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방문기구는 국내법상 투표에 관한 수용자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수용자들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검토할 사항

변호인에 대한 접근

- 수용자들이 자신의 변호인과 자유롭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접견할 수 있는지?
- 변호인 접견이 어떤 조건하에서 일어나는지?

외국인수용자의 외부세계와의 교통

- 모든 외국인수용자들이 자국의 외교사절과 접촉을 취하고

있는가?

- 외교사절과의 접촉을 거부한 수용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만약 외교사절이 자국수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국적관련 서류가 분실되거나 만료된 경우 특히 중요)

외부정보에의 접근

- 수용자가 언론매체(신문, TV)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 제한이 있는가?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가?
 - 구금시설이 수용자들이 라디오나 TV를 볼 수 있는가? 또는 그러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가?
 - 당국이 신문, 잡지, 다른 정기간행물들을 무료로 제공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수용자들이 구매하거나 받을 수는 있는가?
-

4.3 교육

국제기준

“1. 모든 수형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7조

“모든 수용자들은 인성의 완전한 발달을 위해 문화활동과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6규칙)

“모든 수용자들이 자신의 개별적인 필요나 열망의 최소라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구금시설은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사회복귀, 수용자의 사기와 태도, 그들의 자존감의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77조

“교육은 작업과 같은 지위를 갖고 기초적 보수가 지불되는 시설 내 처우로 간주되어야 한다. 단, 교육은 정상적인 작업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된 개별적 처우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78조

“모든 수용자는 교과교육, 직업교육, 창조적·문화적 활동, 체육과 스포츠, 사회교육 그리고 도서관시설 등으로 구성된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R(89)12, §1

“h) 가능하다면, 수용자들은 구금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i) 교육이 구금시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지역사회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교도소의 교육에 관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1990/20*

R(89)12, §1의 권고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문 1990/20 전문, 『유럽 형사시설규칙』 제79조 내지 제82조와 교도소의 교육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 참조.

미결수용자

“수용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활동 프로그램(작업, 교육, 스포츠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미결수용자 모두에게 마찬가지로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구금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활동프로그램이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설에서-수용자가 상당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작업과 활동을 조직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분명히 이런 곳에서는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이 있는 구금시설에서와 같이 개별화된 처우프로그램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용자들은 단순히 몇 주간, 또는 몇 달간 거실 안에 무기력하게 갇혀있도록 방치될 수는 없다. 이것은 수용거실 내의 물리적 환경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당국이 미결수용자들도 하루 중 적당한 시간(8시간 또는 그 이상)을 거실 밖에서 다양한 성격의, 목적적 활동을 하며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물론 수형자들이 수용된 구금시설에서의 시설 내 처우는 더욱 좋아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GR 2, §47*

여성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들은 남성수용자들과 같은 수준의 의미있는 활동들(작업, 교육, 스포츠 등)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조사단은 남성수용자들은 보다 더 직업적 성격의 훈련을 받는 반면 여성수용자들은 대체로 그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바느질이나 수공예)을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적인 접근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시대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뿐이라고 본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여성에게 동등한 일과 활동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일반보고서』 §25*

또한 *ACPR, A-14-a)와 IDRCPDL 제35조* 참조.

청소년

“의무교육연령의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사회복귀의 준비를 위해 마련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석방 후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은 가능하다면 구금시설 밖 지역 사회 내 학교에서,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있는 교사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38조*

“의무교육연령 이상의 청소년이 계속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허용되어야 하며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39조*

해설

방문기구는 어떤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이 구금제도의 우선 순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수용자가 사회에 복귀하도록 준비시키고 수용자의 개인적 발달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교육은 현지의 언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 및 계산능력과 같이 수용자집단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기준은 교육을, 수용자의 필요와 잠재성에 맞게 수용자의 석방을 준비하는 개별갱생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

사회복귀 및 외부사회와의 교痛的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사회의 구성원(지역사회 학교, 대학, 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질 때 큰 이점이 있다.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얻은 자격은 외

부사회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작업과 같은 방식으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검토할 사항

- 어떤 형태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자의 비율은 얼마인가?
 - 교육을 원하는 모든 수용자는 교육활동에 접근가능한가?
 - 교육에의 접근성과 성과와 관련된 통계기록은 무엇이 있는가?
 - 교육의 내용이 목적에 합치하는가? 그리고 교육 활동이 개별적 필요와 특정 수용자집단의 필요(예를 들어 외국 인수용자)에 맞춰지고 있는가?
 - 교육에 보수가 지급되는가?
 - 강의와 훈련에 외부교사나 강사가 참여하는가?
 - 교육 장소는 어디인가?
 - 수용자들이 도서관을 사용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도서관은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언어로 된 서적들을 구비하고 있는가?
 - 여성수용자들이 남성수용자들과 동일한 조건하에 동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
 - 수용자들은 외부사회에서와 같은 교육기회를 갖는가?
 - 교육의 접근은 공정하고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가?
-

4.4 실외 운동

국제기준

“1.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 제21조

“실외 작업을 하지 않거나 개방형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모든 수용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실외에서,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적어도 한 시간의 산책이나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86조

“실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 수용자가 매일 야외에서 적어도 한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호장치이다. 나아가 실외활동이 광의의 활동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모든 수용자들이 예외 없이 (금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매일 실외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실외운동시설은 상당한 규모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좋지 않은 날씨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GR 2, §48*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1*』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33조 참조.

청소년

“모든 청소년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실외에서 적절한 오락과 운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적절한 공간, 설비, 도구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47조

해설

방문조사단은 수용자 및 구금시설직원으로부터 모든 수용자들이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매일 한 시간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실 밖에서의 시간이 이 시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구금이 며칠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수용자들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자연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천정 없는 감방과도 같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마당을 실외로 보기는 어렵다.

조사단은 실외운동이 실시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실외운동이 이루어지기로 예정된 장소를 방문하며 운동시간 중 수용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검토할 사항

- 매일 실외에서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는 최저기준이 모든 수용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 운동공간의 규모와 성격은 무엇인가?
- 실외운동에 배정된 시간 동안 수용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스포츠, 산책 등)
- 수용거실 밖에서 보내는 전체 시간은 얼마인가?
- 수용거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구금시설직원은 어떤 이유로 그러한 제한을 부과하는가?

- 지나치게 억압적인 처우방식
 - 보안시설의 문제점
 - 인력의 부족
 - 사용가능한 건물 및 공간상의 문제
 - 특정 사건으로 인한 단기적 제한
 - 기타
-

4.5 여가와 문화활동

국제기준

“오락과 문화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8조 (또한 제82조 참고)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는 구금 혹은 징역을 위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는 타당한 조건 하에서, 제한된 자원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분량의 교육, 문화 및 정보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28규칙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0조

“구금제도는 신체의 건강, 적당한 운동 그리고 오락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히 조직된 활동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83조

“따라서 체육, 스포츠 그리고 다른 오락활동으로 적절히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처우와 훈련제도의 기본틀과 목적 안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간, 설비, 도구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84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85조와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1 참조.

청소년

“청소년구급시설의 설계와 물리적 환경은 프라이버시, 감각적 자극, 동료들과 어울릴 기회, 스포츠참여, 신체적 운동, 여가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수용의 갱생적 목적에 합치하여야 한다. (...)”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32조

“모든 청소년은 매일 추가적인 여가활동시간을 가져야 하며,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그 시간의 일부가 예술과 공예기술 발달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 치료목적의 체육활동과 운동요법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의료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47조

4

해설

일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구급시설의 수용자들도 여가활동이 필요하다. 스포츠는 특히 수용자가 신체적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스포츠는 또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구급시설직원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조사단은 수용자들이 만족과 자기가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구급시설당국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어떤 시설이 이용되는지, 이것이 수용자를 위해 충분히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토할 사항

- 수용자들은 어떤 스포츠를 얼마나 자주, 얼마동안 할 수 있는가?
- 문화활동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활동이 가능한가?
- 활동의 종류와 배정시간이 제한된 경우, 어떠한 이유로 제한되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도서관이 있는가? 사용의 조건은 무엇인가?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로 저술된 서적이 있는가?
 - 여가활동에 배정된 방이나 공간이 있는가? 어떤 형태의 여가활동이 있는가?
 - 모든 수용자들이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또한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4.6 종교

국제기준

“1. 시설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있는 성직자를 임명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자격을 갖춘 성직자는 정규적 의식을 행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를 심방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3. 성직자에 대한 접근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교역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1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2조

“그러나 지역의 사정에 따라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계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용자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 제3규칙

“가능하다면 모든 수용자들은 구금시설에서 제공되는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고 필요한 책이나 문헌들을 소지함으로써 종교적, 영성적, 도덕적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46조 (또한 유럽형사시설규칙 제47조 참고)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1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43조 참조.

해설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따라서 수용자는 예배에 참여하는 집합적 권리를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는 아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종교생활을 원치 않는 수용자의 경우 종교생활을 의무화하거나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방문조사단은 예배를 드릴 권리가 다수종교나 국교의 구성원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소수집단의 권리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종교지도자들은 수용자들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접촉은 개인적으로, 적어도 구금시설직원이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할 사항

- 구금시설에서 종교지도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예 : 신도의 수)
 - 선정된 성직자나 조직된 예배 및 모임은 어떤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가? 이 종교가 전체 수용자들이 믿는 종교에 상응하는가?
 - 수용자들이 종교지도자와 접촉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건이 있는가?
 - 종교의식은 언제(그리고 얼마나 자주), 어디서 행해지는가?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평균 참석자의 수는 얼마인가?
 - 음식, 의복, 위생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면에서 수용자들이 종교 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는가?
-

4.7 작업

국제기준

“수용자들이 노동시장에 쉽게 복귀하고 자신과 가족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고 보상이 있는 고용활동을 보장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제8규칙

“1. 수용자의 작업이 고통을 야기해서는 아니한다.

2. 유죄를 선고 받은 모든 수용자는 의사가 진단한 신체적 및 정신적 적합성에 맞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3. 적정 시간의 유용한 작업을 통해 정상 근무일(평일)에는 수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용자의 작업은 가능한 한 수용자가 출소 이후에 정직한 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5. 수용자, 특히 어린 수용자를 상대로 유용한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한다.

6. 수용자는 교도행정의 규율과 제한된 직업선택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1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71규칙과 유사)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노동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3(a)

“1. 교도작업이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외부 사회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행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준비시켜야 한다.

2. 그러나 수행자 및 이들의 직업훈련의 이해관계가 시설내 사업에서 오는 수익창출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2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72조와 유사)

“1.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2. 작업시간은 매주 1일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고 정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5조

“ 1.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임금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이 제도 하에서 수형자는 구입이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수입의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또한 시설이 수용자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여 석방 때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6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76조와 유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3조, 제74조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5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34조 para. 1 참조.

청소년

“제3조 para1에 따라 청소년범죄자들은 (...) 구금조건에 관한 한 그들의 연령과 법적 지위에 적합한 처우, 예를 들어 그들의 관심과 갱생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 보다 짧은 작업시간 등을 적용받아야 한다.” 『일반논평』 21 para13

“적절한 직업선택과 구금행정상의 조건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43조

“가능한 한, 청소년은 사회복지시에 적절한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충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작업을 수행할 기

회가 주어져야 한다. 작업의 종류는 석방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이어야 한다. 구금시설에서 제공하는 작업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의 동종 작업과 유형과 방법 면에서 유사해야 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45조

해설

방문조사단은 구금행정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용자 착취가 아닌 훈련에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수용자의 노동에 관한 여러 (인권)기준들은 모든 수용자들이 의미 있고 보수가 지급되는 활동에, 그러나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일 없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일터에 복귀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보면, 수용자들은 장래에 합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외부 노동 시장에 맞춰 개발된 직업기술훈련이 여기에서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의 경우 작업이 의무적일 수는 있지만, 오직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그렇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그러나 수용자에 의한 모든 의무 노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역이 법원에 의한 형벌의 일종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노동에 관한 ILO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미결수용자들은 강제로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희망할 경우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업 능력이 있는 수용자들만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 중인 수용자가 아플 경우, 의사는 수용자를 치료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용자가 작업에 따르는 수입을 잃지 않도록 진단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다.

여성수용자들에게도 석방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작업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들의 작업이 사실상 재봉이나 수공예작업과 같은 활동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고려점은 다음과 같다:

- 작업은 징벌적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 작업에 대한 보수가 있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수용자들은 작업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형이 감해진다.)
 - 작업시간은 구금시설 외부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가기준이 구금시설 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

검토할 사항

- 구금시설에서 어떤 작업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와 유사한가?
 - 구금시설 밖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특히 젊은 수용자들과 석방이 임박한 수용자들을 위해)
 - 모든 수용자들을 위한 충분한 작업이 없을 경우, 작업을 하게 되는 수용자들은 어떻게 선택되는가? 작업배분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가?
 - 어떤 종류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작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작업 조건은 어떠한가, 사회에서의 작업조건과 유사한가?
 - 구금시설 밖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가?
 - 작업으로 인한 수입은 수용자, 구금시설 그리고 국가에 배분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분배되며, 그 기준은 투명한가?
 - 수용자는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고 저축할 수 있는가?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참고 문헌

- Andrew Coyle,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2003. (Chapter 7 constructive activities and social reintegration; Chapter 8: Contacts with the Outside World, pp.83-04.)
 - PRI, Making standards work, London 2001. (Section V-Prisoners contacts with the outside world, pp.101-15; Section VI-Programmes for prisoners, pp.7-149.)
 - UN HCHR, Human Rights and Prisons, Geneva 2003. *Section 6: Making the best use of prisons; Section 7: Prisoner's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pp.76-102.)
 - Peter Sutton, (ed.) Basic Education in Prisons: Final Report, United Nation/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UIE) joint publication.
-

5. 의료 서비스

자유형은 수용자들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고, 자유형 자체가 수용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구금기관은 수용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건강, 건강한 생활 및 작업조건 그리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구금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구금시설 외부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방문조사단은 동의(同意)와 비밀유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뢰 관계는 환자와 의료행위자 사이에서 핵심이다. 더 나아가 국제적 기준들에 의하면 수용자는 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단은 자신의 국가나 지역에 현안으로 등장한 주요보건문제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결핵, HIV/AIDS, 약물남용 등이 있다.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석방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 여성(및 아기)에 대한 특별 의료 서비스
-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특별 의료 서비스
- 의무직원

5.1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국제기준

“의사는 모든 수용자를 입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후에는 필요에 따라 면접하고 진찰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를 격리하고, 사회복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수용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4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9조와 유사)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는 구금 혹은 징역을 위한 시설에 입소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후 필요시마다 간호 및 의료조치를 제공받아야 한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24규칙

5

“모든 수용자는 입소시에 지체 없이 구금시설 의료진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의 보고서에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새로 도착하는 모든 수용자들이 적절히 문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입소 후 신속하게 의사에 의해 검진을 받도록 권고해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소시 의료검진이 유자격 간호사에 의해 진행되고, 그 결과를 간호사가 의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후자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용자들의 입소시에 구금시설 내 의료서비스의 존재와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기본적 위생수칙을 상기시키는 소책자를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3차 일반보고서』, §33

2.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수용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

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3.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1.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돌봐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5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30조와 유사)

“법집행 공무원은 구금 중인 자의 건강에 대하여 완전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료적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집행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구속 중인 수용자는 시설 내 처우제도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의사와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독방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가 의사와 접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제2차 일반보고서 CPT/Inf (92)3의 para56 참고.) 의료서비스는 의사 면담 요청이 불합리한 지연 없이 응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수용자는 봉인된 봉투에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방식과 같이,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금시설 직원들은 의사와의 면담 요청을 선별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3차 일반보고』, §34

또한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4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25조 참조.

해설

방문조사단은 구금시설과 “민간”의료시설을 비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행형제도 외부에서 이용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같아야 한다. (동등성의 원칙)

새로 도착한 수용자는 입소시 의사나 자격 있는 간호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이미 존재하는 질환과 이전 구금장소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검사과정은 수용자와 구금시설직원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모든 수용자는 하루 이내에 지체없이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가 검진을 받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상담은 의료진과 환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구금시설직원이나 다른 수용자가 상담내용을 들을 수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금시설직원은 수용자가 의사상담을 원하는 이유를 묻지 않고 의사와의 접촉을 허락해야 한다.

전문치료를 요하는 수용자는 구금시설 내의 전문의나 외부 이송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구금시설에는 종합병원으로의 비상이송을 위해 특별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학대에 해당한다.

수용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만약 조사단에 자격 있는 전문의료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단은 방문시 가장 흔한 질병, 전염병의 발생건수, 사망 등 수용자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조사단은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검토할 사항

- 보건상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 구금시설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 결핵, HIV/AIDS 및 다른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전략에 구금시설이 포함되어 있는가?

- 의료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
- 수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의사 및 외부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 스스로의 요청으로: 이 경우 절차는 어떠한가?
 - 의료진을 통해: 얼마나 자주 이들이 의무실을 방문하는가?
 - 직원을 통해: 이 경우 절차는 어떠한가?
- 의무관이 24시간 근무하는가?
- 비상시 주/야간 병원후송을 위한 절차규정이 있는가?
- 심리학자(정신과 의사)와의 면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의료진의 요청과 치료 과정상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진정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의약품

- 의약품의 비축은 적절한가? (예를 들어 감기약)
 - 약품은 어떻게 주문되는가?
 - 의약품 비축분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5.2 의무 직원

국제기준

“1.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돌보아야 하며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2.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5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30조와 유사)

“1.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조직되어야 한다. 의료업무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유럽형사시설규칙』 제26조과 유사)

“구금시설의 의료서비스는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응급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침상이 있는 병원 형태의 의무국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수용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관은 전문의의 치료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치료에 대해서 의사는 언제나 대기 중이어야 한다. 또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 가능하면 유자격의 간호사가 구금시설 안에 상주해야 한다.

외래진료는 의료직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경우처럼 그 후속치료가 수용자의 최초 요구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3차 일반보고』, §35

“다음의 경우는 의료종사자 특히 의사의 의료윤리위반이 된다:

(b) 수용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관련 국제인권조약이나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처우나 처벌을 수용자가 받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증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관련 국제인권조약이나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처우나 처벌을 가하는 데 어떠한 형태로라도 참여하는 행위.” 『수형자와 구금된 자에 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에서 의료종사자, 특히 의사들의 역할에 관한 국제연합 의료윤리원칙』 제4규칙

“모든 구금시설의 의료진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환자(병든 수용자)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구금시설의 관리나 보안상의 문제와 자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려운 윤리적 문제와 선택을 유발한다. 의료문제에서 이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의료종사자들이 사회 전체의 주류 의료제도와 제도적으로 가능한 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3차 일반보고』 §7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29조 참조.

해설

구금시설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조사할 때, 방문조사단은 의료직원들의 역할과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 이들이 가지는 자율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의료직원들은 보통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처우와 구금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당국에 보고함으로써 일반적 구금조건이 건강한 환경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 전염병을 발견하고 그 확산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수용자들이 개별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관련 개별 환자를 전문의에게 이송한다.

이러한 다중적인 업무는 구금시설의 의사가 수용자에 대해서는 주치의이지만 동시에 구금시설의 행정당국에 대해서는 조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구금당국에 대한 조연자의 역할은 전체적이고 개별적인 보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제한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나 간호사가 처벌의 집행에 참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의료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최저기준규칙의 해석에도 반하는 것이다.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 의료직원들은 구금당국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의료직원들이 구금당국에 속해 있기 보다는 전국적인 일반적 의료체계에 속해 있을 때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

의료직원들은 일반의 비밀유지 강령의 구속을 받는다.

의료직원의 전문성, 독립성, 직업상의 윤리,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보건전문가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단은 유자격 전문 의료인을 포함시키거나 의료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할 사항

- 의료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기타)
 - 의료팀이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 물품, 서비스, 정보 및 훈련의 측면에서 구금시설의 의료팀이 공공보건서비스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가?
 - 의료팀의 근무시간은 구금시설의 필요에 비추어 적절한가?
 - 이들의 업무는 무엇인가?
-

5.3 여성과 유아를 위한 특별 의료

국제기준

“(...)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에 관한 한, 의료서비스 동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인학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해 특별훈련을 받은 의료행위자와 간호사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방암 및 자궁암 검사와 같은 여성에게 특히 관련 있는 예방적 의료조치가 외부지 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이는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0차 일반보고서』 §32*

“1. 여자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2.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어머니가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3조*

“아기가 구금시설에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럽이사회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관행은 적당한 시기에 임산부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때때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부인과 검진이나 분만 중에 임산부가 차꼬를 차거나 침대나 다른 가구로 행동이 제한되는 예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분명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 다른 종류의 보안조치가 고안되어야 하고 사실 이는 가능하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0차 일반보고서』 §27*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B-2b), c), d), e)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20조 참조.

해설

방문기구는 구금시설이 여성의 특수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종종 마련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여성수용자들은 수감 이전 성적인 것을 비롯해 학대를 받았을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수용자들은 구금된 이후에도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

부인과 진료는 보장되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에 의한 욕구는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검토할 사항

- 의료진에 부인과 전문의가 있는가? 있다면 근무시간은 어떠한가?
 - 부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 임신부의 특별한 욕구에 대처하고 있는가?
 - 아기를 동반한 어머니들의 특별한 욕구에 대처하고 있는가?
 - 출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 영유아가 여성수용자와 함께 지낼 경우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는가?
-

5.4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특수 의료

국제기준

“1.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해두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기타의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의 수형자는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3. 이들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동안은 의무관의 특별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2조 (『유럽형사 시설규칙』 제100원칙과 유사)

4. 형집행 기관은 의료 및 정신과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수용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SMR, Rule 82 (EPR, Rule 100 과 유사)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적절한 시설과 적절히 훈련된 의료진을 갖춘 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받아야 한다. 수용자를 공공병원에 입원시키는 결정은 해당당국의 승인을 받는 조건하에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R(98)7, para. 55

“윤리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구금제도 외부의 공적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종종 개진된다. 반면 구금제도 내부에 정신질환치료시설을 두는 것이 최상의 보안조건 속에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료적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설 내에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3차 일반보고』 §43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B-5-b), c), d)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17조를 참조.

해설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의 비율은 일반 사회에서보다 보통 높은 편이다. 따라서 방문조사단은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가 어느 정도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로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감독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치료는 적절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제기준들은 정신병원이 그러한 전문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장소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제3차 일반보고서에서 표명했듯이 구금제도 내부에 특수 정신과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구금시설에 설치된 정신과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사단은 부정기적으로라도 자격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전문의를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조사단은 어떠한 정신질환치료정책이 있는지, 그러한 정책이 잘 계획되어 있는지 또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보건서비스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강제명령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와 같은 일부 방문기구 또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하의 기구들은 그들의 업무에 이러한 자들의 수용환경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매뉴얼에서 이 주제를 다루어지는 않는다.

검토할 사항

-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구금시설에 입소한 수용자가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 그러한 진단이 있는 경우, 수용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예를 들어, 외부정신병원으로 이송, 구금시설 내 특수시설에 입원, 특별한 조치 없음)
 - 이러한 수용자들은 누가 담당하는가? (정신과 전문의, 일반의)
 - 구금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몇 명인가? 아니면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가?
 -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받는 치료는 무엇인가? (약품, 재활 활동 등)
-

참고 문헌

- PRI, Making standards work, London 2001. (Section IV Prisoners' mental and physical health, pp.69-98.)
- Andrew Coyle,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2003. (Prisoners and Health care, pp.49-58.)
- PRI, Making standards work, London 2001. (Section V-Prisoners contacts with the outside world, pp.101-115; Section VI-Programmes for prisoners, pp.17-149.)
- UN HCHR, Human Rights and Prisons, Geneva 2003. (Section 4: Health Care of prisoners, pp.46-63.)

구체적 기준들

- CPT 3rd General report on activities, Health care services in prisons, CPT/Inf(93)12, §30-77.
 - CPT 10th General report on activities, Women deprived of their liberty, CPT/Info(2000)13, §26-33.
 - CPT 8th General report on activities, Involuntary Placement in psychiatric establishments. CPT/Info(98) 12, §25-58.
 - International Council of Prison Medical services, Oath of Athens for prison physicians, 1979, www.icpms-interfree.it/atheus.
 - 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1991.
-

6. 구금시설 직원

방문기구는 구금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금시설 직원들이야말로 말로 수용자들이 어떻게 채우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도적인 구금환경의 열쇠는 구금시설 직원과 수용자가 맺게 되는 관계의 성격에 달려있다.

다음의 요인들이 구금시설 직원들의 자질을 결정한다.

- 조직 (인력 규모, 여성 직원의 수, 수용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직원의 비율, 근무시간과 여건)
- 채용과 기초교육
- 전문 기술과 태도
- 업무 여건과 지위
- 전문화
- 강제력의 사용
- 여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 구금시설의 장(長)

구금시설 직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일부 담당영역은 겹쳐질 수 있다)

- 행정
- 내부감시
- 외부감시/보안 (항상 교정당국 책임자의 관할은 아님)
- 의료직원
- 사회직원 (특정 집단의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에 책임이 있는 직원)
- 이송담당

- 훈련담당 (교육, 활동 등)
- 보급담당

방문조사단이 직원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범위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단이 구금시설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자들의 수용환경은 시설직원들의 근무환경이기도 하다. 직원들의 시설운영에 대한 견해와 이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대단히 절실한 것이다.

구금시설 직원

- 일반적인 이슈
 - 구금시설 직원의 훈련
-

6.1 일반적인 이슈

국제기준

“1. 교도시설의 행정은 각 직급의 인력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의 정직성, 인간성, 직무 능력과 직무적합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

2. 교도시설의 직원과 시민들 모두에게 본 업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봉사라는 의식을 일깨우고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3.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도시설의 직원은 신분 보장권을 가진 상급 전문직 국가공무원으로 선발된다. 단, 이와 같은 신분 보장권을 누리기 위해 올바른 행동, 효율성, 신체 건강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급여는 필요한 인원이 관심을 갖고 교도 시설직에 지원하고 선발 후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을 만큼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근로 수당과 복지 혜택은 고된 교도시설 업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3조 (또한 제54조도 참조)

“구금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시설의 조직 및 처우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금시설 직원이 가지는 근본적 중요성의 관점에서, 구금당국은 직원에 관련된 규칙 준수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유럽형사시설규칙*』 제51조

“(…) 구금시설 직원의 혼성 구성은 구금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에 대한 중요한 예방장치가 된다. 남성과 여성 직원의 존재는 보호감독의 기풍과 구금시설에 일정수준의 보편성을 형성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0차 일반보고서』 §23

“인도적인 구금시설의 초석은, 수용자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태도를 취할 줄 알고 자신의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소명감이 필요한 특별한 일이라

고 보는, 올바르게 채용되고 훈련된 구금시설의 직원들이다.

유감스럽게도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구금시설 직원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소원하며, 직원은 수용자에 대해 통제적 태도를 취하고 수용자들과의 구두소통을 업무의 사소한 측면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종종 목격한 다음의 관행들이 이러한 생각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수용자는 구금시설 직원이 업무를 보거나 방문자들이 지나갈 때 벽을 향해 서있거나, 수용자들이 구금시설 내부에서 머리를 숙이고 손을 등 뒤로 잡은 채 이동해야 하는 것들, 교도관이 제압봉을 잘 보이도록 또는 위협적인 방법으로 소지하곤 한다. 이러한 관행들은 보안의 관점에서도 불필요한 것이고 구금시설직원과 수용자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구금시설 직원들의 진정한 전문성은 보안과 질서유지에 주의하면서도 수용자들을 존중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룰 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금시설 관리자는 직원들로 하여금 수용자들이 적절히 잘 행동할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감과 기대감을 갖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구금시설 직원과 수용자 사이에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이는 학대 가능성을 줄일 뿐 아니라 통제와 보안의 수준도 향상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구금시설 직원의 업무를 보다 보람 있게 할 것이다.

긍정적인 직원-수용자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활동하게 되는 모든 장소 및 시설에 언제나 적절한 수의 직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조사단은 종종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발견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낮은 숙련도와 수용자와의 직접적 접촉 가능성을 낮추는 특정한 직원 출결제도는 긍정적 관계의 발전을 분명히 저해하며 좀 더 일반적으로는 구금시설직원과 수용자 모두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구금시설에서 기초적 보안과 시설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초과근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고 정신적 및 체력적 소진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모든 구금환경에 내재적인 긴장을 강화시키게 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1차 일반보고서』, §26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7조
Para 1 참조.

청소년

“직원 은 유자격자여야 하며 교육자, 직업훈련 강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등 충분한 수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또는 기타의 전문 직원들은 보통 상근제로 고용되어야 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81조 제1항

“구금시설의 올바른 관리는 구금시설직원의 자기완결성, 인도주의, 능력, 청소년을 다루는 전문적 기술, 그리고 업무에 대한 개인적 적합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국은 모든 직급과 분류의 직원에 대해 신중하게 모집, 선발해야 한다.” 『유엔소년수용자보호규칙』 제82조 제3항

해설

방문조사단은 구금시설 직원들의 행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역할이 구금시설 전체 분위기에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을 그들의 기술과 성품에 대한 투명한 기준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직원의 수는 물리적 보안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직원과 수용자 사이의 인간적인 접촉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남성직원과 여성직원의 비율은 이상적으로는 일반사회의 성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여건과 지위는 직원들이 수용자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보수, 근무시간, 진로, 임무를 바꿀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영역들이다. 수용자의 보호를 위해 직원들은 분명한 보고체계와 규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금행정이 운영에 있어 계급을 가지는 군대구조여야 할 이유는 없다.

수용자에 대한 직원의 행동은 그들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받는 지시에

의존한다. 직원들은 그들 자신의 위계적 조직을 대하는 태도, 정치인들의 발언, 수용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구금시설의 장은 모든 구금시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사단은 직원과 수용자간의 관계의 성격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관계의 성격은 단어의 선택, 어조, 바디랭귀지, 그리고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서 표현된다.

검토할 사항

조사단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수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의 수와 비율
 - 채용기준 - 교육수준과 인적사항
 - 기초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
 - 평균임금
 - 여성 직원의 수와 이들의 직위
 - 직원과 수용자 간의 호칭
 - 직원과 수용자간에 접촉할 수 있는 방법
 - 수용자, 상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직원의 태도
 - 수용자에 대한 구금시설의 장의 접근가능성
 - 구금시설장이 구금시설의 모든 장소를 방문하는 빈도
-

6.2 직원 교육

국제기준

“1. 교도시설 직원은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지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도시설의 직원은 일반 업무와 특수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론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업무를 시작한 후에도, 교도시설 직원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직무교육훈련을 참여하여 필요한 지식과 전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7조

“집행직원, 의무직원, 경찰관, 그리고 모든 형태의 체포, 구금 및 징역에 처해진 모든 개인의 구속과 처우에 관한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적절한 지식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일반논평 20*, para 10

“마지막으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법집행 공무원의 훈련(인권교육 포함, 『고문방지협약』 제10조와 관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또는 교정공무원을 올바르게 훈련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보호 장치는 없을 것이다. 숙련된 관련 공무원은 학대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구금된 자와 수형자들을 위한 기본적 보호 장치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2차 일반보고서』 §59

“이러한 점에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대인관계가 법집행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 주요요소가 되어야 하며, 훈련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대인관계 능력의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기술은 경찰 및 교정공무원이 폭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련된 모든 자들의 이익을 위해 경찰 및 구금시설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2차 일반보고서』 §60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7조 para2 참조.

청소년

“직원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심리학, 아동복지, 그리고 본 규칙을 포함하여 국제인권 및 아동권 기준과 규범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절한 간격으로 조직된 직무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지식과 전문적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유엔 소년 수용자보호규칙』 제85조

해설

방문기구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격 있는 직원이 인간적인 행정제도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훈련과 이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훈련은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윤리를 강조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직원들에게 필요한 기술적 측면(보안과 강제력의 사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훈련은 대인관계 기술이나 무질서 예방, 비폭력적 분쟁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적 훈련의 기회는 성, 연령, 직급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직원들은 특히 폭력적인 사건 이후에는 심리적 수퍼비전, 지지,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검토할 사항

현재의 채용기준은 무엇인가?

- 신규채용자가 받는 기초교육은 무엇인가? (형태, 기간, 과목, 평가) 지속적인 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들은 잘 활용되는가?
 - 특별한 수용자군을 담당하는 직원들은(예 : 청소년수용자의 담당직원) 특별한 훈련을 받는가?
 - 직원교육에 진정, 감찰, 감시(방문메커니즘에 의한 외부감시를 포함하여)가 포함되는가?
-

참고 문헌

- PRI, Making standards work, London 2001. (Section VII-Prison staff, pp.151-166.)
 - Andrew Coyle,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2003. (Prison staff and the administration of prisons, pp.13-30.)
 - UN HCHR, Human rights and Prisons, Geneva 2003. (Section 12, The administration of prisons and prison staff, pp.162-171.)
-

7. 경찰에 의한 구금

방문조사단은 모든 구금 장소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직 경찰에 의한 구금만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종류의 구금만을 모니터링하도록 위임된 방문기구의 경우에도 경찰구금 기간에 일어난 고문과 학대에 대한 주장을 접하게 된다. 경찰구금에서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된 후가 수용자들이 고문이 있었음을 최초로 주장하게 되는 때이다. 왜냐하면 경찰단계의 구금장소를 떠날 때까지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문주장은 물론 모든 방문조사단의 활동과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구금이나 일반적인 경찰활동을 감시하는 책임을 지는 별개의 기구가 있을 경우, 방문조사단은 이러한 기구와 협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서 방문은 구금시설의 경우와 다르다. 외부와의 교통은 대체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수용자들은 조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보다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차이로는 구금의 물리적 여건인데, 이는 장기적 생활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보다 기본적인 것이다. 절차적 보호장치를 포함하여 수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특히 더 중요하며 방문기구는 해당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방문조사단은 경찰구금의 기간과 계속적인 구금을 승인하는 데 판사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경찰에 의한 자유의 박탈은 최소의 기간이어야 한다. 규정된 단기의 기간 (통상 24시간 내지 72시간) 이후 경찰에 의해 구금된 자는 석방되거나 구금의 계속이나 석방을 결정하기 위해 판사 앞에 (직접)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이러한 한계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판사는 수용자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종종 체포 직후의 이 기간 동안 학대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이 가이드의 처우/고문과 학대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형태의 구금에 특히 더 적절하다.

7.1 기본적 보호 장치

국제기준

“또한 수용자의 보호는 의사와 변호사,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요구된다면 적절한 감시하에 가족과의 신속하고 정기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일반논평 20』 para11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경찰에 의해 구금된 수용자들이 갖는 세 가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의 구속사실을 자신이 선택하는 제3자(가족, 친구, 영사)에게 통보할 권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게 진료 (경찰에 의해 요청된 의사의 진료 이외)를 요청할 권리.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이 권리들이 수용자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적인 보호장치로써 (체포 등에 관한) 해당 법제도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그 순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2차 일반보고서』 §36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자유를 박탈당한 초기의 시간이 협박과 신체적 학대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해왔다. 따라서 경찰에 의해 구속된 자가 이 기간 중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된다. 이것의 존재가 수용자들을 학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억제효과를 가질 것이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학대가 실제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가 쉬울 것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기간 동안 수용자가 자신이 선택하는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예외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변호인접견권이 해당기간 동안 완전히 거부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다른 독립된 변호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변호인에게 비공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다. 원칙적으로 관련자는 경찰에 의한 모든 심문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당연히 경찰이 긴급한 문제에 대해 변호인이 부재한 가운데 수용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변호인이 즉시 출석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심문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변호인과의 접견권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출석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예를 들어 “증인”도 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변호인 접견권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변호인 고용을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적절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2차 일반보고서』 §36

“경찰에 의해 구금된 자는 공식적으로 의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즉, 수용자가 진료를 요청하면 의사는 지체 없이 호출되어야 하며 경찰관은 이러한 요청을 선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사에 대한 접근권은 수용자가 원할 경우 자신이 선택하는 의사(경찰에 의해 요청된 의사에 의한 진료이외에)에 의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경찰구금상태에서 모든 진료는, 특수한 경우에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집행공무원이 들을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판사의 신문 전에 경찰구금에서 풀려난 자가 공인된 법의학자에게 진료/진단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2차 일반보고서』 §42

“수용자가 자신의 구속사실을 자신이 선택하는 제3자에게 통보할 권리는 경찰구금 초기에서부터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 경찰조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 경우는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시간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호장치(예를 들어 구속사실 통보의 지연은 그 이유와 함께 문서로 기

록되어야 하며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상급경찰관이나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동반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2차 일반보고서』 §43

“경찰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제3자에게 구속사실을 통보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가능하다면 자신이 선택하는 의사에 의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유럽 경찰윤리강령』, 2001. 제57조

또한 수용자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A-17-b), B-1h),g)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36조 *para* 1 참조.

청소년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선언초안』 제36조 *para* 1 참조.

해설

체포의 초기에 수용자들은 가장 열악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구속에 책임을 지는 자들에 의한 권력 남용 위험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에는 적절한 장치를 수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다음의 보호장치를 자유박탈 초기에서부터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제3자에 통보
- 변호인 접견
- 의사에 대한 접근

방문조사단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사항

- 수용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었는가?
 - 수용자가 변호인과 연락하였는가?
 - 수용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았는가?
 - 법정 최장구속기간이 준수되었는가?
 - 수용자가 판사와 면담하였는가? (대면)
 - 수용자가 고문을 당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었는가?
 - 남성과 여성은 분리 수용되어 있는가? 청소년과 성인도 분리 수용되어 있는가?
 - 수용자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 청소년과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전담 관리자가 있는가?
-

7.2 기록

국제기준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각 수용자에 대해 그 구속의 모든 측면과 이에 대해 취해진 행동에 대하여 단일하고 포괄적인 구속기록(언제 구속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언제 고지 받았는가, 상해 및 정신 질환의 징후 등이 있는가, 인척이나 영사, 변호인과 언제 접촉했으며 언제 방문했는가, 언제 급식이 이루어졌는가, 언제 심문당했는가, 언제 이송되었고 언제 석방되었는가 등)이 작성된다면 경찰구금하에 있는 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그리고 경찰관의 업무 또한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개인소지품, 체포되는 자가 가지는 자유를 고지받은 사실과 이의 인용 또는 포기) 수용자가 서명을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서명의 부재는 그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의 변호인은 그러한 구속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2차 일반보고서』 §40*

해설

기록은 수용자 체우와 이후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대해 문서화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중요한 보호장치가 된다. 기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있으며 이들은 보통 다른 기록장부에 등록된다. 방문기구는 이러한 기록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서류가 부적절하게 완성된 것이 있다면 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정보들로는 수용자의 이름, 체포이유, 체포시각, 심문, 이송, 제3자에의 통지 등이 포함된다. 수용자가 구속 상태에서 구속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토할 사항

- 다음의 정보가 기록되었는가? 체포 일시, 심문 일시, 이송 및 석방 일시, 제3자 통보 일시, 수용자 권리 고지의 일시와 방법, 의사 방문 일시, 변호인 및 제3자의 방문 일시, 급식, 급식 내용과 일시
 - 정보가 체계적이고 엄정한 방법으로 기록되었는가?
 - 법정최장구속시간이 준수되었음을 기록이 보여주는가?
 - 신체적 상해, 고문이나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기록되었는가?
-

7.3 심문

국제기준

“1.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에 대한 심문 시간 및 심문 간 시간 간격, 그리고 심문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기타 참여한 자들의 인적 사항은 기록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법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일정 형식을 갖춰야 한다.

2. 구금된 자 혹은 수형자 또는 그의 변호인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동 원칙 제1항에 명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징역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23원칙

“심문과정에 대해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경찰심문이 실행되는 방식에 대해 분명한 규칙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규칙과 지침들은 특히 다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즉, 수용자에게 심문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원(이름 또는 수)을 고지, 심문하는데 허용되는 시간, 개별 질문 사이의 간격과 심문 기간 동안의 휴식, 심문 장소, 심문 과정에서 수용자가 서 있어야 할지의 여부,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는 자에 대한 심문 등이다. 심문이 시작되고 끝난 시간과 심문 도중 수용자가 한 요청 그리고 각 심문 과정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경찰 심문에 대한 전자기록이 수용자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유용한 보호장치(또한 경찰에게도 대단한 이점이 될 수 있는)라는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2차 일반보고서』 §39

“경찰심문의 전자(오디오 또는 비디오)기록은 수용자 학대를 방지하는 중요한 부가적인 보호장치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설비는 심문과정의 완전하고 진실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학대 주장에 대한 조사과정을 대단히 용이하게 한다. 이는 경찰에 의해

학대당한 사람과 자신들이 신체적 학대나 심리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직면한 경찰관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경찰심문의 전자기록은 또한 피의자가 특정 자백을 했다는 것을 후에 거짓으로 부인할 가능성을 경감시킨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2차 일반보고서』 §36*

“형사사건 피의자의 심문이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는 전문가의 업무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심문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그 목적은 조사대상에 대한 진실을 구하기 위해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지 수사관의 눈에 이미 유죄로 추정되는 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훈련규정 외에, 형사사건 피의자 심문에 관한 행동강령을 제정함으로써 법집행 공무원들이 위에서 언급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2차 일반보고서』 §34*

“심문규칙, 지시사항, 방법, 관행 그리고 모든 형태의 체포, 구금 또는 징역에 처한 자들의 보호와 처우에 대한 조치들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반논평 20』 para. 11*

“구금된 자들의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문의 모든 시간과 장소는 심문에 참가한 모든 자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이 정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재판의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논평 20』 para. 11*

“경찰심문의 올바른 수행과 완전성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 지침은 심문 중 피심문자에게 심문의 목적과 다른 관련 정보에 대해 고지를 하는 심문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경찰심문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은 보관되어야 한다.” *『유럽 경찰윤리강령』 §50*

해설

심문은 수용자가 학대나 고문에 취약한 특히 중요한 순간이다. 힘들여 수집하는 증거가 아닌 자백에 중점을 두는 수사제도에서 경찰관이 학대나 고문에 의존할 위험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성은 경찰관의 승진이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수에 달려있을 경우 증가한다.

심문을 거쳤거나 아직 심문과정에 있는 수용자를 접견할 때, 조사단은 이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사단의 구성원들은 수용자의 감정적 상태와 그의 안전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조사단의 희망과 수용자 자신의 필요와 공포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경찰에 의해 구금된 수용자가 조사단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이 가져올지 모를 위험성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단은 심문의 일시, 길이, 장소 및 심문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거짓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토할 사항

- 수용자가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가?
 - 체포과정에서? 심문과정에서?
 - 수용자가 심리적 폭력(학대나 위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가?
 - 심문시 환경은 어떠했는가?
 - 기록상 심문을 수행한 자의 이름과 심문의 길이, 휴식시간이 언급되어 있는가?
- (제5장 처우/고문과 학대 참고)
-

7.4 정보의 고지

국제기준

“체포된 사람은 체포 당시 체포사유 및 그에게 부과된 혐의를 신속히 고지 받아야 한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10원칙

“모든 사람은 체포될 당시 그리고 구금 혹은 징역이 시작될 당시 혹은 그 이후라도 신속히 그의 체포, 구금 혹은 징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부터 그의 권리 및 이러한 권리의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 및 설명을 각각 고지 받아야 한다.”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보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 제13원칙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권리는 본인이 그러한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가치가 없다. 따라서 경찰에 의해 구속된 자들은 명시적으로 지체 없이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명백하게 언급하는 문서가 경찰에 의해 구속된 자들에게 구속시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고지 받았음을 증명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2차 일반보고서』 §44

“경찰은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한, 자유가 박탈당한 자에게 신속히 그 자유박탈의 이유와 그에게 일어날 변화를 고지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에게 자신의 사건에 적용될 절차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유럽 경찰윤리강령』 §55

해설

방문기구는 체포된 자가 제공받아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이를 제공받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수용자들은 각자의 체포 사유를 고지 받

아야 한다. 수용자들은 또한 그들의 권리(예를 들어 제3자 및 변호인 접견)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정보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문서를 이용하거나 수용자가 문자해독능력이 없다면 구두로 해야한다.

검토할 사항

- 수용자가 체포이유를 신속하게 고지받았는가? 수용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았는가? 구두로 이루어졌는가? 문서로 이루어졌는가?
 - 수용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이루어졌는가? 통역이 사용되었는가?
 - 취약한 수용자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

7.5 물리적 환경

국제기준

“모든 경찰서 유치장은 청결해야 하며 통상 수용되는 사람의 수에 적당한 규모여야 하며 적절한 조명(즉, 독서가 가능한 조도, 수면시간 제외)을 유지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유치장은 자연광이 들어야 한다. 또한 유치장은 휴식 수단(고정된 의자 또는 벤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밤을 보내야 하는 자들은 깨끗한 매트리스와 모포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찰 구금하에 있는 수용자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적절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세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들은 쉽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간에 매일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찰 구금하에 24시간 또는 그 이상 수용된 자들은 가능한 매일 실외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12차 일반보고서』 §47*

“경찰서 유치장(또는 다른 형태의 구금된 자/수형자 수용시설)의 적절한 크기가 무엇인가는 어려운 질문이다. 이를 위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조사단은 이 분야에서 대략적이라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하의 기준(최저기준이라기 보다는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보이는)은 현재 수 시간 이상 머물러야 하는 단일 수용의 경찰서 유치장을 평가할 때 이용되고 있다. 그 기준은 7평방미터, 벽 사이는 2미터 또는 그 이상, 천장과 바닥 사이는 2.5 미터이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제2차 일반보고서』 §43*

“경찰은 구속된 자들의 안전, 건강, 위생을 보장하고 적절한 영양을 제공해야 한다. 경찰서 유치장은 적당한 크기여야 하며 적절한 조명과 환기 그리고 적절한 휴식 수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유럽 경찰윤리강령』 제56조*

해설

경찰하의 구금은 단기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적 요건은 좀 더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서 유치장은 자연광과 환기 그리고 기후와 계절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밤을 지새어야 하는 자가 있다면 유치장에는 매트리스와 모포가 있어야 한다. 화장실 사용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방문조사단은 이러한 시설들이 종종 장기간 사용되어지는 점과 때로는 시설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유치장이 작을수록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어야 한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수 시간 이상 머물러야 하는 개별 경찰서 유치장을 평가할 때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면적은 약 7평방미터 (벽 사이는 2미터 또는 그 이상, 천장과 바닥 사이는 2.5 미터)

검토할 사항

- 유치장의 면적, 공식적인 수용 가능 인원, 실제 수용인원은 얼마인가? 과밀수용상태인가?
 - 유치장에 자연광이 들어오는가?
 - 실내온도가 계절에 적절한가?
 - 유치장에 의자나 매트리스가 있는가?
 - 수용자는 음식을 제공받는가? 따뜻한 식사인가?
 - 수용자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가?
 -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떠한가?
-

참고 문헌

- AI, *Combating torture*, London 2003. (Chapter 4 Safeguarrrds in custody, pp.89-109.

구체적 기준

- CPT 2nd General report on activities, *Police custody*, (CPT/Inf92)3, §36-41
-

부록

- 1 체크리스트
- 2 내부 방문보고서의 예
-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4 관련 국제기준 목록
- 5 더 읽을 거리
- 6 유용한 주소

〈부록 1〉

체크리스트

□ 처우

- 고문과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
- 강제력이나 다른 제압수단의 사용
- 금치의 사용

□ 보호수단

○ 수용자에 대한 정보 고지

- 입소시 정보 고지
- 제3자에 통보할 수 있는 가능성
- 내부 규칙과 절차에 대한 접근성

○ 징벌절차와 제재

- 절차에 대한 간략한 기술
- 징벌위원회의 구성
- 변호인을 동반하는 것을 포함한 이의 제기 가능성
- 제재의 유형과 빈도 (비례성)
- 체포 당시 의사에 의한 검진
- 제재의 유형 및 이유를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
- 징벌방

○ 진정과 감찰 절차

- 진정과 감찰 절차의 존재
- 절차의 독립성
- 절차의 접근성 (접근이 쉽고 효과적인가?)

○ 수용자 분류와 분리 수용

○ 기록

□ 물리적 환경

○ 시설의 수용가능 인원과 수용률 (방문 당시)

- 분류 유형별 수용자의 수
- 외국인 수용자의 비율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수용자 분포

○ 수용 거실 (지리적 단위에 따라)

- 규모와 수용률/거실당 효과적인 평균 수용인원
- 물리적 여건 : 조명, 환기, 가구, 화장실시설
- 위생상태

○ 음식

- 급식 (질, 양, 다양성, 빈도)
- 급식상 특별 처우 (의료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 개인위생

- 샤워 (수, 청결 상태, 보수 상태, 작업을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빈도, 다른 수용자의 경우 빈도)
- 화장실시설 (거실내부, 외부, 접근, 청결 상태)
- 침구 (질, 청결 상태, 교환 빈도)
- 세탁 가능성

□ 시설 내 처우와 활동

○ 시간운영

- 1일 거실 내부에서 보내는 시간
- 1일 운동시간
- 1일 작업시간
- 1일 거실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
- 1주 스포츠 활동 시간
-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

○ 제공되는 활동

- 작업 : 작업에의 접근, 작업의 형태, 작업에 참여하는 수용자의 비율, 작업의무, 임금, 사회보험, 작업장의 상태
- 교육 : 학습에의 접근, 제공되는 수업(문자해독과 기본수리능력, 고등학교 과정, 직업훈련, 대학 과정), 수업의 빈도, 수업 계획자들, 교원들, 교육에 참여하는 수용자의 비율, 교실 상태
- 여가 : 여가활동의 형태, 접근성, 여가공간과 스포츠시설의 상태, 도서관
- 종교활동 : 종교적 대표자들(이들에 의해 대표되는 종교들, 접근의 조건, 방문의 빈도와 기간), 종교 의식(접근, 장소), 세면과 음식에서 종교적 관행들을 준수할 수 있는 가능성

○ 외부 세계와의 교통

- 방문 : 접근, 빈도, 방문을 받기 위한 조건, 방문의 시간과 정기성, 친척 /자녀/배우자의 방문, 접견실의 상태
- 서신과 소포 : 빈도, 검열
- 전화통화 : 빈도, 조건, 외국인 수용자

□ 의료 서비스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 입소 시 의료 검진
- 의료 서비스 이용 절차
- 의무실 : 침상의 수, 설비, 의약품
- 치료를 받고 있는 수용자의 수

○ 의료 직원

- 의사, 간호사,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기타 직원의 수와 근무시간

○ 구금시설 직원

- 직원의 수(직종별)
-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 구금시설 행정당국과 수용자의 관계
- 직원의 훈련(기초훈련과 계속 교육)

〈부록 2〉

내부 방문보고서의 예

□ 방문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방문시설의 이름 :
- 시설의 유형 :
- 주소 :

□ 시설 책임자

- 시설 책임자의 이름 :
- 부책임자의 이름 :

□ 방문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방문일시
- 방문의 형태 및 목적
- 이전 방문 일시
- 조사단 명단

□ 방문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수용인원

- 행정상 수용 가능 인원
- 평균 수용 인원
- 방문 첫날 기준 수용자의 수(분류유형별/성별/국적별)
- 외국인 수용자의 비율
- 외국인 수용자들의 국적
- 성별 분포
- 미성년 수용자
- 노인 수용자

○ 시설의 구조

- 건물(건물 수, 연도, 상태, 관리, 보안상태):
- 거실과 공동시설의 상태

□ 방문시 수집한 정보

○ 방문 최초 면담 - 논의된 사항

○ 구금환경과 권고

- 수용자의 의견
- 구금시설 장이나 직원의 의견
- 조사단의 관찰에 따른 의견

- 방문 종료시 면담
 - 논의된 사항
 - 답변

- 취해져야 할 조치
 - 단기적 조치
 - 장기적 조치

- 연락해봐야 할 곳

- 방문의 빈도

- 후속 방문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록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¹⁷⁾**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금지되어 있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구성함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각 당사국은 협정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국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짐을 상기하고,

이러한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에 당사국들이 1차적 책임을 가짐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국제 이행 기구가 국가적 조치를 보충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다양한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들의 결합이 요구됨을 상기하고,

17) 우리나라는 이 선택의정서의 가입국이 아니므로, 본 선택의정서 한국어 번역본은 정본이 아님을 밝힘.

세계인권회의가 고문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먼저 그 방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구금장소로의 정기 방문을 통한 예방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서의 채택을 요청하였음을 또한 상기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보호는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에 기반을 둔 비사법적인 예방책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음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구금 장소로의 정기적인 방문 제도를 확립함에 있다.

제 2 조

1. 이 의정서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 소위원회(이하 “방지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방지 소위원회는 국제연합현장의 틀 안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그 목적과 원칙,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준을 따른다.
3. 동시에 방지 소위원회는 기밀성, 공정성, 비선택성, 보편성, 객관성의 원칙을 따른다.
4. 방지 소위원회와 당사국은 협정서의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의 방지를 위한 국내차원의 방문 기구(이하 “국가예방기구”)를 하나 이상 설립, 지정 혹은 유지해야 한다.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라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기구들이 자국의 사법권 내에 있는 모든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공권력에 의한 명령 혹은 교사, 묵인, 동의 하에 개인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제한다. 이러한 방문은 필요 시 이러한 개인들에 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자유를 박탈”이라 함은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구금, 감금 혹은 사법, 행정 혹은 여타 권력의 명령으로 인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공, 사설의 감호환경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장 방지 소위원회

제 5 조

1. 방지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된다. 의정서의 15번째 비준 혹은 가입 후에는 방지 소위원회의 구성원을 25인으로 증원한다.
2.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법무행정 분야, 특히 형법, 교도, 경찰 행정, 혹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처우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경력이 인정된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
3. 방지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평한 지역적 안배, 당사국의 다양한 형태의 문명 및 법 제도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4. 공평성과 비차별의 원칙에 의거하여 성별의 균형 또한 고려한다.
5. 동일한 국가 출신의 2인이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다.
6.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이고 공

명정대하며, 방지 소위원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한다.

제 6 조

1. 제2항에 따라 각당사국은 제5조에 제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걸맞는 2인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자격요건을 제공한다.
2. (a) 후보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국적을 소유하여야 한다.
 (b) 후보자 2인 중 최소한 1인은 지명국의 국적을 소유하여야 한다.
 (c) 동일한 당사국 국적의 2인 이상이 지명될 수 없다.
 (d) 당사국이 여타 당사국의 국민을 지명하기 전에 해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거가 실시될 회의일 최소한 5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7 조

1.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 (a) 이 의정서 제5조의 자격과 기준의 충족을 1차적으로 고려한다
 - (b) 최초 선거는 이 의정서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 (c) 당사국은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d)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방지 소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2. 선거 과정 중 동일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2인이 방지 소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주어진 경우, 다수표를 받은 후보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2인이

동일한 수의 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 (a) 2인 중 1인만이 자국에 의하여 지명 받은 경우, 그 후보자가 방지 소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 (b) 2인 모두 자국에 의하여 지명 받은 경우, 어느 후보자가 위원으로 선출될 지 결정하기 위한 개별적인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 (c) 2인 중 누구도 자국에 의하여 지명 받지 않은 경우, 어느 후보자가 위원으로 선출될 지 결정하기 위한 개별적인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제 8 조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이 사망·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전체 당사국의 과반수 승인을 조건으로, 자격을 갖추고 제5조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른 적합한 사람을 다양한 분야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 이 위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하도록 지명한다. 승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회의를 제시한 지 6주 이내에 과반수 이상의 회원국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루어진다.

제 9 조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후보로 재지명 되는 경우 재선될 수 있다.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절반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은 최초 선거 직후 제7조 1항(d)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제 10 조

- 1. 방지 소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 2. 방지 소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a) 의사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 (b) 방지 소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c) 방지 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방지 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제1차 회의 이후 방지 소위원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방지 소위원회와 고문방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동시에 회의를 갖는다.

제 3 장 방지 소위원회의 권한

제 11조

방지 소위원회는:

- (a) 제4조에 규정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보호에 관해 당사국들에게 권고를 내린다.
- (b) 국가예방기구에 대해서는:
 - (i) 필요 시, 이들 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당사국에 조언하고 조력한다.
 - (ii) 이들 기구와 직접적이고 필요 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 (iii)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필요사항과 수단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언하고 조력한다.
 - (iv) 고문 및 그 밖의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가예방기구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권고를 내리고 조사를 행한다.
- (c) 모든 형태의 고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 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유관 기관 및 운용형태와 함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한다.

제 12 조

방지 소위원회가 11조에 규정된 임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다음을 수행한다.

- (a) 방지 소위원회를 자국의 영토에 받아들이고, 이 의정서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로의 접근을 허가한다.
- (b) 방지 소위원회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한 사항과 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c) 방지 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간의 연락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 (d) 방지 소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제 13 조

- 1. 방지 소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초에는 추첨을 통하여, 당사국들에 대한 정기 방문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 2. 협의 후, 방지 소위원회는 당사국이 수행 될 방문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어떠한 지연도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지한다.
- 3. 방문은 최소한 2인의 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원들은 필요 시 이 의정서에 관련된 분야의 검증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다. 전문가는 당사국,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유엔국제범죄방지센터의 제안에 기초하여 준비된 명부에서 선발한다. 명부를 준비함에 있어, 해당 당사국은 자국 전문가를 5인 이상 추천하지 않는다. 해당 당사국은 방문 시 특정 전문가의 포함을 반대할 수 있고, 이 경우방지 소위원회는 다른 전문가를 제안한다.
- 4. 방지 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정기 방문 이후 짧은 후속 방문을 제안할 수 있다.

제 14 조

1. 방지 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방지 소위원회에게 다음을 허가한다:
 - (a)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수, 구금장소의 숫자 및 위치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 (b) 구금자에 대한 처우, 그들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 (c) 아래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구금장소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 (d)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필요 시 통역사와 함께, 입회인 없이 면담할 기회
 - (e)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자를 선택할 자유
2. 구금장소 방문에 대한 반대는 국가 방위나 공공의 안전 문제, 자연 재해 또는 방문 장소의 극심한 무질서 등 긴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당사국은 방문을 막기 위해 비상 사태 등의 선포를 발동할 수 없다.

제 15 조

어떠한 기관이나 공무원도 방지소위원회 혹은 그 대리인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여 정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령, 적용, 허가 혹은 용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인이나 조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16 조

1. 적절하다 여겨질 시, 방지 소위원회는 권고 및 조사결과를 당사국과 국가 예방기구에 기밀로 통보한다.

2. 방지 소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당사국의 의견과 함께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당사국이 보고서의 일부를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 방지 소위원회는 보고서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발표할 수 있다. 개인 정보는 해당인의 동의 없이 발표될 수 없다.
3. 방지 소위원회는 고문 방지 위원회에 그 활동에 관한 공식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4. 당사국이 제12조, 제14조에 따라 방지 소위원회와의 협조 혹은 방지 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상황을 진전시키기를 거부한다면, 고문방지 위원회는 방지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당사국이 소견을 밝힐 기회를 가진 후, 공식적인 성명을 내거나 방지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제 4 장 국가예방기구

제 17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발효된 지 혹은 비준, 가입한 지 늦어도 1년 이내에 하나 이상의 국내 차원에서 고문 예방을 위하여 독립적인 국가 예방 기구를 유지, 지명 혹은 설립한다. 분권화된 단위들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 목적에 따른 국가예방기구로 지명될 수 있다.

제 18조

1.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적 독립성과 그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2.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능력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적절한 성별비율 균형과 국가 내 인종집단 및 소수집단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4. 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 19 조

국가예방기구는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 (b)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처우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권고를 할 권한
- (c) 현행 법 혹은 입법 초안에 대하여 제안이나 조사결과를 제출할 권한

제 20 조

국가예방기구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을 허가할 의무를 진다:

- (a)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수, 구금장소의 숫자 및 위치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 (b) 구금자에 대한 처우,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 (c) 모든 구금장소와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접근
- (d)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필요 시 통역사와 함께, 입회인 없이 면담할 기회
- (e)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인을 선택할 자유
- (f) 방지 소위원회와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보내고, 회합할 권리

제 21조

1. 어떠한 권위체나 공무원도 국가예방기구에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여 정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령·적용·허가 혹은 용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인이나 조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국가예방기구에 의해 수집된 기밀 정보들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개인정보는 해당인의 동의 없이 발표될 수 없다

제 22조

해당 당사국의 담당기관은 국가예방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 조치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 2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국가예방기구의 연례보고서 발행과 보급을 책임진다.

제 5 장 선언

제 24조

1. 비준과 동시에 당사국은 이 협정서의 제3장 혹은 제4장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연기는 최장 3년간 유효하다. 당사국의 충분한 의견반영과 방지 소위원회와의 협의가 있는 후, 고문방지위원회는 그 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규정

제 25 조

1.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해 방지 소위원회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에 따른 방지 소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 26 조

1. 방지 소위원회가 당사국 방문 후 한 권고의 이행과 국가예방기구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특별기금을 창설하고, 이는 국제연합의 재정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운용된다.
2. 특별기금은 정부,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 및 여타 사적·공적 기관의 자발적인 기여로 조달된다.

제 7 장 최종규정

제 27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 혹은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 혹은 가입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 28 조

1. 이 의정서는 스무번 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스무번 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29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30 조

이 의정서에 유보조항을 둘 수 없다.

제 31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당사국이 구금장소 방문 제도를 마련하는 지역협약 하에 가지는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방지 소위원회와 이러한 지역협약 하에 설립된 기구들은 중복을 피하고 이 의정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상의하고 협동할 것을 장려한다.

제 32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가지는 1949년 8월12일 체결된 제네바 4개 협약과 그에 덧붙여진 1977년 6월 8일 체결된 추가의정서들에 대한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당사국이 가지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구금장소를 방문하도록 허가할 기회를 침범하지 않는다.

제 33 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이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이 의정서와 협정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러한 탈퇴는 탈퇴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또는 상황, 방지 소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에 관련하여 취하기로 결정한 또는 결정할 가능성이 있었던 행동에 관련된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탈퇴 발효일 이전에 방지 소위원회가 이미 심리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3. 방지 소위원회는 당사국의 탈퇴가 발효한 날 이후에 이러한 당사국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의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러한 개정안을 즉시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당사국들이 개정안의 심의.표결을 위하여 당사국회의의 개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통고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위의 통보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안이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3분의 2의 과반수로 채택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채택된 개정안의 수락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을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경우,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들은 과거에 수락한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개정안에 계속 구속된다.

제 35 조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들과 국가예방기구의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의 독립적인 행사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가진다.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들은 1946년 2월 13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면제에 관한 협약 제2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22항에 명기된 특권 및 면제를 가진다.

제 36 조

당사국 방문 시 방지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 의정서의 규정과 목적에 관한 침해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침해 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 (a) 방문국의 법규를 존중한다.
- (b) 공명정대하고 국제적인 본분을 지닌 그들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 및 활동을 삼가한다.

제 37 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 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부록 4〉

관련 국제기준 목록

1. 유엔

1.1 유엔협약과 조약기구들

www.unhchr.ch → Treaties and Treaty monitoring bodies 참고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조약기구: 자유권위원회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4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조약기구: 고문방지위원회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2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002)
 www.apt.ch → UN & Legal → Information on Optional Protocol
 참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조약기구: 아동권리위원회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7
www1.umn.edu/humanrts 참고

1.2. 구속력이 없는 유엔조약

www.unhchr.ch → Treaties 참고

- 모든 형태의 구금 혹은 징역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집(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88년 12월 9일 유엔총회결의안 43/173으로 채택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90년 12월 14일 유엔총회결의안 45/111로 채택
-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유엔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1990년 12월 14일 유엔총회결의안 45/113으로 채택
- 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 (“베이징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1985년 11월 29일 유엔총회결의안 40/33으로 채택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7년 7월 31일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663 C (XXIV)와 1977년 5월 13일 결의안 2076(LXII)에서 승인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로부터 수형자나 구금된 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의료종사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련된 의료윤리원칙들(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2년 12월 18일 유엔총회결의안 37/194로 채택
- 법집행공무원의 강제력과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들(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 쿠바에서 열린 범죄의 예방과 범법자의 처우에 관한 제8차 유엔회의에서 채택
- 법집행공무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년 12월 17일 유엔총회결의안 34/169로 채택
- 정신질환을 가진 자의 보호와 정신의료보호의 개선을 위한 유엔원칙 (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년 12월 17일 유엔총회결의안 46/119로 채택
- 난민의 지위를 구하는 자들에 대한 적용가능한 척도와 기준에 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수정지침(UNHCR revised guidelines on applicabl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ing to the detention of asylum seekers)
www.unhcr.ch 참고

- 수용자 신체수색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body searches of prisoners)
199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45차 세계의료총회에서 채택
www.wma.net/policy/b5.htm
- 비구속조치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도쿄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 : The Tokyo Rules)
1990년 12월 14일 유엔총회결의안 45/110로 채택

2. 아프리카연합

- 아프리카인권헌장, 1981(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 수용자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초안(Draft African Charter on Prisoner's Rights)
www.penalreform.org 참고
- 아프리카에서의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와 방지에 관한 지침과 조치 (로벤 아일랜드 가이드라인), 2002 [Guidelines and Measures for the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Africa. (The Robben Island Guidelines), 2002]
- 아프리카 구금시설환경에 관한 캄팔라 선언, 1996(The Kampala Declaration on Prison Conditions in Africa, 1996)

3. 미주기구

www.cidh.oas.org → Basic Documents 참고

- 미주인권협약 (산호세 협정), 1969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act of San Jose), 1969]
-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1948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1948)
- 고문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간 협약, 1985 (Inter-American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 1985)
-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는 미주간 선언 초안 (Draft Inter-American Declaration Governing the Rights and the Care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www.penalreform.org 참고

4. 유럽이사회

4.1 유럽이사회협약

-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TS No. 005, 1950)

www.coe.int → Human Rights 참고

- 고문 및 그 밖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유럽협약, ETS No. 126, 1987(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Torture and Other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TS No. 126, 1987)

www.cpt.coe.com → Documents → Reference Documents

모든 유럽고문방지위원회 기준은 www.cpt.coe.com에서 볼 수 있다.

4.2 구속력 없는 유럽이사회조약

www.coe.int → Committee of Ministers → Advanced Search

(일자 또는 번호검색)

- 유럽형사시설규칙(European Prison Rules)에 관한 권고 R(87)3
1987년 2월 12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87)3
- 구금시설에서의 교육에 관한 권고 R(89)12
1989년 10월 13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89)12
- 구금시설 의료처우의 윤리적 및 조직적 측면에 관한 권고 R(98)7
1998년 4월 8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98)7
- 미결수용에 관한 권고 R(80)11
1980년 6월 27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80)11
- 귀휴에 관한 권고 R(82)16
1982년 9월 24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82)16
- 위험한 수용자의 구금과 처우에 관한 권고 R(82)17
1982년 9월 24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82)17
- 외국인수용자에 관한 권고 R(84)12
1984년 6월 21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84)12

- 의료와 사회생활에서 HIV 감염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권고 R(89)14
1989년 10월 24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89)14
- 탈시설제재(community sanctions)와 조치에 관한 권고 R(92)16
1992년 10월 19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92)16
- AIDS를 포함하여 구금시설에서 전염병과 관련 보건문제를 관리에 대한 구금시설 및 형사학적 측면에 관한 권고 R(93)6
1993년 10월 18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93)6
-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인구증가에 관한 권고 R(99)22
1999년 9월 30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99)22
- 유럽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권고 R(2001)10
2001년 9월 19일 유럽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채택 / 번호: Rec(2001)10

〈부록 5〉

더 읽을거리

1. 구금시설의 모니터링 관련

APT,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Geneva 2004.

APT/OSCE-ODHIR, *Monitoring places of detention: a practical guide for NGOs*, Geneva 2002, available on www.apr.ch in English and Russian.

Penal Reform International, *Monitoring prison conditions in Europe: Report of a European Seminar held in Marly-le-Roi, France, Paris, 1997*.

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관련자료

APT,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 Manual for Prevention*, Geneva, 2004, available in English, (French, Spanish and Portuguese to follow).

APT,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 Geneva, April 2003, available at www.apr.ch in English, French, Spanish and Russian.

3. 고문 관련

Camille Giffard, *The Torture Reporting Handbook, How to document and respond to allegations of torture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Centre, University of Essex, 2000. Available in Arabic, English, French, Spanish and Russian.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stanbul Protocol,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8, New York, Geneva, 2001.

Amnesty International, *Combating torture: A manual for action*, London, 2003, available on www.amnesty.org in English.

OSCE/ODIHR, *Preventing Torture - A Handbook for OSCE Field staff*, Warsaw 1999, available on www.osce.org in English and Russian.

4. 구금시설에서의 기준의 활용

Andrew Coyle,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Handbook for prison staff*.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2003, available on www.prisonstudies.org in Arabic, Brazilian, Portuguese, Chinese, English, Russian, Spanish and Turkish.

Penal Reform International, *Making standards work,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good prison practice*. London, 2001,

available in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for download on www.penalreform.org in English and French.

United Nations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Prisons –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Prisons Official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9, Geneva, 2003.

Nigel S. Rodley,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der international law*, Second Edition, Oxford, 1999.

Vivien Stern, *A sin against the future – Imprisonment in the world*. Penguin Books, 1998.

Peter Sutton, (ed.), *Basic Education in Prisons: Final Report*, United Nation/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UIE) joint publication, English version available free of charge at UIE, French and Spanish version available on the UIE Website: <http://www.unesco.org/education/uie/online/prifr/prifr.pdf>Others

5. 인권 감시 일반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Monitoring*, Warsaw, 2001.

United Nations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7, Training Manual on Human Rights Monitoring*, New York, Geneva, 2001.

6. 구금장소의 방문기구

APT, *Visiting places of detention: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by selected domestic institutions, Seminar Report*, Geneva, 2004.

APT, *The Impact of External Visiting of Police Stations on Prevention of Torture and Ill-Treatment, Study*, Geneva, 1999.

APT,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of International Mechanisms Carrying Out Visits to places of detention, Seminar Report*, Geneva, 1997.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Deprived of freedom*, Geneva, 2002.

Malcolm D. Evans and Morgan Rod, *Preventing Torture, A study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xford, 1998.

Rod Morgan and Malcolm D. Evans, *Protecting prisoners, The Standards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in context*, Oxford, 1999.

Rod Morgan and Malcolm D. Evans, *Combating Torture in Europ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1.

APT Series on *Prevention of Torture in Europe* (in French and English)

Brochure n°3 - Barbara Bernath, *CPT history, mandate, composition*, Geneva, December 1999.

Brochure n°4 - Ursula Kriebaum, *CPT Modus Operandi*, Geneva, May 2002.

APT/Council of Europe, *A visit by the CPT - What's it all about? 15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police*, May 1999.

〈부록 6〉

유용한 주소

1. 국제기구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 Avenue de la Paix
1202 Geneva, Switzerland
Telephone: +41 22 734 60 01 Fax: +41 22 733 20 57
Website: www.icrc.org
-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5, chemin du Pommier, Case Postale 330,
CH-1218 Le Grand-Saconnex, Geneva, Switzerland
Telephone: +41 22 919 41 50 Fax: +41 22 919 41 60
Website: www.ipu.org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alais Wilson, Rue des Pâquis 52
1201 Geneva, Switzerland
Telephone: +41 22 917 90 00 Fax: +41 22 917 90 12
Website: www.ohchr.org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Vienna International Centre
Wagramerstr. 5 P.O. Box 500, 1400 Vienna, Austria
Telephone: +43 1 260 60 Fax: +43 1 263 33 89
Website: www.unvienna.org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Protection
P.O. Box 2500, 1211 Geneva 2 Dépôt, Switzerland
Telephone : +41 (0)22 739 84 11
Website : www.unhcr.org
- Commonwealth Secretariat
Marlborough House, Pall Mall, London SW1Y 5HX, United Kingdom
Telephone : +44 20 7747 6500 Fax : +44 20 79 30 0827
Website : www.thecommonwealth.org

2. 지역 기구

아프리카 지역

-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90 Kairaba Avenue, P.O. Box 673, Banjul, The Gambia
Telephone : +220 392 962 Fax : +220 390 764
E-mail : achpr@achpr.org
Website : www.achpr.org
-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P.O. Box 3234, Roosevelt Street, W21K19 Addis Ababa, Ethiopia
Telephone : +251 1 51 77 00 Fax : +251 1 51 78 44
Website : www.africa-union.org
- United Nations African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P.O. Box 10590, Kampala, Uganda
Telephone : +256 41 22 11 19 Fax : +256 31 263 797
E-mail : unafri@unafri.or.ug or unafri@yahoo.co.uk
Website : www.unafri.or.ug

미주 지역

-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1889 F Street, N.W., Washington D.C: 2006, USA
Telephone: +1 202 458-6002 Fax: +1 202 458-3992
Website: www.cidh.org
- Inter-American Court on Human Rights
Avenida 10, Calles 45 y 47 Los Yoses, San Pedro
Apartado 6906-1000, San José, Costa Rica
Telephone: + 506 234 0581 Fax: + 506 234 0584
E-mail: corteidh@corteidh.or.cr
Website: www.corteidh.or.cr
- United Nations Latin American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ILANUD)
Edificio Plaza de la Justicia, 3er piso, Apartado Postal 10071-1000
San José Costa Rica
Telephone: +506.257.5826 Fax: +506. 233.7175
E-mail: ilanud@ilanud.or.cr
Website: www.ilanud.or.cr

유럽 지역

- Council of Europe
Avenue de l'Europe, F-67075 Stasbourg, Cedex, France
Telephone: +33 3 88 41 20 00 / 33 Fax: +33 3 88 41 27 30 / 45
Website: www.coe.int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67075 Strasbourg-Cedex, France
Telephone: +33 3 88 41 20 18 Fax: +33 3 88 41 27 30
Website: www.echr.coe.int
-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PT)
CPT Secretariat Council of Europe
F-67075 Strasbourg Cedex, France
Telephone: +33 03 88 41 39 39 Fax: +33 3 88 41 27 72
E-mail: cpt.doc@coe.int
Website: www.cpt.coe.int
- European Parliament
L-2929, Luxembourg
Telephone: +352 4300-1 Fax: +352 43 70 09
Website: www.europa.eu.int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
Aleje Ujazdowskie 19 - 00-557 Warsaw - Poland
Telephone: +48 22 520 06 00 Fax: +48 22 520 06 05
E-mail: office@odihhr.pl
Website: www.osce.org/odihhr
-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HEUNI)
Heuni POB 444 (Pitkäsillanranta 3 A) 00531 Helsinki, Finland
Telephone: +358 10 366 5280 Fax: +358 10 366 5290
E-mail: heuni@om.fi
Website: www.heuni.fi

3. 비정부 기구(NGOs)

국제 NGOs

-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
Telephone: + 44 20 74135500 Fax: +44 20 79561157
E-mail: amnestyis@amnesty.org
Website: www.amnesty.org
(Please consult also addresses of AI sections across the world)
-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
10 Route de Ferney, P.O. Box 2267, 1211 Geneva 2, Switzerland
Telephone: +41 22 919 21 70 Fax: +41 22 919 21 80
E-mail: apt@apt.ch
Website: www.apt.ch
- Human Rights Watch (HRW)
350 Fifth Avenue, 34th Floor, New York, NY 10118-3299, USA
Telephone: +1 212 290 47 00 Fax: +1 212 736 13 00
E-mail: hrwny@hrw.org
Website: www.hrw.org
(Please consult also addresses of other HRW sections)
-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ICPS)
King's College London School of Law 3rd Floor
26-29 Drury Lane London WC2B 5RL United Kingdom
Telephone: +44 207 848 1922 or +44 20 7836 5454
Fax: +44 207 848 1901
E-mail: icps@kcl.ac.uk or ceu@kcl.ac.uk
Website: www.prisonstudies.org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33, rue des Bains, P.O. Box 91
1211 Geneva 8, Switzerland
Telephone: +41 22 9793800 Fax: +41 22 9793801
E-mail: info@icj.org
Website: www.icj.org
(Please consult also addresses of national sections and affiliated organisations across the world)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FIACAT)
27 Rue de Maubeuge, 75009 Paris, France
Telephone: +33 1 42 80 01 60 Fax: +33 1 42 80 20 89
E-mail: fiacat@fiacat.org
Website: www.fiacat.org
(Please consult also addresses of ACAT organisations across the world)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League of Human Rights (FIDH)
17 Passage de la Main d'Or, 75011 Paris, France
Telephone: +33 1 43 55 25 18 Fax: +33 1 43 55 18 80
E-mail: fidh@fidh.org
Website: www.fidh.org
-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IRCT)
Borgergade 13, P.O. Box 9049, DK-1022 Copenhagen K, Denmark
Telephone: +45 33 76 06 00 Fax: +45 33 76 05 00
E-mail: irct@irct.org
Website: www.irct.org

-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1 rue de Varembe, P.O. Box 16, 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ephone: +41 22 733 51 23 Fax: +41 22 733 08 26
Website: www.ishr.ch

- Penal Reform International
Unit 450, The Bon Marché Centre, 241-251 Ferndale Road,
London SW9 8BJ, United Kingdom
Telephone: +44 20 7924 95 75 Fax: +44 20 7924 96 97
Website: www.penalreform.org
(Please consult also addresses of regional and national PRI
offices)

- The Redress Trust
3rd Floor, 87 Vauxhall Walk, London SE11 5HJ, United Kingdom
Telephone: +44 20 7793 1777 Fax: +44 20 7793 1719
E-mail: info@redress.org
Website: www.redress.org

-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 SOS Torture)
8, rue du Vieux-Billard, P.O. Box 21, 1211 Geneva 8, Switzerland
Telephone: +41 22 809 49 39 Fax: +41 22 809 49 29
E-mail: omct@omct.org
Website: www.omct.org
(Please consult also addresses of regional sections)

지역 NGOs

- African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Studies
Zoe Tembo Building, Kerr Sereign, P. O. Box 2728, Serrekunda,
The Gambia
Telephone: +220 446 2340/42 Fax: +220 446 2338/39
E-mail: info@acdhrs.org
Website: www.acdhrs.org

- Asia-Pacific Human Rights Network
B-6/6, Safdarjung Enclave Extension, New Delhi-110 029, India
Telephone/Fax: +91 11 2619 1120 / 2619 2717 / 2619 2706
E-mail: hrdc_online@hotmail.com
Website: www.hrdc.net/sahrhc

- Inter-American Center for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CEJIL)
1630 Connecticut Ave., NW - Suite 401, Washington D.C.
20009-1053, USA
Telephone: +1 202 319 3000 Fax: +1 202 319 3019
E-mail: washington@cejil.org
Website: www.cejil.org

-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IIDH)
P.O. Box 10081-1000, San José, Costa Rica
Telephone: +506 234 04 04 Fax: +506 234 09 55
E-mail: instituto@iidh.ed.cr
Website: www.iidh.ed.cr

- International Helsinki Federation for Human Rights

Wickenburggasse 14/7, A-1080 Vienna, Austria

Telephone: +43 1 408 88 22 Fax: +43 1 408 88 22 50

E-mail: office@ihf-hr.org

Website: www.ihf-hr.org

(Please consult also addresses of committees members across the world)

수용시설 모니터링 실무 가이드

인쇄일 | 2006년 5월 일

발행일 | 2006년 5월 일

발행인 | 조영황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 100-842

전 화 | (02) 2125-9624

F A X | (02) 2125-9638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비매품〉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킴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사명에 헌신한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2.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3.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경찰, 군 구금시설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다수의 구금, 보호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며,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제도·관행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합니다.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 www.humanrights.go.kr
Tel : 1331 / fax : 02)2125-9812

고문방지협회(The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고문방지협회는 1977년 장자크 고티에 (Jean-Jacques Gautier)에 의해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독립 비정부기구 (NGO)로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고문방지협회의 주요 활동 내용:

1. 구금시설에 관한 감시와 고문과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독 메커니즘 옹호
2. 고문과 불처벌 방지를 위한 법적 규범 및 기준의 채택과 준수 권장
3. 고문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 및 국가별 행위자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다국어 실천 가이드 발간, 법률 자문 제공 및 훈련 실시

고문방지협회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OPCAT), 유럽고문방지협약,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고문방지를 위한 아프리카 위원회의 로벤 아일랜드 가이드라인 (Robben Island Guideline)과 같이 국제적 및 지역적 기준과 메커니즘을 설정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APT는 스위스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15명으로 구성된 국제사무국은 연례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주 소 : P.O. BOX 2267, CH 1211 Geneva 2, Switzerland / www.apf.ch
Tel : 41-22-919-2170 / Fax : 41-22-929-2180 / E-mail : apf@apf.ch